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중 국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중화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면적	9,634,057 km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2019 기준)
수도	베이징(北京; Beijing)
인구	1,400,050,000 명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2019년 말 기준)
민족(인종)	56개 민족: 한족(91.5%) 및 55개 소수민족(8.5%)
언어	한어(; Chinese)
종교	불교, 도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기후	전체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풍 기후 특징을 보임. 영토가 광대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 분포됨. 최남단 지역의 열대기후, 서부 지역의 건조기후, 동북 지역의 한대 기후 등으로 구분됨.
국가원수	시진핑(習近平): 現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 국가 주석, 중공중앙군사위 주석(취임: 2013년 3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 위원(취임: 2013년 3월)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92-08-24 (자료원 : 중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중무역협정	1992-02-01	투자허가 및 전생시 손실 보장 등에 대한 최혜국대우와 투자과실의 공정한 율에 의한 송금보장	KOTRA와 CCPIT 간 체결
한중 투자보호협정	1992-12-04	사업수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 리스크를 회피	2007년 개정
한중 해운협정	1993-06-26	선원, 여객 등에 대한 규정, 협약 당사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 선박의 여객 및 화물 운송 허용 등	1993년 이후 양국에서 교대로 매년 1회씩 한중 해운회담 개최
한중 환경협력협정	1993-11-27	협정의 주요 목적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보/기술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관해 협조하는 데 있어 보다 나은 기회 제공	
한중 환경협력협정	1993-11-27	양국 정부간 환경 협력에 관한 협정	
한중 조세조약(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1994-09-28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한중어업협정	2001-06-30	서해상 양국 사이의 어업 분쟁을 조정하고 체결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2002-04-11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뒤 상대국으로 도피한 수배자 송환 조치	
한중사회보장협정	2013-01-16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와 현지채용자의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의 이중가입 면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2014-09-01	한중 영화 공동제작 장려 및 한중 공동제작 영화는 외국영화가 아닌 (중국)국내영화로 인정	
한중 자유무역협정	2015-12-20	대중 수출 연간 87억 달 러 해당 물품 관세가 발 효 즉시 철폐	

〈자료원 : 국가기록원, 외교부, KOTRA〉

한국교민 수

2,461,386 명 (자료원 : 2019년 한국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중 이후 해빙 무드로 바뀐 한중관계는 지난 2년간 안정적 발전을 이어왔다. 2019년 하반기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다시 주변 외교에 대한 비중을 높였으며 한국에 일련의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중국 단체 관광객 한국 방문 부분 허용, 5년간 중단되었던 국방 전략대화 재개, 왕이 외교부장 방한, 그리고 12월에는 한·중·일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등이 이어졌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비상상황에서 한중관계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양국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을 강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속통로제'를 통해 기업인들의 예외입국을 제도화했다. 기업인 '신속통로제'는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14일간 의무격리'가 면제된다. 5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정상 통화에서 '신속통로제'를 대표적인 협력의 모범사례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코로나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2020년 11월 25~27일,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국제 및 지역협력 조율,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통합 글로벌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자의 기여를 해나가고 있다”며 한중관계 심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줬다.

경제

2018년부터 한중 경제관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對중국 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52.3%, 20.7% 증가했다. 동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 중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각각 23.6%, 23.3%에 달할 정도로 양국의 경제협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에도 한중 교역관계는 더욱 강화됐다. 마스크, 의류 등 소비재와 반도체 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며 2020년 10월 누계 기준 대중 교역의 한국 전체 교역 비중은 24.5%로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2020년 5월 26~29일까지 4일간 화상으로 진행됐다. 2017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8년 3월 1차 협상을 개최된 이래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FTA에 서비스·투자 분야가 포함돼 있으나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한국은 배송·건설·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제조업

·농업·광업 등 非서비스 분야의 투자는 시장개방 약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은 후속협상에서 서비스·금융·투자 등 3개 분야에 걸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개방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협상 타결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

지난 2016년 7월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계기로 11월 이후 한국방송콘텐츠를 수입할 수도 없고 중국 예능프로그램에 한국 연예인이 출연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한한령(限令, 한류제재)의 영향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의 수입, 판권 구매, 포맷 수입, 제작 협력 등이 전면 중단되었다. 2017년 한국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의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2018년부터 '한한령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방송포맷이 수출되고 한국 연예인 중국 공연 등이 열리기 시작했다. Mnet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 정식 판권 계약을 통해 중국 시장에 포맷이 수출됐다. 중국 시청자들의 인기 속에 막을 내린 '창조 101'은 한국 CJ E&M이 중국 텐센트와의 계약을 통해 정식 수출되어 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산 게임 판호(版號·유통허가증) 발급, 단체 여행에 대한 제한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게임,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 콘텐츠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정부 정책과 심의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현지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6.73	6.76	6.57	6.14	-
명목GDP (십억\$)	11,221.84	12,062.29	13,368.07	14,140.16	-
1인당 GDP (PPP, \$)	15,397.4	16,658.56	18,116.05	19,503.91	-
1인당 명목 GDP (\$)	8,115.83	8,677.4	9,580.24	10,098.87	-
정부부채 (% of GDP)	44.18	46.79	50.64	55.57	-
물가상승률 (%)	2	1.56	2.1	2.31	-
실업률 (%)	4.02	3.9	3.8	3.8	-
수출액 (백만\$)	2,136,708.32	2,280,358.29	2,491,355.26	2,497,949.16	-
수입액 (백만\$)	1,589,463.35	1,842,333.87	2,108,973.36	2,068,574.79	-
무역수지 (백만\$)	547,244.97	438,024.42	382,381.9	429,374.37	-
외환 보유고 (백만\$)	3,032,562.64	3,161,829.75	3,094,780.5	3,130,525.56	3,114,302.72
이자율 (%)	2.25	2.5	2.55	2.5	2.2
환율 (자국통화)	6.64	6.76	6.62	6.91	7.11

〈자료원 : IMF, 해관총서〉

경제 동향

코로나19 확산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2020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6.8%)은 사상 최초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조업 재개와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2/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3분기 플러스 전환(누계 기준 0.7% 증가)에 성공했다. 코로나 여파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던 2차, 3차 산업 성장률도 지난 9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각각 전년 동기대비 0.9%, 0.4%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정자산투자 증감률도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 2월 -24.5%로 저점을 찍은 후 'V'자형 반등세를 이어왔다. 9월 마이너스 성장을 마무리

짓고 전년 동기대비 0.8% 소폭 증가했다. 소비는 8월 플러스 전환, 9월 당월 기준 3.3%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며 하반기 회복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생산은 4월부터 빠르게 회복됐다. 9월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6.9%로 2019년 12월 수준으로 회복됐다.

중국의 경기 회복은 우리나라 수출 지표에서도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월 수출액은 392억 달러로 전년대비 10.9% 감소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중국에 대한 수출은 9.5% 증가했으며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국경절, 중추절 8일 최장 연휴의 영향으로 10월 대중국 수출은 5.7% 감소했지만 하루 평균 대중국 수출액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망

중국 경제는 2020년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1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0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5.5%를 돌파하고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2.3~2.5% 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로 1분기 2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9% 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2021년 중국 경제의 핵심 동력은 소비 회복과 제조업 투자 확대에 예상된다. 2020년 코로나 사태 후 시행된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제조업 분야 투자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은 경제운용이 정상화됨에 따라 긴급 시행한 정책이 원상태로 회귀할 전망이다. 특히 주민소득 회복 및 경제 성장 기대치 제고로 총수요에서의 소비 기여도가 증대될 것이며 소비 주도형 경제특징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기업의 영업이익 호전에 따라 기업 자본지출이 확대되는 등 경제성장의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해 “국제대순환(해외시장 진출과 중국경제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내수 위주의 쌍순환”전략으로 2035년까지 중도 중진국에 도약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쌍순환 경제구도 구축을 위한 내수확대 정책에 따라 新인프라·新산업·新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핵심 기술·부품 자국화 위한 4차 산업 육성지원이 강화되면서 관련 부품, 설비 시장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 진작책·엔택트 비즈니스 발전으로 전자제품·비대면 서비스 소비 수요 활성화, 소비 수요 업그레이드, 대외개방 확대로 프리미엄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2021년은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한 첫 해이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되는 해이며 14번째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다. 2020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실현한 데 이어 2021년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 회복의 엔진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85,677,759,424
2	홍콩	287,251,662,044
3	일본	129,268,487,384
4	대한민국	93,707,103,461
5	독일	65,214,030,647
6	베트남	61,094,096,781
7	인도	58,397,760,569
8	네덜란드	57,447,210,217
9	영국	55,664,076,103
10	싱가포르	44,495,953,063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430,328,146,524
2	홍콩	279,210,546,471
3	일본	137,258,933,310
4	대한민국	102,703,776,594
5	베트남	71,617,248,156
6	독일	71,134,400,096
7	인도	68,042,252,505
8	네덜란드	67,131,666,962
9	영국	56,713,517,329

10	싱가포르	45,019,300,478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479,701,580,548
2	홍콩	302,960,300,756
3	일본	147,235,099,286
4	대한민국	109,028,748,904
5	베트남	84,015,798,650
6	독일	77,908,711,119
7	인도	76,880,636,625
8	네덜란드	73,124,177,341
9	영국	56,987,895,809
10	싱가포르	49,817,841,244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462,575,507,487
2	홍콩	247,322,829,024
3	일본	128,061,649,732
4	독일	120,491,013,130
5	대한민국	94,072,597,453
6	멕시코	70,008,505,271
7	영국	63,465,387,800
8	인도	51,574,523,512
9	캐나다	48,091,065,301
10	네덜란드	47,706,338,012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대한민국	158,974,531,293
2	일본	145,670,688,473
3	Other Asia, nes	138,847,226,607
4	미국	135,120,133,073
5	Areas, nes	129,087,538,316
6	독일	86,109,029,796
7	오스트레일리아	70,895,012,700
8	말레이시아	49,269,636,528
9	브라질	45,855,047,246
10	스위스	39,945,437,599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대한민국	177,553,154,148
2	일본	165,794,005,814
3	Other Asia, nes	155,961,303,175
4	미국	154,441,855,874
5	중화인민공화국	132,369,371,926
6	독일	96,940,109,119
7	오스트레일리아	95,009,120,929
8	브라질	58,857,155,273
9	말레이시아	54,426,139,443
10	베트남	50,374,616,976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대한민국	204,566,451,226
2	일본	180,401,786,146
3	Other Asia, nes	177,346,960,189
4	미국	156,004,352,076

5	중화인민공화국	146,381,811,975
6	독일	106,257,241,330
7	오스트레일리아	105,083,431,453
8	브라질	77,141,725,984
9	베트남	64,087,359,833
10	말레이시아	63,321,953,929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홍콩	293,162,168,331
2	대한민국	134,969,346,595
3	일본	126,846,329,102
4	독일	106,342,660,898
5	미국	94,850,750,374
6	오스트레일리아	88,128,668,743
7	브라질	62,845,547,216
8	러시아	55,397,036,897
9	싱가포르	50,314,615,227
10	말레이시아	32,407,254,377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6,090,876,753
2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9,577,026,259
3	851770	부분품	48,320,066,131

4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31,906,731,791
5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6,221,071,260
6	901380	그 밖의 기기	25,953,677,284
7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5,008,964,934
8	854232	메모리	23,014,997,954
9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 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18,382,560,397
10	640299	기타	17,052,629,171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26,749,146,104
2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9,690,331,448
3	851770	부분품	51,057,293,858
4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36,135,213,373
5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33,075,937,950
6	854232	메모리	30,355,955,365
7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7,193,241,277
8	901380	그 밖의 기기	25,957,288,516
9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 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23,995,226,783
10	271019	기타	19,731,221,600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41,683,901,496
2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5,883,926,084
3	851770	부분품	51,951,118,873
4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4,310,088,177
5	854232	메모리	43,966,740,835
6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42,267,556,880
7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9,567,607,356
8	271019	기타	27,309,997,155
9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 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25,467,875,265
10	901380	그 밖의 기기	23,426,196,274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41,983,807,023
2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6,370,225,747
3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56,435,975,690
4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1,373,392,679
5	851770	부분품	37,075,998,803
6	854232	메모리	30,296,769,596
7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 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27,743,931,890
8	854239	기타	23,687,985,793

9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2,104,062,670
10	852990	기타	19,478,979,636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16,660,748,441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04,749,177,801
3	854232	메모리	63,713,868,083
4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0,601,570,312
5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56,865,611,547
6	854239	기타	48,513,104,553
7	851770	부분품	38,202,550,445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5,444,478,236
9	120190	기타	33,981,147,958
10	901380	그 밖의 기기	32,060,278,186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63,820,666,915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13,072,762,312
3	854232	메모리	88,931,945,452
4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74,604,641,206
5	854239	기타	48,833,710,032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48,740,696,977
7	851770	부분품	41,293,629,448
8	120190	기타	39,638,141,396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7,908,637,376
10	901380	그 밖의 기기	30,622,773,236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39,222,366,789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27,430,722,021
3	854232	메모리	122,972,377,524
4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72,674,452,850
5	854239	기타	51,691,958,254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43,120,647,871
7	851770	부분품	42,389,087,253
8	120190	기타	38,077,973,680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6,840,852,678
10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2,727,689,444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73,345,350,113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71,442,080,352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8,476,745,663
4	854232	메모리	63,407,235,165
5	854239	기타	53,270,909,998
6	120190	기타	31,692,012,837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28,294,024,852
8	851770	부분품	26,970,176,026
9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5,688,324,748

10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2,332,768,515
----	--------	--------------------	----------------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124,433	86,980	37,453
2017	142,120	97,860	44,260
2018	162,125	106,489	55,636
2019	136,203	107,229	28,974
2020	107,833	87,684	20,14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35,391	16,091	19,299
2	2140	합성수지	7,036	1,080	5,956
3	8361	평판디스플레이	9,142	2,496	6,646
4	2273	화장품	3,069	71	2,998
5	1332	경유	3,059	120	2,938
6	2120	석유화학중간원료	5,839	30	5,808
7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2,883	174	2,708
8	736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2,278	18	2,259
9	2110	기초유분	3,310	31	3,279
10	8138	전산기록매체	1,361	627	73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31,738	13,801	17,937
2	2140	합성수지	6,112	789	5,323
3	8361	평판디스플레이	5,594	1,348	4,246
4	2273	화장품	3,098	55	3,043
5	1332	경유	3,055	6	3,049
6	2120	석유화학중간원료	2,838	15	2,823
7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2,445	234	2,211
8	736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2,153	13	2,140
9	2110	기초유분	2,048	25	2,023
10	8138	전산기록매체	1,976	804	1,17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35,391	16,091	19,299
2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561	5,448	-2,888
3	8131	컴퓨터	65	3,413	-3,348
4	8121	무선전화기	83	2,640	-2,557
5	8421	제어용케이블	427	2,164	-1,738
6	7420	자동차부품	2,175	1,557	617
7	8352	축전지	1,112	1,339	-228
8	8361	평판디스플레이	9,142	2,496	6,646
9	7461	선박	997	430	566
10	4412	식물제외류	180	1,964	-1,78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31,738	13,801	17,937
2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843	4,229	-2,386
3	8131	컴퓨터	39	3,116	-3,077
4	8121	무선전화기	91	1,754	-1,663

5	8421	제어용케이블	286	1,617	-1,331
6	7420	자동차부품	1,256	1,416	-160
7	8352	축전지	962	1,397	-435
8	8361	평판디스플레이	5,594	1,348	4,246
9	7461	선박	9	1,329	-1,320
10	4412	직물제의류	161	1,265	-1,10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2001-05-23	2018-07-01	회원국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 2018년 7월 1일부로 제4차 협상 관세율 시행
중국-아세안 전면경제협력협약	ASEAN	2002-11-04	2010-01-01	2007년 1월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2009년 8월 투자협정 체결 2014년 9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5년 11월 종료 2019년 10월 22일부 '업그레이드안' 전면 실시
중국-홍콩/마카오 경제무역관계 진밀화협정	중국 홍콩, 마카오	2003-06-29	2004-01-01	2005~2014년 총 10차례 보충협정 전면 이행 2015년 1월 1일부 홍콩산 1,812개, 마카오산 1,315개 품목에 0% 적용 2016년 6월 1일부 서비스무역협정 발효(2015년 11월 체결) 2018년 1월 1일부 투자협정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발효(2017년 12월 체결) 2019년 1월 1일부 'CEPA 화물무역협정'에 따라 홍콩, 마카오산 수입품 무관세 통관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칠레	2005-11-08	2006-10-01	2016년 11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7년 11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완료 2019년 3월 1일부 '업그레이드안' 실시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파키스탄	2006-11-24	2007-07-01	2009년 10월 10일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2009년 2월 체결) 2015년 11월 11일 서비스무역협정 은행업 서비스 의정서 발효(2015년 4월 체결) 2011년 3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9년 4월 종료 2020년 1월 1일부 '업그레이드안' 실시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뉴질랜드	2008-04-07	2008-10-01	2016년 11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9년 11월 종료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싱가포르	2008-10-23	2009-01-01	2015년 11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8년 11월 종료 2019년 10월 16일부 '업그레이드안' 실시
중국-페루 자유무역협정	페루	2009-04-28	2010-03-01	중국과 남미 국가 간 첫 FTA 2019년 4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중국-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	코스타리카	2010-04-08	2011-08-01	
해협양안경제협력협정	중국 대만	2010-06-29	2010-09-12	2013년 6월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
중국-아이슬란드 자유무역협정	아이슬란드	2013-04-15	2014-07-01	중국과 유럽 국가 간 첫 FTA
중국-스위스 자유무역협정	스위스	2013-07-06	2014-07-01	협정 업그레이드 검토 중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	호주	2015-06-01	2015-12-20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국	2015-06-01	2015-12-20	2018년 3월 후속 협상(투자 및 서비스무역 분야) 개시
중국-조지아 자유무역협정	조지아	2017-05-13	2018-01-01	
중국-몰디브 자유무역협정	몰디브	2017-12-02		최근 몰디브측 재협상 요구 제기
중국-모리셔스 자유무역협정	모리셔스	2019-10-17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간 첫 FTA
중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캄보디아	2020-10-1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ASEAN 10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2020-11-15		세계 인구/GDP/무역의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FTA

〈자료원 : 중국 상무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중국-팔레스타인 자유무역협정	팔레스타인	2019년 2월 1차 협상	
중국-파나마 자유무역협정	파나마	2019년 4월 5차 협상	
중국-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	노르웨이	2019년 9월 제16차 협상	
중국-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	스리랑카	2017년 1월 제5차 협상	
중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이스라엘	2019년 11월 제7차 협상	
중국-몰도바 자유무역협정	몰도바	2018년 3월 1차 협상	
한국-중국-일본 자유무역협정	한국, 일본	2019년 11월 제16차 협상	

중국-GCC 자유무역협정

GCC

2016년 12월 제9차 협상

〈자료원 : 중국 상무부〉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4002.7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 (EPDM, Ethylene-Propylene-non-conjugated Diene Rubber)	반덤핑(조사중)	2019-06-19
2	3911.90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Polyphenylene Sulfide, PPS)	반덤핑(조사중)	2019-05-30
3	721891, 721899, 721911, 721912, 721913, 721914, 721921, 721922, 721923, 721924, 722011, 722012	스테인리스 열연(Stainless Steel Billet and 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	반덤핑(조사중)	2018-07-23
4	290711	페놀(Phenol)	반덤핑(규제중)	2018-03-26
5	4002.59	니트릴 고무(Nitrile Rubber)	반덤핑(규제중)	2017-11-09
6	2902.50	스티렌(Styrene Monomer)	반덤핑(규제중)	2017-06-23
7	2914.13	메틸이소부틸케톤(4-Methyl-2-Pentanone)	반덤핑(규제중)	2017-03-27
8	3907.10	폴리아세탈(Polyformaldehyde Copolymer, Polyoxymethylene Copolymer, Copolymer-type Acetal Resin or Acetal Copolymer)	반덤핑(규제중)	2016-10-24
9	1701.12/13/14/91/99	설탕(Sugar)	세이프가드(규제중)	2016-09-22
10	7225.11, 7226.11	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반덤핑(규제중)	2015-07-28
11	5501.30, 5503.30, 5506.30	아크릴섬유 (Polyacrylonitrile Fiber or Acrylic Fiber)	반덤핑(규제중)	2015-07-14
12	2804.61	태양광용 폴리실리콘(Polysilicon)	반덤핑(규제중)	2012-07-20
13	2917.36	테레프탈산(TPA; Terephthalic Acid)	반덤핑(규제중)	2009-02-12
14	2917.12	아디프산 (Adipic Acid)	반덤핑(규제중)	2008-11-10
15	2914.11	아세톤(acetone), Dimethyl ketone 또는 2-Propanone	반덤핑(규제중)	2007-03-09
16	2907.23	비스페놀A(Bisphenol-A)	반덤핑(규제중)	2006-08-30

17	9001.10	광섬유(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	반덤핑(규제중)	2003-07-01
----	---------	---	----------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마약, 무기, 동물 시체, 동물 뼈 등 법률상 교역 금지하는 품목과 중고 기계/전자설비 기계, 고체폐기물, 임업/인쇄업/금속/교통 등 분야의 일부 기술은 중국 법률상 수입이 금지돼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및 무역확대를 위해 단일의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했다.

1)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이하 CCC 인증)이란 중국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 상품검사제도이다. 중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제품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및 부품 중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 표준협회) 및 중국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며 CCC 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에서 규정한 CCC 인증품목은 총 20개 유형, 230여 종 품목이다.

○ CCC 인증 대상품목(20개 유형)

- 전기선 케이블
- 전기부품
- 저압 전자제품
- 소출력 전동기
- 전동공구
- 전기용접기
- 가전기기
- AV기기
- IT기기
- 조명기기
- 자동차 및 부품
- 타이어
- 안전유리
- 농기구
- 전자단말기
- 소방설비
- 안전방범 제품
- 무선 LAN 제품
- 인테리어제품
- 아동용품

○ 취득절차: CCC 인증은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샘플 테스트, 공장심사 등 과정을 거친다.

- ① 인증대상 여부 확인
- ② 인증기관에 온라인 신청 및 수리
- ③ 서류 심사
- ④ 샘플 테스트 진행
- ⑤ 테스트 보고서 취득
- ⑥ 공장 심사 진행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장등록증 사본(영문)
- 일치성 설명서
- 공장조사표(조직도, 품질매뉴얼, 생산설비리스트(영문), 제품검사설비 리스트, 공정도 등)
- 제품기술자료(제품사용설명서, 제품묘사서, 회로도, 조립도, 중요안전부품리스트, 제품중문명판 등)

○ CCC면제증명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 규정]에 따라 출고, 판매, 수입 및 경영성 활동 중 특수한 상황의 경우, [강제성 제품 인증 시행 제품 목록]에 포함되는 CCC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해 인증 취득을 하지 않거나 각 관할 검역국에 인증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CCC 인증 면제 가능 품목

- 과학 연구, 실험에 필요한 물품
- 기술 평가를 위한 생산 라인 도입에 필요한 부품
- 최종 소비자에게 A/S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공장 생산 라인, 세트 생산 라인 구축에 필요한 설비 및 부품(사무용품 제외)
-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상업 전시용 제품
- 임시 통관 후 반송 수출하는 제품 (전시회 참가품 포함, 전시장 판매 불가)
- 완제품 전수 수출을 목적으로, 일반 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부품
- 완제품 전수 수출을 목적으로, 원재료 수입 혹은 수탁 가공 방식을 수입하는 부품

주: CCC 인증 면제 요구서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면제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 안전 부합성 성명, 제품 기술 자료 또는 제품 설명서, 제품 컬러 사진, 책임 담보서, 위탁서, 기타 요청 자료

○ 소요시간 및 비용: 인증기관에서 인증신청을 수리한 시점부터 인증증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통상 근무일 기준 90일이 소요된다.

- 신청비(600元)+등록비(800元)+제품테스트비(테스트 내용에 따라 상이, 테스트 보고서 발행 시 청구)=1,400元+α

* 신청자료가 외국어일 경우, 번역비용 징수 (최대 1000위안)

○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강제성상품인증관리규정(强制性產品認證管理規定)》
- 담당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인증마크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에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인증대상 품목 중 특수 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CCC인증 마크를 표시/부착한다. 국외에서 생산되어 인증을 획득한 제품도 반드시 수입 전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CCC 인증마크는 구체적 제품에 따라 다르며 4가지로 구분된다. 안전인증제품은 CCC 기본마크에 “S”를 추가 표시, 전자파 인증제품은 “EMC”를, 소방제품인증은 “F”를, 안전과 전자파 인증제품은 “S&E”를 “CCC” 오른

쪽에, 작게 추가 표시한다. 인증마크의 제작은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쇄기관에서 담당한다. 인증마크의 인쇄, 각인 등 설계방안은 인증마크의 신청인이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의 지정된 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제작 사용이 가능하다.

○ 인증마크의 사용 신청

- 신청인은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마크를 신청해야 한다.
- 신청인이 타인에 위탁하여 신청할 경우, 위탁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인증마크를 신청한다.
- 신청인이 서면 혹은 전자통신방식으로 인증마크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인증서, 인증서 사본의 서면 혹은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인증마크를 신청한다.
-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신청인은 인증마크의 사용 비용과 인증마크를 인쇄한 감독관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통일적으로 인쇄한 표준규격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한다.

○ 미이행 시 제재사항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명시된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3만 위안(약 54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인증 대상 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약 18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의 위조, 도용 및 기타 국가의 안전품질허가, 상품품질 인증 관련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지정 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거짓 증명 혹은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China RoHS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 및 금지를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코자 이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7년 3월부터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 부착 및 정보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인증대상: 직류에서 작동전압이 1,500V, 교류전류에서 1,000V 이하 설비, 조립된 컴퓨터제품(데스크톱 노트북, 컴퓨터와 연결된 모니터와 프린터 등), 가정용 전자제품(TV), 통신설비(이동 단말기, 고정/무선 전화기)가 해당한다.

○ 인증절차

- ① 시험항목 및 비용 확인 - 샘플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② 샘플 및 신청서 송부(방문, 우편, 택배 가능, 첫 거래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동봉)
- ③ 접수 확인증 수령 및 확인 회신(e-mail)
- ④ 접수 확인증의 안내에 따라 비용 입금
- ⑤ 시험결과 성적서 전자파일 수령(e-mail)
- ⑥ 성적서 원본 및 세금계산서 수령(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시료(샘플)

*시험기관마다 필요서류의 형식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필수

○ 소요시간: 시험 기관 또는 시험 물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국가통일추진 전자신식산품 오염통제 자진인증실시의견》(國家統一推行的電子息產品污染控制自願性認證實施意見) (國認證聯〔2010〕28號)

- 담당기관: 국가질량인증중심(國家質量認證中心)

3) 중국 화장품위생허가(NMPA)

중국에서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은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및 그 실시세칙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특수 화장품은 '수입화장품등록증서 (進口化粧品備案)'를, 특수 화장품은 '수입화장품위생허가비준 (進口化粧品衛生許可批件)'을 받아야 한다.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 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취득해야 한다

일반 두발용품(왁스, 젤, 폼아드, 헤어 에센스 등), 안부접촉 두발용품(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스프레이, 헤어도색용품 등), 스킠테어, 메이크업 화장품, 입술용 화장품, 립케어용품, 손/발톱 화장품, 향수 등은 비특수화장품으로 분류한다.

특수 화장품은 발모류, 슬리밍/가슴확대류, 염모류, 퍼머너트류, 제모류, 냄새제거류, 기미제거류, 선크림류 등 9종 화장품을 의미한다.

○ 허가 절차

- ① 계약체결
- ② 고객자료 준비 및 제출
- ③ 위임장 및 사업자 등록증 등록(근무일 기준 5일)
- ④ 샘플테스트(근무일 기준 60일)
- ⑤ 최종자료 발송 및 수리통지서 접수(근무일 기준 5일)
- ⑥ 전문가 심사 및 증서 발수(근무일 기준 35일)

○ 제출서류: 비특수 화장품과 특수화장품 위생허가 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르다.

- 비특수 화장품 위생허가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

- ㉠ 수입 비특수 화장품 행정허가신청서
- ㉡ 제품 중문 명칭과 명칭에 대한 근거
- ㉢ 제품 전 성분 배합 비율표
- ㉣ 제품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요구
- ㉤ 제품의 외국어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품이 중국수출 전용으로 디자인된 경우 중국수출용 포장지(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출
- ㉥ 식약총국에서 인정한 화장품 위생허가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 ㉦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험물질에 관한 안전성 평가 자료
- ㉧ 재중책임회사의 수권서 복사본과 재중책임회사의 영업집조 복사본(공장 날인)
- ㉨ 화장품사용 원료와 원료의 유래가 광우병 발생지역의 고위험물질 금지 제한 사용 요구에 부합함에 관한 승낙서
- ㉩ 제품이 생산국 혹은 원산국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 ㉪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 ㉫ 생산공정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도안
- ㉬ 제품기술요구에 관한 문서(인쇄본과 컴퓨터 파일)
- ㉭ 별도로 검역기구에서 봉인한 판매 중인 미개봉 제품 1개 첨부

* 이상 서류 외 별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NMPA 행정업무접수센터 홈페이지 참조

- 특수 화장품 위생허가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

- ㉠ 수입 특수 화장품 행정허가신청서

⑥ 제품 중문명칭과 명칭에 대한 근거
 ⑦ 제품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요구
 ⑧ 제품의 외국어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품이 중국수출 전용으로 디자인된 경우 중국수출용 포장지(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출
 ⑨ 식약총국에서 인정한 화장품 위생허가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또는 해외실험실에서 발행한 SPF, PFA 혹은 PA 수치에 관한 검측보고서

①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험물질에 관한 안전성 평가 자료
 ② 성급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생산위생조건 심사의견
 ③ 발모, 슬리밍, 가슴관리제품은 기능성 성분 및 그 사용 근거에 관한 과학 자료 제출
 ④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⑤ 제품기술요구에 관한 문서(인쇄본과 컴퓨터 파일)
 ⑥ 별도로 검역기구에서 봉인한 판매중인 미개봉 제품 1개 첨부
 * 이상 서류 외 별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NMPA 행정업무접수센터 홈페이지 참조

○ 소요 비용 및 기간: 지정 심사기관의 테스트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수속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사 제품에 따라 테스트 방법이 상이하므로 허가 비용은 각기 다르다. 비특수 화장품은 4~5개월, 특수 화장품은 1년~1년 6개월 소요된다.

○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粧品衛生監督條例)》, 《화장품행정허가수리조사요점(化粧品行政許可受理審要點)》, 《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進出口化妝品檢驗檢疫監督管理辦法)》 등
 - 담당기관: 국가약품감독관리국(國家藥品監督管理局), 중국질병통제센터(中國疾病預防控制中心)

2018년 11월 10일부터 처음 수입하는 일반 화장품(非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심사관리에서 등록(案)관리로 변경됐다. 수입업체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www.nmpa.gov.cn)의 “수입 非 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관리 시스템(口非特殊用途化妝品案管理系)” 상 등록 및 등록증 병서류 획득 후 수입할 수 있다. 등록증병서류는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 또는 국가약품감독관리부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대신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라 화장품 인증을 받게 된다. 화장품 인증 절차나 인증, 등록기관은 변함없으며 화장품 분류 등이 바뀌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021년부터 중국에서 화장품은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한다. 일반화장품은 비특수화장품에 해당한다. 기존의 화장품위생관리조례에서는 특수화장품을 발모, 염색, 파마, 제모, 가슴관리, 슬리밍, 냄새제거,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등 9개로 분류하고 있다. 新 조례는 파마,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화장품으로 홍보하는 화장품 등 5가지 제품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했다.

화장품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인공 원료’를 사용했을 때 NMPA에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미제거/미백 관련 신 원료와 기타 고 위험성 신 원료는 NMPA에 등록(備案: 신고처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의 신 원료는 NMPA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화장품 인증 신청 및 등록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빙자료, 제품 생산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수출용 제품일 경우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와 실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중국 의료기기 행정허가

의료기기 감독 의료기기 등록 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의료기기 인증 취득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해 있어,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등록되지 않은 의료 기기의 판매 및 사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 의료기기 분류등급

1등급 의료기기는 통상적인 규정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한다.

2등급 의료기기는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관리(제어기능)가 요구되는 의료기기, 3등급 의료기기는 생명 연장 또는 유지에 사용되거나 인체에 삽입 또는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주: 분류는 [의료기기 등급 분류 판정표]와 [의료기기 분류 목록]에 의해 결정

○ 등록 제도

의료기기 등록관리방법에 근거하여 1등급 의료기기는 서류를 필요시에 대비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비안(案)제도로 관리한다. 한편, 2,3등급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 연구 및 결과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한 후 허가하는 등록(注) 제도로 관리하며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또 중국산은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관리부처가 다르지만 수입산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관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제출서류

- 1등급: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자체 검사 보고서, 제품 등록 표준,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 업체 관련 서류)

- 2등급: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 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 시험 보고서(한국) - 없으면, 사유서 혹은 관련 임상문헌, 기타(제품 특성 및 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 업체 관련 서류)

- 3등급: [비삽입형]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 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 시험 보고서(한국),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 업체 관련 서류); [삽입형]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 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시험보고서(중국),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 업체 관련 서류)

○ 소요시간: 보통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10개월이 소요되며, 2,3등급 기기는 2~3등급 18개월 정도 소요된다. 소요비용은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다르다.

○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醫療器械監督管理條例)》, 《의료기기등록관리방법(醫療器械注冊管理辦法)》

- 담당기관: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藥品監督管理總局)

○ 미이행 시 제재사항: 허위 증명, 허위제품, 허위 자료 혹은 기만행위, 뇌물 행위 등 부정당한 수단을 통하여 의료기기등록증 취득, 의료기기등록증 상의 내용을 고치거나, 전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기타 법규에 어긋나는 의료기기등록증 양도 등 행위는 “의료기기 등록 신청 정지” 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당국의 사후심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의료기기 등록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5) CSEL(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총괄하는 제도이다.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여덟 가지 특종설비에 대해 중국 내외 생산자에게 제조허가증(Manufacture License)을 발급하는 제도로, 중국 내에서 특종설비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특수 장비’는 보일러, 고압 용기, 고압 배관, 엘리베이터, 승강기, 여객용 케이블카 및 대형 놀이기구를 가리킨다. 이 인증은 특별한 마크 없이 인증서를 발행한다.

○ 인증대상

- 보일러

- 압력용기
- 탱크류
- 가스 실린더
- 엘리베이터
- 기중기
- 대형 오락시설
- 여객운송 케이블
- 공장 내 기동 차량

* 위 품목에 해당하는 안전 부품 및 안전보호장치 관련 또한 인증대상에 포함됨.

○ 인증절차

- ① 업무계약
- ② 샘플 및 신청서 송부
- ③ 서류 심사
- ④ 샘플 테스트
- ⑤ 공장심사
- ⑥ 허가증 발급

○ 제출서류

- 특수장비 제조면허 신청서 4부
- 제조자 소개서
- 품질매뉴얼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조자가 이미 획득한 인증서의 사본
- 대표제품 카탈로그
- 제품 도면 및 디자인 문서(형식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신청인은 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신청하고 '특수장비 안전관리'로 들어가 특수장비 행정면허 신청서를 작성한다. 특수장비면허 신청은 반드시 홈페이지와 서면신청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홈페이지 (<http://www.samr.gov.cn/>(해외전용 url)에서 등록 신청 후,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면허에 해당하는 서면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서류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소요기간 및 비용

○ 약 8~10개월 소요

○ 비용: 제조면허 평가비용 신청비, 서류검토 및 평가비, 디자인 평가 검토비(형식시험제품에 한함), 형식시험비(해당하는 경우), 현장 심사 및 평가비, 심사 및 평가 보고서 발행비, 면허 발급비, 심사원 출장비 및 숙박비, 보험비 합산하여 약 3만 달러

○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특종설비안전감찰조례(特種設備安全監察條例)》(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549號)
- 담당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6) 중국통신제품형식인증(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

특정 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으로 미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 금지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무선전송 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 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 ID)를 보유하여야 한다. SRRC는 MIIT산하기관으로서 무선제품의 승인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SRRC 내 SRMC는 무선제품 형식승인을 위한 유일한 시험기관이다.

○ 인증대상

- 공공 이동통신설비(GSM, CDMA, Bluetooth, TD-SCDMA 등 데이터 통신 단말기)
- 무선 접속 시스템(SCDMA, PHS, DECT 등 단말기, 단말국)
- 전용 네트워크 장비(FM네트워크, 디지털 무선 시스템, GSM-R, iDEN, TETRA 장비)
- 마이크로 웨이브 설비
- 위성 설비
- 라디오, TV 설비(FM, AM, TV 송신기 등)
- 2.4GHz/5.8GHz 무선 랜 설비
- 단거리 무선 설비
- 레이더(기상, 선박, 항공, 내비게이션 등)
- 기타 무선 전파 송신 설비

○ 등록절차

① 샘플 및 자료 송부: 신청자는 반드시 중국법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HS 코드 등으로 제품해당 카테고리를 확인하고 CCC 및 NAL 인증 대상 유무를 확인한다. 중국 CCC 인증에 중복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선전송 장비 형식승인신청서 및 관련 기술성과 사양에 관련된 자료를 시료와 함께 제출한다.

② 제품 테스트: 무선 규정 및 기술기준에 관련한 국가조항에 따라 SRRC사무소가 신청서류를 검사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규정된 격식에 맞지 않은 서류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신청 누락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된다.

③ 승인서 및 승인번호 발급: SRRC사무소는 신청수리 20일 이내에 모델심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합성이 판단된 장비는 SRRC사무소에서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와 SRRC ID를 부여한다. 승인이 인가되지 않은 모델에 대하여는 신청부서에 그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승인번호 부착/판매: 특별한 인증마크는 없으며 SRRC ID를 부여받는다.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ISO9000 증서 및 기업 현황 및 품질 시스템 소개 자료
- 위탁서
- 제품 중문 매뉴얼
- 기술 규격 사양서 및 기술 정보 설명 자료
- 제품 회로도
- 제품 컬러 사진
- 제품 라벨 도안
- 테스트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라인
- 상표 등록 증명(신청인과 생산 기업이 다를 경우)

○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중화인민공화국무선전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無線電管理條例)》
- 담당기관: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공업신식화부 무선전관리국(工業和信息化部無線電管理局)

7) 에너지효율 라벨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목록’ (이하 ‘목록’)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으로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제품 혹은 포장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에너지효율라벨 등록은 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국가발개위에서 지정한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 인증대상: 에너지효율 표식 대상 품목은 총 30개이다.

- (1) 에어컨
- (2) 냉장고
- (3) 냉각수기
- (4) 열펌프기
- (5) 열펌프온수기
- (6) 세탁기
- (7) 전기온수기
- (8) 온수난방기
- (9) 주방환풍기
- (10) 선풍기
- (11) 전자레인지
- (12) 가스레인지
- (13) 태양열온수기
- (14) 환풍기
- (15) 전기밥솥
- (16) 인덕션쿠커
- (17) TV
- (18) 모니터
- (19) TV셋톱박스
- (20) 복합기
- (21) 프로젝터
- (22) 초소형컴퓨터
- (23) 모터
- (24) 형광등
- (25) LED 등
- (26) 고압 나트륨 조명
- (27) 압축기
- (28) 통풍기
- (29) 교류 접속기
- (30) 변압기

(인증마크) 에너지효율 라벨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다.

- 생산자 명칭 혹은 약칭
- 제품 규격모델
- 에너지효율 등급
- 에너지 소모량
- 제품에 해당하는 에너지효율 국가표준 번호

○ 등록절차

- ① 샘플 및 신청서 송부
- ② 샘플 테스트
- ③ 라벨 등록

○ 제출서류

- 생산자 사업자 등록증 (수입자는 한국 내 생산자와 체결한 계약서 복사본)

- 제품 에너지효율 테스트 보고서
- 에너지효율 라벨 양식
- 초기 사용 날짜 등 기타 관련 자료
- 대리인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 생산자 혹은 수입자가 위탁한 위탁대리 문서 등

제품 생산자 혹은 수입자는 에너지효율라벨을 사용한 시기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등록하여야 하고 모든 서류는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중화인민공화국에너지효율법(中華人民共和國節約能源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華人民共和國認證認可條例)》
 - 담당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8) CQC자율인증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QC 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으로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CQC자원인증 라벨을 부착한다. 즉,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500여 종의 제품에 대해서 인증서가 발급되었다.

- 인증대상
 - 전자부품
 - 가정용가전제품부품
 - 가전제품부품
 - 조명가전제품부품
 - 중소형전기기계
 - 의료기기
 - 가정용 가전제품
 - 상업용 기계
 - 조명가전제품
 - 전선케이블
 - 저압가전제품
 - 전동공구 및 부품
 - 자동차 부속품류
 - 오토바이 부속품류
 - 타이어류
 - 유리류
 - 전력시스템보호 및 자동화 장치
 - 펌프
 - 전력계
 - 저압가전제품
 - 저압플랜트설비 및 부품
 - 고압설비 및 전기기구
 - 발전기세트
 - 실험용측정기기
 - 토공기계 및 부품
 - 전기차 전도충전용 연결장치 충전 단자
 - 풍력발전제품

- 열에너지발전제품
- 건축장식재료 및 제품
- 건강제품
- 목제품, 종이제품 및 인쇄품
- 방직품
- 건축제품
- 위생도자기제품
- 시멘트제품
- 기계제품
- 사무용 설비(기능)
- 피뢰설비
- AV 제품(기능)
- 경형 전기차 및 부품
- 전기차 및 부품
- 베어링제품
- 제한사용유독유해물질인증 RoHS Certification
- 비금속재료 및 부품 기능라벨인증
- 연산배터리CQC라벨인증
- 학생용품
- PAHs인증
- 축전지 및 전지
- 금속용접절단 및 열처리설비

CQC 마크는 인증을 획득한 제품 본체에 마크 인식이 선명한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인증 획득한 제품의 본체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못할 경우,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 혹은 포장 문서 내에 부착할 수 있다. 단, 인증서 상에 표시된 제품만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광고, 제품 소개 등의 제품 카탈로그 등의 자료에 인증마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인증마크의 오기로 사용자들에게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음의 상황에서는 인증 마크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 CQC에서 인증서 사용 정지를 한 제품
- CQC에서 인증서상의 제품 인증을 취소한 제품
- 인증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 후 재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인증 기업의 품질 보증 능력에 변화 발생 후 인증 기관에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기타 인증서 사본
- 일치성 성명서(영문)
- 부품 리스트(CCL)
- 회로도
- 제품 묘사서(필요 시)
- 조립도(필요 시)
- 전기 원리도(필요 시)
- 제품 매뉴얼
- 중문 명판
- 계측기, 생산 설비 리스트, 공장 심사 조사표(공장 심사 필요 시)

○ 인증절차

- ① 온라인 신청 및 서류 검토
- ② 샘플 송부 및 샘플 테스트
- ③ 공장심사
- ④ 인증서 발부

○ 소요기간 및 비용: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접수한 시점부터 인증증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통상 근무일 기준 90일 정도 소요된다. 승인비용은 시험비, 공장심사비, 인증비로 구성됨. 인증대상에 따라 비용은 상이하지만 대략적인 가격은 아래와 같다.

- 시험비: 약 300~400만 원(한화)
- 공장심사비: 약 360만 원(한화)
- 인증비: 약 260만 원(한화)
- 사후심사비: 약 200만 원(한화)
- 연회비: 약 20만 원 (한화)

초기공장심사비는 공장심사 임무령에 규정된 인-일(man-day)로 계산되며, 인일 비용표준은 90만 원(한화)/1man-day이다. 자동차, 타이어, 안전용 유리 등을 제외한 제품의 경우 위 사후관리 공장심사비용은 1회 200만 원(한화)/1factory 이며, 인증서 연회비는 20만 원(한화)/장이다. 인증서 일시 정지 신청 시에도 동일 비용이 적용된다.

○ 담당기관

- 중국인증질량중심(中國質量認證中心)

TBT

1) 국가표준

중국의 국가표준은 GB로 표기하며 이는 國家標準의 중국어 병음 앞글자만 차용한 것이다. 보통 GB 약자 뒤에 숫자를 표기하여 각 국가표준의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이는 강제성을 띤 규범체계로서 위반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국가표준은 3가지 약호로 나뉘어 강제성 국가표준(GB), 추천성 국가표준 (GB/T), 기술 지도성 국가표준문서(GB/Z)으로 분류된다. 또 국가의 자체표준 그리고 업종별 표준으로 나뉜다.

자체표준 분류

GHZB- 국가환경품질표준
GJB- 국가군용표준
GWKB- 국가오염물질제어표준
GWPB- 국가오염물질배출기준
JJF- 국가계량기술규범
JJG- 국가계량검정규칙
GBJ- 건설공학국가표준
GBZ- 국가직업위생기술표준
GBN- 국가내부표준

업종별 표준 분류

AQ- 안전규정
BB- 포장업종표준
CB- 선박업종표준
CECS- 건설공학추천성표준
CH- 측량제도업종표준
CJ- 도시건설업종표준
CJJ- 도시건설공학규범
CY- 신문출판업종표준
DA- 문서업종표준
DB- 지진업종표준

DL- 전력업종표준
DZ- 지질업종표준
EJ- 핵공업종표준
FZ- 방직업종표준
GA- 공업업종표준
GH- 공급판매합작업종표준
GY- 영상컨텐츠업종표준
HB- 항공업종표준
HG- 화공업종표준
HGJ- 화공건설공학규범
HJ- 환경보건업종표준
HS- 세관업종표준
HY- 해양업종표준
JB- 기계업종표준
JC- 건설자재업종표준
JG- 건축업종표준
JGJ- 건설업종공학규범
JR- 금융업종표준
JT- 교통업종표준
JY- 교육업종표준
LB- 여행업종표준
LD- 노동업종표준
LY- 임업업종표준
MH- 민영항공업종표준
MT- 석탄업종표준
MZ- 민정업종표준
NB- 에너지업종표준
NY- 농업업종표준
QB- 경공업업종표준
SB- 상업업종표준
SC- 수산업종표준
SH- 석유화공업종표준
SJ- 전자업종표준
SL- 수리업종표준
SN- 상품검증업종표준
SY- 석유업종표준
TB- 철로업종표준
TD- 토지업종표준
TY- 체육업종표준
WB- 물자업종표준
WH- 문화업종표준
WM- 대외무역업종표준
WS- 위생업종표준
WW- 문물업종표준
XT- 희토류업종표준
YB- 흑색야금업종표준
YC- 연초업종표준
YD- 통신업종표준
YS- 유색야금업종표준
YY- 의약품업종표준
YZ- 우체업종표준
ZY- 중의약품업종표준
ZC- 지식재산권표준

2) 환경규제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친환경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

가 “자동차 배기가스 표준”이다. 중국 정부는 포괄적인 기후변화 관련 환경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중국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지목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자동차 배기가스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석유제품 품질표준 제정 및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규제했다. EU 기준을 기반으로 배기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하고 규제하는 동시에 연료 품질 기준을 높이는 등 구체적 정책을 시행했다. 2000년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인 China 1을 최초 도입한 후 2020년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유럽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안인 ‘유로 6’을 토대로 정립한 China 6을 적용했으며 향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992년 중국은 ‘상품명칭 및 코드 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에 8자리 코드를 부여했다.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세계 해관조직원회와 개정을 시행했고 2015년 4월 1일부로 세계해관조직원회 수정에 따라 중국의 ‘상품명칭 및 코드제도 목록’(進出口稅則商品及品目註釋)을 수정한 뒤 발효했다. 중국에서 무역량이 비교적 크거나 증가율이 빠른 편인 상품에 대해서는 목록에 다시 추가했는데 8자리 HS코드는 2001년 7,111개에서 2020년 8,549개까지 증가했다.

1) 관세 유형 및 정산 기준

중국 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從價稅),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와 두 가치를 결합한 복합세(複合稅)가 있다.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관세가격*관세율’ 계산결과에 따라 수입품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 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에 근거하여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입품의 경우 착안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등 각종 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이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한다. 수입품의 면적, 길이, 용적 및 수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단위당 세금액*수입품 수량’이다.

중국의 수출관세는 주로 수출품의 관세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며, 정산방식은 ‘수출품 관세세액=관세가격*관세율’이다. 관세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을 기준으로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출상품가격에는 출항 전까지 중국 내 운송비, 기타 비용, 보험료가 포함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의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수출세를 징수한다.

2) 관세율 유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매년 ‘관세실시방안’을 통해 각종 세율의 조정내용을 공개한다. 모든 상품의 관세세율은 ‘수출입세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국의 수입관세는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 세율’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과 한·중 자유무역협정(한중FTA)에 따라 협정세율을 비교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최혜국세율

WTO 가입국, 중국과 관세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지역)의 상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경우, ‘최혜국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수출입세칙’(2006년 판)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로 143개 품목의 최혜국세율 인하를 규정하였으며 2007년 판 ‘수출입세칙’에는 44개 품목, 2008년 ‘관세실시방안’에는 45개 품목, 2009년 ‘관세실시방안’에는 5개 품목을 인하했고 2010년에는 6개 품목이 관세인하품목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WTO 가입 당시 관세율 인하에 관한 약속을 모두 이행했다. 2018년 내수진작,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 회복을 위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3,000여 개 품목의 최혜국세율을 인하했다.

○ 잠정세율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의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임시'로 매겨지는 관세율이다.

○ 협정세율

관련 국가(또는 지역)이 중국과 타결한 무역협정 및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또는 지역)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2002년 중국이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에 가입하면서 한중 간 무역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됐다.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 우리기업의 대중 수출에 있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채널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0년 기준 대중 수출하는 한국상품은 최혜국세율, APTA 협정세율과 한중FTA 세율을 비교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혜세율

중국과 특수한 우대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는데 중국 국무원 또는 산하의 관련 부처(기관)가 지정한 국가(지역)에 적용된다.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종의 특별우대조치라고 풀이된다.

○ 일반세율

상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3) 기타 관세

2003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가공무역 수출관세상품의 수출관세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에 따라 가공무역 수출품이 모두 수입자재로 가공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원자재 중 일부만 중국산일 경우, 중국산 자재의 비율에 따라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2010년 12월 5일부로 시행된 '관세에 관한 가공무역 화물의 감독관리방법' 개정 관련 결정에 의해, 세관의 동의 하에 가공무역 수입자재를 보세감독할 경우 가공제품 수출 후 세관이 사정한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의거하여 네팅(netting)한다. 수입 시 과세한 가공제품은 수출 후 또는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이외 반덤핑세 등 관세도 있다.

- 반덤핑세: 징수기간 5년 이내
- 반보조금세: 징수기간 5년 이내
- 세이프가드: WTO 협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긴급수입규제조치, 임시 특별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조사결과에 따라 특별관세 또는 수량적 규제를 시행한다. 세이프가드 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특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관세율을 규정한 농산품에만 적용, '기준을 초과한 수입 급증', '수입가격 급락' 시 자동으로 발동될 수 있다
- ITA 세율: 15가지 상품이 적용되는데 ITA 세율적용 여부는 기업소재지의 세관에서 인정해야 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해당 연도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 세칙(稅則)"에서 상품의 HS CODE와 상품명칭, MFN세율(최혜국세율) 및 수입증치세를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국 수출품목의 HS CODE와 상품명칭을 확인한 후 해당 품목의 최혜국 세율, 감정세율, 한중FTA 세율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관세율 확인 시 통관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의미하는 "감독관리조건"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통관은 수출입 운송수단의 경영자, 송·수화인 및 그 대리인, 화물 소유자가 세관에 수출입 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 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 징수 및 수출입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이하 ‘海關法’에 근거해 중국은 대외개방 항구 및 세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상황의 발생 시 국무원 혹은 그 수권 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미 설립 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세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관 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 등 4단계를 거친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 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 기간 내 세관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통관종료 등 5단계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일반 통관절차

(1) 화물수입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사용 기계설비, 물자 및 가공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해당 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화물 수입통관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밟는다. 감면세 우대정책을 받는 화물인 경우 관할 세관이 발급한 ‘수입화물 면세 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가공무역과 관련된 화물일 경우 관할 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 메뉴얼(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하며, 허가증이 필요한 화물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본으로 기계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국가 상품검사기관의 자산평가를 거쳐 수입통관 수속을 밟으며, 이때 상품 검사기관이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자산가치 평가통지서류(外商投資財產鑑定報驗通知單)’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지 세관이 통관서류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을 허가한다.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화물 면세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해당화물에 세관이 ‘징세’라고 의견을 표명한 화물인 경우에는 수입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신청 중인 화물에 대해서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먼저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하며, 해당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보완 제출한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기한 내 면세 증명이 제출되지 못하면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수입 관세로 변경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2) 화물 수출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화물수출 통관서류’를 작성, 수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허가증 관리상품인 경우에는 ‘수출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가공무역을 위한 가공제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증서(加工貿易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타사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시에는, 대외경제무역부서가 허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지 세관은 통관서류에 따라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관련 화물의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세 납부대상 상품인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3) 수출입 화물의 신고

- 신고 자격 및 필요 서류: 신고는 수출입화물 통관절차의 첫 단계이다. 현재 중국세관이 실시하는 통관신고방식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 3가지로 구성된다.
- 신고 자격 및 시기: 세관에 등록된 통관전문회사, 통관대행회사,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 인원이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입화물의 경우 운송기관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수출화물은 세관의 특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이 세관관리·감독지역에 도착한 후 선적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화물은 도착가격의 5/1000를 수입신고 지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3개월까지도 세관 신고가 없는 경우 수출 화물을 임의로 매각한다.
- 신고 서류와 내용: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출입 허가증(필요 시) 및 기타 관련 서류(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입화물 경영업체, 송수화인, 신고업체, 운수방식, 무역방식, 무역 대상국 및 화물의 설명(명칭,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다.

(4) 신고 절차

- 수입화물의 인출통보 / 수출화물의 준비완료
-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은 운송업체 혹은 우편송달업체의 “수입화물 인출통보서” 접수 후, 직접 또는 전문(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 신고를 진행한다.
- 수출화물의 경우 화물을 보낸 사람 측에서는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화물을 준비 완료한 후 직접 또는 전문 (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 신고를 한다.
- 위탁신고: 수입 혹은 수출 전 수출입항구 부근지역의 전문(대행)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통관신고를 한다. 통관위탁서는 위/수탁 업체의 명칭, 세관등기번호, 주소, 법인대표 및 대행 내역, 권한, 기한, 위수탁자 간의 책임 등을 기재하며 양측 업체의 인장을 찍는다.
- 통관에 필요한 서류: 통관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출입화물신고서 외 기본서류, 특수서류 및 예비서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 기본서류: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
 - INVOICE (운송보험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 P/L(산적화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 제외)
 - B/L (해운 수출입의 경우)
 - AWB (항공운송의 경우)
 - 소포명세서 (우편운송의 경우)
 - 화물수취증 (육상운송의 경우)
 - 수출대금영수 신고확인증 (수출의 경우)
 -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 증명 및 보세등기증명서
 - 특수서류: 국가의 법률법규에 근거한 특수관리증서
 - 쿼터 허가증(국가계획부문의 쿼터증명, 대외경제무역 부문 수출입허가증 등)
 - 기타 특수서류(기계전자제품수입, 상품검사,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등)
 - 예비서류: 필요 시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
- 통관서류 작성: '수출입화물 신고서'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에 화물의 상황을 신고하는 법률문서로서 세관감독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서류이다.
 - 통관신고서의 예비 입력: 전문(대행)통관업체,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원은 우선 신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관단 예비입력이라 하며 수동작업의 통관단과 동등한 법률효력이 있다.
 - 직접신고(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2008년 1월 1일부터 통관명세서 네트워크 검사제도를 실시했다. 전자수속을 하는 기업은 온라인 상으로 데이터 작성, 신고한 후, 해관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은 뒤 전자통관 데이터 수속을 한다.

(5)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지역: 수입화물의 경우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입지 세관에 신고하며, 수출화물의 경우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출지 세관에 신고한다. 타 지역 통관신고 수출입화물은 통관 이전 화물로 호칭한다. 케이블, 파이프라인 혹은 기타 특수방식의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직접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기기로 검사하며 정기신고제를 실시한다. 국경통과, 중계운송, 통과운송 화물은 중국 내 운송시스템을 통해 해외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운송수단 책임자가 입항지 세관에 신고한다.

○ 신고자격: 중국 세관규정에 근거, 통관자격대상은 세관에 등록된 전문(대행)통관업체 혹은 수출입 경영 자격이 있는 기업이다. 세관은 통관신고 수리 시 우선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신고 자격을 확인한다. 세관규정에 따른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
-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는 세관에 등록하여야 함.
- (대행)통관업체는 세관에 등록된 기업이며 위탁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어야 함.
- 통관 인원은 세관의 연수 및 승인을 거친 통관업체의 지정 담당자임.

○ 통관기한

통관기한은 수출입화물의 개항지 도착 후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통관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수입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14일 내이며 중계 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지정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이다. 수출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화물선적 후 24시간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 체납금의 징수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규정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 체납금의 징수기간

해운, 항공운수, 도로운송 방식의 수입화물의 체납금 징수기간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이다.

우편운송 수입화물은 우편국의 통보접수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며, 중계운송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화물의 지정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 통관의 종료일까지다.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중계운송화물의 지정 도착지 도착일 등)부터 14일이 되는 시점이 법정휴가일인 경우 그 다음 일로顺延한다.

○ 체납금의 계산

체납금은 일(日) 단위로 계산하며 통관신고일도 포함한다. 체납금의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10위안이다. 체납금의 단위는 위안화이며 1위안 이하 부분은 절사한다. 세관은 체납금의 징수 후 을 발행한다.

○ 체납금의 면제범위

-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이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통관 신고하지 않는 경우('해관법' 제30조 규정에 근거 화물을 전매 처분)
- 신고인이 세관의 기준을 거쳐 담보제공 후 화물을 인출하며 담보기한 내에 통관신고 수속을 보완, 처리하는 경우
- 세관 압류화물의 경우(압류 기간 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음)
- 징수액이 10위안 이하인 경우
- 신고인은 특수한 이유로 규정기한 내에 통관신고를 못한 경우 세관에 상황설명 자료를 제출하여 기준을 취득하면 체납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 수출입 화물의 검사

해관법(海關法) 제28조 규정에 근거 수출입화물은 송수 화인의 신고 및 해관총서의 특별 기준을 거쳐 검사면제를 취득한 것 외에는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상품의 통관을 위한 화물검사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관 검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관의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또는 화물 존치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 및 통관업체의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검사는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이 신고내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세관 절차를 말하며 세관의 검사목적은 아래와 같음.
-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과 통관단(통관증) 등 서류신고내역의 일치성에 대한 검사확인을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누락, 허위, 사기 등 밀수, 위법행위 및 기타 문제를 실질적으로 확인
- 화물검사를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문사항을 재확인하여 세금징수,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 근거를 제공
- 수입화물의 HS code, 적용세율, 도착항인도가격 등은 검사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의 감독지역 내 항공, 기차역, 공항, 혹은 기타 세관 감독 장소에서 진행된다. 다량의 산적화물, 위험제품, 해산물, 바지선 운수화물 등은 신고인의 작업현장에서 직접 검사한다. 특수상황에서 세관 담당자를 공장, 창고 혹은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 세관은 실제 경험 및 현장감독에 소요되는 인력, 물자, 장소 등 조건에 근거 전수검사, 추출검사, 외형검사 등 검사방식을 채택
- 포장된 화물의 개봉은 반드시 화주(貨主) 또는 대리인의 현장 입회하에 통관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포장되지 않은 광물질, 곡물, 원유, 원목과 같은 화물과 화학비료, 시멘트, 설탕, 철강재와 같은 대량의 화물 및 위험물에 대한 검사는 선적선박현장에서 실시
- 매 건마다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써 화물의 품종, 규격, 수량, 중량, 원산지, 상태 등 모든 내역을 신고서류내역과 대조, 확인
- 일정 비율의 화물을 선정한 후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써 검사대상화물의 품종, 규격, 수량, 중량, 원산지, 상태 등을 신고서류내역과 대조, 확인
- 주로 화물의 포장, 마크 등에 대한 검사로서 화물의 겉면포장의 개폐 여부, 파손흔적 및 기타 음란성 문자 혹은 그림의 유무 등을 확인
- 수출입화물의 검사종료 후 세관 담당자는 '해관수출입화물 검사기록' 1부를 작성하며, 주로 검사 시간, 장소 및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명칭, 화물 상황, 검사종료 후 화물의 운송포장상황(운송수단 명칭, 컨테이너 번호 및 규격, SEAL NO. 등), 화물의 명칭, 규격, 원산지, 품질, 수(중)량, 상태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조립품, 부품 등) 및 기타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의 유실 및 그 원인, 견본품의 인출 등 내역 외 세관의 검사결과를 기재
- 화물검사기록부는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 시 작성 필수 작업서류로서 수출입화물의 현장검사 증명서류인 동시에 세관과 화물의 송·수화인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증빙서류이며 검사기록부는 세관의 관세징수, 통계, 사후관리 및 '수출입화물증명서'의 발행근거이며 밀수 등 위법 안전 조사 및 납세분쟁 처리의 증거가 됨.

세관 검사는 통관수속의 중요 절차이므로 통관원은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검사한다.

- 세관 검사 현장에서 화물의 운반 혹은 개폐 작업을 책임짐.
- 세관담당자의 제출문제에 답변하거나 필요서류를 제공
- 화주가 세관감독지역 외 장소에서의 검사 요청 시 사전에 세관에 신고
- 세관 검사 과정에서 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에 배상요구 및 관련수속을 진행
- 사전에 수출입화물에 대해 이해하고 신고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은 조회 혹은 지적

'해관법' 제94조 규정에 근거 검사과정에서 수출입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은 반드시 실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수출입화물의 검사 시 세관 검사 담당자로 인해 야기된 피검사 화물의 손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손실액이다. 배상금

액은 손상된 화물, 물품 및 부품의 손해 정도 혹은 수리비용에 따라 확정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이 제출한 감정증명에 따라 확정한다.

세관검사과정에서 발생한 화물, 물품의 손해원인은 여러 가지로 세관 측의 직접원인, 송·수화인 측의 직접원인 혹은 세관, 송·수화인과 관계없는 객관원인일 수 있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세관의 직접원인으로 인한 화물, 물품의 손해부분에 제한되며 세관의 합법적인 행정행위 및 세관 인원의 직권행사와 관계없는 개인 행위 혹은 송·수화인의 착오로 발생한 손해 등은 세관의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세관의 배상제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운반, 포장 개폐 혹은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손해
- 부식 및 실효성 화물, 물품이 세관의 정상업무 소요시간 내(압류, 대리보관기간 포함)에 발생한 변질 혹은 효력상실
- 세관의 정상검사로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
- 세관의 검사 전 혹은 검사 후 발생한 손상
- 불가항력 원인으로 발생한 화물, 물품의 손해 혹은 손실

세관 담당자의 화물,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 담당자는 '중화인민 공화국 해관 화물, 물품검사 손해보고서' 2부를 작성, 세관 담당자와 화주가 각각 서명)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만일 화주가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세관 담당자가 검사, 재검사 혹은 견본품의 인출 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 담당자는 현장에 있는 화물, 물품의 보관인이 '손해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하며 화주에게 통보한다.

화주는 “손해 보고서” 접수 후 손해와 관련해 세관과 협의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의 감정증명에 의해 손해 정도를 확정한다. 최종 세관이 심사 확정한 화물의 세후 가격을 계산기준으로 실제 배상액을 확정한다. 세관의 배상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배상금액을 판정한다.

배상금액을 화물의 수리비용에 근거해 계산하는 경우 손해화물, 물품의 실제 수리비용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하며 세관은 '손해화물, 물품의 배상통지서'를 발행한다. 화주는 '통지서' 접수 후 3개월 내 세관에서 직접 배상금을 수령하거나 은행구좌를 통해 이체할 수도 있다. 3개월 기한이 지나면 세관은 배상하지 않으며 배상금은 위안화로 지급한다.

○ 수출입화물의 이전통관

이전통관은 개항의 수출입화물의 분산운송을 촉진하고 송·수화인의 세관수속 편의를 위해 세관감독화물을 기타 세관 지역으로 운송하여 수출입 통관수속을 진행하는 통관 방식으로 이전통관 하는 화물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 중국 내 입경 후 세관설치 지역으로 운반, 수입 통관수속을 받는 화물
- 출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후 출항지역 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과하는 화물
- 중국 내 어느 한 세관 지역에서 다른 세관 지역으로 운송되어 세관 감독을 받는 화물

중국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전 통관화물 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입항지역 세관의 실제 감독 대상이 아닌 이전통관 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각 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입항지역(출항지역) 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 도착지 혹은 출발지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수단 및 그 장비는 밀폐 및 봉인 가능할 것
-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업체는 세관등록을 거쳐야 함.

아래의 특수화물의 경우 세관의 비준을 거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 국가의 중점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지급물자
- 국가의 농업생산건설에 필요한 지급물자

- 플랜트, 정밀계측기기 및 포장개봉 후 장거리운송이 적합하지 않은 화물
- 재난구호용 물자
- 기타 특수상황

소형승용차의 이전통관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컨테이너방식의 운송
- 철도방식의 운송
- 전문 운송수단을 통한 운송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차량은 하기 아래의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 차체와 연결된 적재함의 전부(혹은 일부)가 밀봉상태 유지
- 차체와 적재함 간 은폐공간이 없어야 함.
-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세관 검사에 편리해야 함.
- 세관 검사 승인을 받은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교환, 갱신, 개·보수 혹은 수리 시 세관 사전신고 및 사후검사를 거쳐야 함.

중국세관 규정에 근거, 이전통관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송업체는 사전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내역은 업체, 운송수단, 운전자 등이며 해당하는 담보물 혹은 담보 증서를 제공하고 세관의 요구 시 담보금을 납부한다. 세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영업허가증 부분 혹은 사본
- 교통관리부문의 운송수단 운행증 사본
- 운전사의 운전면허증 사본(선박 제외)
- [이전통관 화물운송 자동차 신청서] 혹은 [이전통관 화물운송 자동차 신청서]

세관은 제출서류의 심사확인 후 '이전통관화물 운송등기증서'를 발급하며 운전사는 세관의 연수과정을 통과한 후 비준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이전통관 화물의 통관절차

- ① 수입화물의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항지 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
- ② 신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이전통관 화물운송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함)를 작성한 후 세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 3부를 발급
- ③ 신고인은 세관에 신고서 및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도착지 세관 발행), 기타 관련서류(B/L, 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
- ④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은 신고인이 사전에 도착지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하면 도착지 세관은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를 작성,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 ⑤ 입항지 세관은 제출서류를 심사확인 후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 ⑥ 신고인은 세관의 지정경로에 따라 규정기한 내 수입화물을 도착지 세관에 운송하며 도착일부터 14일 이내에 통관 및 납세수속을 신고
- ⑦ 도착지 세관은 통관수속 종료 후 입항지역 세관에 회답서를 송부
- ⑧ 홍콩, 마카오를 왕래하는 수입차량의 적재화물은 차량운전사가 입항지 세관에 '적하 목록' 3부 및 기타 운송서류를 제출하며 입항지 세관은 심사확인 후 밀봉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반환하고, 도착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운송차량 및 적재화물의 통관 수속을 처리
- ⑨ 보세창고 간의 화물 이전통관은 정상적인 입출 신고 외에 상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고서 작성 시 도착지란에 보세 창고명을 기입
- ⑩ 항공운수화물은 도착지와 운송 서류상의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은 운송서류에 "세관감독화물인"을 찍는다. 목적지가 다른 경우 상기 통관수속 진행

수출용 이전통관 운송화물

- ① 수출화물의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화물의 출항지 세관에 이전 통관 신고를 진행
- ② 신고인은 '이전통관 수출운송화물 신고서'(이하 이전운송 신고서라 함) 및 '수출화물 신고서'(이하 수출화물 신고서라 함)를 작성한 후 세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해 각각 3부를 출력
- ③ 신고인은 이전운송 신고서, 수출화물 신고서 및 관련 운송서류에 의해 수출통관 및 납세 수속을 진행
- ④ 출발지 세관은 통관 및 납세수속 종료 후 '이전통관 수출화물 연계서를' 밀봉서류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 ⑤ 출항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화물을 통과시킨 후 출발지 세관에 회답서를 송부

세관의 감독사항

- ① 수입화물은 반입되어 세관수속이 끝날 때까지, 수출화물은 세관신고를 한 때로부터 반출할 때까지, 과경(過境)화물과 전운(轉運)화물 및 통운(通運)화물은 반입한 때부터 반출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함.
- ②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항지 세관에 통관수속을 신고하며 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입수속을 신고하며 규정기한 초과 시 해관법(海關法)에 근거 채납금을 납부
- ③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도착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관법에 근거해 처분되며 처분소득액은 운송, 하역, 보관 등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납입됨.
- ④ 이전통관 화물은 세관의 허가 없이 개봉, 재포장, 대체교환, 인출, 인도하지 못하며 세관이 운송수단 및 화물에 첨부한 봉인(세관이 허가한 상업용 봉인 포함)을 임의로 뜯거나 훼손하지 못하며 이전통관화물은 세관의 지정창고 및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관리인은 세관 규정에 따라 화물의 입·출고수속을 처리
- ⑤ 이전통관화물을 압류, 운송하는 경우 신고인(혹은 운송인)은 세관에 규정 비용을 납부하는 동시에 세관 감독을 위한 업무조건을 제공하며 이전통관화물이 국내운송과정에서 훼손, 결손,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인(운송인, 보세창고관리인)은 세관에 신고하며 불가항력 요인 외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 부분의 세금납부 책임을 짐.

수출입화물의 통과(放行)

- ① 통과(放行)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현장감독방식으로, 통관절차의 마지막 단계임.
- ② 해관법(海關法) 제29조 규정에 근거, 세관의 특별허가를 득한 기타 경우는 납세완료(혹은 담보 제공) 후 통과(放行) 직인을 찍음.
- ③ 통과(放行)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서류심사, 화물검사, 관세(비용) 징수 등의 확인 후 세관의 현장감독을 종료하는 단계로서 세관은 신고서류에 통과인(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킴 (통과는 통상적으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현장감독 업무의 종료를 의미하나 특수 무역방식의 경우는 다소 상이).

통과장(放行章): 일반적으로 신고인의 서류제출 및 관세납부 후 세관이 신고서류에 통과장(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킨다.

- ① 수(출)입 화물 증명서 발급
 - 수(출)입 화물 증명서는 세관 감독 화물의 실제 수입 혹은 수출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서 화물의 소유자 혹은 그 통관원의 요청에 의해 통관수속 종료 후 발행
 - 세관은 서류위조를 통한 밀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에 위조방지 표시가 있는 수(출)입화물증명서를 발급하며 1부 당 10위안의 수속비를 징수
- ② 수출환급 통관단 발급
 - 환급 관련 수출화물의 통관신고 시 신고인은 '수출환급 통관단'을 작성
 - 세관은 통과(放行) 결정 후 통관단에 검사완료인, 세무기관 등록표시를 하고 수출환급 담당자의 인감 심사 및 위조방지 표식 부착 후 반환하면 신고인은 이를 세무기관에 제출
 - 고액 관세율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이 밀봉서류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주면 신고인은 이를 환급지 세무기관에 제출

수입외화결제, 수출외화영수 수출입화물 통관단 발급: 세관은 수출외화영수와 수입외화결제용 수출입 화물 통관단에 대하여 해관은 통과 종료 후 통관단에 검사필인, 위조방지 표시(우측상단)를 부착한 후 신고인에게 반환한다. 신고인은 이를 가지고 수출입 관련 등록말소 수

속을 진행한다.

수출화물의 취하:

- ① 통관취하는 수출신고화물이 통과수속 후 특별한 이유로 선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인이 반송을 신고하여 수출하지 않는 것을 말함.
- ② 통관반송화물은 반송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감독지역에서 반출·운송
- ③ 수출세금 기납부 화물은 납세일로부터 1년 내 서면신고서 및 납세영수증에 의해 세관에 반환을 요청
- ④ 세관의 통과수속 후 운송수단의 선적배치 등 원인으로 수출화물의 전부 혹은 부분이 선적되지 못하면 신고인은 [수출화물 통관단 변경신청서]를 작성
 - 화물 전부가 선적하지 못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거쳐 우선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수출통관수속을 밟으며, 부분화물의 경우는 신고화물의 전부를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실제 수출화물에 대해 통관수속 진행

6) 수출입 담보

수출입 담보의 내용: 수출입 담보는 수출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조직이 특수 수출입무역 혹은 세관 사무 등의 실행을 위해 세관에 현금, 담보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행위의 합법성 혹은 일정 기간 내 약정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입 담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약정의무의 이행: 신고인은 규정 기간 내에 세관수속 보완 등 약정의무를 이행해야 함.
- 예를 들어 수입통관과정에서 수입화물의 송장을 제출하지 못하면 우선 해당액의 담보제공 후 화물을 인출하나 반드시 규정기한 내에 송장을 보완해야 함.
- 법적 제재: 신고인이 담보 관련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세관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일정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
- 예를 들어 신고인의 감면세 수속 신고 과정에서 수입화물이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인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세금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후 우선적으로 통관할 수 있음.
- 단, 규정기한에 감면세 수속을 완료하지 못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관은 통상 보증금 공제 방법을 채택함.

수출입 담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의 확정,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세관수속의 종료 전에 화물을 통관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이 불명확하여 통관수속이 지체된 상황에서 신고인이 화물의 통과를 신청한 경우
- 통관 수속 시 관련 증빙서류(송장, 계약서, P/L 등)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 화물의 지급 반입 혹은 수출화물의 지급 반출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감면세 수속 과정에서 화물이 이미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 반입 혹은 지급 선적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신고인이 관세의 추후납부를 신고한 경우
- 임시 수출입화물(ATA Carnet(까르네 제도) 관련 화물 포함)
- 통과하지 못한 화물을 임시로 세관 감독 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화물
- 위법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혹은 물품)의 통과

단, 국가 법률·법규의 별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수출입관리 법률, 법규가 담보 관련 별도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관의 담보제도를 적용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의무 수출입화물을 규정 기간 내 이전 혹은 은폐하는 경우
- 지적재산권 침해혐의의 수출입화물 압류 혹은 통과
- 수입화물의 덤핑(혹은 보조금)이 임시 판정으로 대외경제무역부문이 동종 제품의 수입 관련 담보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위법혐의가 있으나 몰수하지 않은 수출입화물

- 중국 내 영구거주지가 없는 세관의 행정처분 대상자가 처벌에 불복하거나 출국 전 벌금 혹은 위법소득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담보인의 자격 및 담보책임

해관법은 담보인에 대해 “세관의 담보 의무 이행능력을 갖춘 모든 법인, 조직, 개인은 담보인 자격이 있음. 단 법률규정에 근거 담보인 자격을 취소당한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인의 담보 의무 이행능력은 주로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재산소유 및 민사행위능력에서 나타난다.

담보인은 다음과 같은 담보책임은 진다.

- 해관법에 근거 담보인은 규정 기간 내 담보책임을 이행해야 함.
- 담보책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주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모든 세관수속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담보책임 범위에 담보뿐 아니라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담보기한: 담보인의 담보책임을 시작 및 종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규정 기간 내에 담보책임을 이행하면 피담보인의 세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종료됨.
- 담보기한은 통일기준이 없으며 담보범위별 세관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
- 담보책임을 해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증빙서류의 보완 및 관세 혹은 벌금을 추가납부 한 경우 담보책임은 해지되며 세관은 안찰철폐 및 보증금을 반환

○ 수출입 담보 방식

- ① 위안화, 자유태환화폐: 위안화는 중국의 법정화폐로서 중국 내 모든 공적(혹은 사적)채무의 지급수단이며 이 외에 자유태환화폐도 국가외환관리국의 대외공시 국제지불수단으로서 통상 외화 현금을 가리킴.
- ②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담보의 지급형태는 통상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등이며 이 외에 외화지급증서, 외화유가증권 등도 포함됨.
- ③ 은행 혹은 비(非)은행금융기구가 제시한 보증서
 - 보증서는 보증인의 신용 및 무형자산을 근거로 채무 관련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상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가 발행
 - 단 '중국인민은행법(中國人民銀行法)'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함.
 - ATA Carnet(까르네) 관련 임시 수출입 화물(전시품 등)은 국가의 ATA공약 담보기구를 담보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④ 기타 재산 혹은 권리: 상기 담보물 외 기타 세관의 인가를 취득한 재산 혹은 권리를 가리킴.
- ⑤ 세관의 담보 관련 업무집행: 해관법에 대응하는 세관의 담보관련 실시방법의 미제정으로 현재 중국세관은 [수출입화물 담보신청 관리방법]을 그 법률 근거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 ⑥ 보증금
 - '수출입화물담보신청 관리방법'에 근거 보증금은 현금방식의 담보이며 담보액은 관세 및 기타 비용의 합계와 같으며 보증금 방식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
 - 감면세 수속 과정의 수입화물의 통과
 - 담보방식의 미확정 상태에서 신용도가 낮은 통관업체 혹은 민감성제품
 - 담보인이 보증금 담보를 자원 신청
- ⑦ 보증서: 보증금방식 외의 모든 경우에 보증서 방식이 적용되나 그 보증인자격이 규정요구에 부합 필수
- ⑧ 담보절차
 - 세관의 담보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화물은 담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상황에 따라 담보방식을 확정
 - 보증금방식의 경우 담보인은 관세액 및 기타 비용의 해당액을 납부한 후 [해관보증금 영수증]을 수령
 - 보증서 방식의 경우 세관의 규정 양식에 따라 2부의 보증서를 작성하며 세관과 담보인이 각각 1부씩 보관
- ⑨ 담보기한
 - 일반 수출입화물의 담보기한은 통상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수상황 발생 시 담보 기한 내 세관에 연기신청을 하여 비준을 받음.
 - 임시 수출입화물은 통상 화물의 수입일로부터 6개월임.
- ⑩ 담보의 철폐
 - 담보인은 담보기한의 만료 후 '보증금 영수증' 혹은 보증서에 의해 세관에 담보철폐를 신고

- 담보인의 약정의무 이행을 확인한 후 세관은 보증금 반환 혹은 보증서 철폐 수속을 처리

⑪ 담보인의 법률책임

- 담보기한 내에 담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책임을 추궁
 - 관세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동시에 통관신고업체가 수출입 수속을 보완하도록 하며 해당 벌금을 요구
- 담보인의 납세의무를 추궁하며 은행통보 및 벌금을 징수
- 통관업체의 통관자격을 잠정 중지 혹은 철폐

2) 전시품(샘플 등 포함) 통관 및 관세제도

○ 전시회를 위한 샘플 수입 및 반출의 현지 수속

전시품은 세관의 동의를 거친 후 임시수입화물로 지정되고 수입허가증의 취득,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의 납부가 면제된다. 전시품에 중국 법률, 법규가 규정한 수입규제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시회의 주최기관은 검역(檢疫) 혹은 허가신청 수속을 거쳐야 하며 수입전시품은 입국일로부터 반출까지 세관의 감독관리가 따른다. 수입전시품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이 해당된다.

- 전시회, 교역회(交易會), 회의 및 유사 활동에 전시용 또는 홍보용 화물
- 홍보, 전시를 위한 기계의 사용에 필요한 물품
- 출전자가 임시용 전시대를 설치하면서 필요한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자재
- 전시품의 홍보에 사용되는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설명서, 광고 등

ATA 까르네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ATA 까르네에서 규정된 화물에만 제한된다.

○ 통관수속

전시품의 통관은 수입과 반출로 구분되고 소유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대리인이 진행하는데 그 통관절차는 1) 해관에 전시품 수입검역 신청, 2) 출입국 검사검역국에 검사, 3) 수입허가, 4) 전시품 수입 통관 신청 등이다. 해관 심사에서 통과되면 통관이 완료된다.

전시품은 수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는데 반출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주관 해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해외기관이 중국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의 전시품 수입통관

전시회 주최기간은 사전에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관련 부처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제출한다. 주최기관 또는 주최기관의 위탁을 받은 운송기관의 대표자만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세관은 출전자의 신청을 별도로 접수하지 않는다. 주최기관은 통관, 운송대리업체와 전시품 수입 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등록수속을 거쳐야 한다.

- 국가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시회의 개최허가증
- 주최기관의 등록서
- 주최기관의 등록신청서
- 통관, 운송대리 위탁서
- 세관이 인정하는 담보, 즉 세금액과 상당한 보증금,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보증서, 세관이 인정하는 기타 방식의 보증 등
-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수입 전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전시품 리스트(2부)를 제출한다. 리스트에는 전시품의 명칭, 규격, 수량, 컨테이너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순서에 따라 번호를 입력하고 책자로 묶어야 하며 영문 자료는 중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ATA 까르네에 따른 전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화물 통관서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수입세 및 보증금의 제공을 면제한다.

그러나 그 전시품이 중국 법령, 법규가 규정한 수출입규제화물일 경우, 관련 수순, 즉 검사 또는 허가취득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예컨대, 상품검역, 약품검역, 동식물 검역, 안테나 관리의 대상으로 되는 전시품의 수입에는 수입수속을 진행하는 세관에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이

발급한 공고서, 화물운송장, 컨테이너 리스트를 제출하고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세관의 감독관리하에 전시회 개최지에 운송된다.

○ 전시품 반출

전시회 종료 후, 개최지의 세관에서 전시품 수취 수속을 거친다. 전시회의 주최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관련 수취 리스트와 운송장을 제출하고 전시품의 반출을 신청한다.

○ 반출 하지 않는 화물에 대한 규정

- 전시회 기간 내에 상품이 판매될 경우: 주최기관 또는 그 대행업체는 세관에 중국 대외무역관리부서가 발행하는 허가증을 제출하고 세관에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
- 전시품 소유자가 증정을 결정하였을 경우: 세관이 허가는 물품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이 처리
- 전시품이 파손, 분실, 도난 등 이유로 반출 할 수 없을 경우: 전시회의 주최기관 또는 대행업체는 조속히 세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수속을 진행
- 파손된 전시품: 세관은 파손 정도에 따라 견적
- 분실 또는 도난 된 전시품: 동 종류의 제품 수입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
- 불가항력적 이유로 파손된 경우: 세관은 파손상황에 따라 세금을 감면

○ 일시적 수출입 화물(전시품)이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라 손상되고 원상복구하여 수출할 수 없을 경우 ATA 가르네 소유자 또는 ATA 가르네 이외의 일시적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혹은 송하인은 신속히 세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기초하여 반출 수속을 할 수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파손되었거나 사용가치를 잃었을 경우 세관에서 확인 후 해당 화물은 반출 품목으로 취급

○ 관세규정

전시회의 개최를 위하여 수입하고 반출하지 않은 모든 화물, 물품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단 다음과 같은 화물,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전시회의 성격, 전시자의 규모, 참관자 인원수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수량 및 총액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 수입관세 면제 대상

- 전시 과정에서 외국 화물을 대표로 하는 작은 샘플(수입품 또는 전시기간 중 수입 원자재로 만든 식품 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는 음료)
- 출전자가 출전기간 중 참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개인용품 또는 개인 소비품
- 저가의 광고 샘플 용품
- 상업용이 아니며 1인당 용량이 기존 제품의 포장 용량보다 확연하게 작은 물품
- 기계 또는 부품의 전시에서 조작전시를 실시하기 위해 수입하지만 조작 전시 과정에서 소모 또는 파손되는 물품
- 출전자가 전시대의 설립, 수선, 배치, 장식을 위하여 수입하여 사용 후 폐기하는 저가품(페인트, 벽지 등)
- 출전자가 출전기간 중 참관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전시활동과 관련된 홍보인쇄물, 상품리스트, 설명서, 가격리스트, 포스터, 광고, 달력, 사진(틀에 표장하지 않는 것) 등
- 국제회의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관련 서류, 기록, 표 또는 기타 서류
- 전시회에서 보세(保稅) 전시품을 현지에 판매하는 경우

일시적 수출입화물은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화물취급자는 화물수입 후 30일 내에 세관에 신청하고 허가 후 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수속을 진행한다. 보세전시품을 판매할 경우, 일반 수입 전시품으로 변경한 다음 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진행한다.

전시회 주최기관은 조속히 일반 수입 전시품으로 변경하고 출전자 또는 그 대행업체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전자가 전시회 종료 후 전시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속을 거칠 필요가 있다.

- ① 중국 무역회사 또는 수출입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판매할 경우, 구입자가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진행

- ② 출전국의 주중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관에게 판매 또는 기증할 경우 대사관, 영사관이 세관에 수입 수속을 진행
- ③ 중국 혹은 외국 기관 또는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전시회 주최자가 수입절차를 진행

전시품 판매의 수입수속은 수입허가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수속을 거치며 세금을 납부한다. 상기 수입수속 종료되면 세관이 전시품 판매를 허가한 것이다.

전시품을 증정품 또는 샘플로 기증할 경우, 전시회 주최기관은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품목명, 수량, 가격, 기증대상을 상세히 기재하고 전시품 기증확인서를 제출한다. 전시품의 수령자가 세관에 수입수속을 밟는다. 세관은 증정품 혹은 샘플의 수입관리규정에 따라 납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수입전시품에 대한 특별 규정: 전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대리인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류 등 상품은 검역, 통관수속에 비교적 장기간 소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품은 정규 루트에서 신청한다. 화물이 세관에 차압 되면 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화물로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수입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소액 물품 통관

중국에서는 소액 물품에 대해 면세규정을 적용한다. 1) 관세액 50위안 이하 화물, 2) 상품가치 책정할 수 없는 홍보물과 샘플, 3) 중국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수량 이내의 개인사용 목적의 수입물품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개인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화물로서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화물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 사용 수량 제한”을 초과할 경우 별도 수입세가 부과된다. 홍콩/마카오발 개인용 우편물은 그 가치가 800위안, 기타 해외지역은 1,000위안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개인물품 사용량 제한 초과시 부과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① 서적, 신문/잡지, 교육용 동영상, 컴퓨터, 촬영기기,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제품, 식품, 음료, 귀금속, 완구, 게임, 오락제품, 약품 등: 13%
- ② 스포츠용품(골프용품 제외), 낚시도구, 섬유제품, TV 촬영기기, 자전거 등: 20%
- ③ 담배, 주류, 주얼리, 골프용품, 고급 시계, 고급 화장품: 50%

통관 시 유의사항

라벨링 문제는 우리나라 식품 및 화장품 품목의 대중 수입불허의 3대 사유 중 하나인 만큼 그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품목에 따라 중문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기도 하다.

중국은 ‘제품 품질법’ 등 규정에 의거, 모든 수입상품에 중문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번역한 중국어 명칭은 1) 제품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2) 번역한 중국어 명칭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오해할 여지를 주어서는 안되며, 3) 번역한 중국어 명칭에 타 브랜드와 같은 또는 비슷한 중국어 명칭을 사용하여 타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등 요구가 있다. 라벨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대리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등록 정보(제조자 명칭) 및 소재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품질검사합격증명서의 관련 정보 게재도 의무화했고 강제성 국가표준, 업종기준 및 지방표준의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부합됨’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제품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 ① 제조 일자 및 안전사용기한을 모두 표시하는 방법과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방법(제조 일자, 보존기한, 제품품질보증기한 등 표시 없음)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 ② 규격, 등급, 수량, 용량, 주요 성분(제품 특징 및 사용요구에 기초하여)
- ③ 경고마크 및 설명(부적절한 사용, 제품 파손이 있을 경우, 또는 인체 건강 및 심신과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일 경우)
- ④ 설치, 보수유지, 사용법 설명(성능, 구조 및 사용방법이 복잡하고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제품)
- ⑤ 제품인증마크(강제제품인증실시제품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일 경우)

아래 제품은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다.

○ 화장품

- 제품명칭, 제조업체 명칭, 제조국, 제조업체 소재지, 용량, 로트번호, 사용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수입화장품인증/등록번호, 중국 측 책임 담당자(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 명칭 및 주소 등을 중문 라벨에 명시해야 한다.

○ 약품

- 약품 라벨은 내부라벨과 외부라벨로 구분되어 있다. 약품 내부라벨이란 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라벨을, 외부라벨은 내부라벨 이외의 포장라벨을 의미한다. 약품 내부포장 사이즈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 내부라벨에는 약품 명칭, 규격, 제품 로트번호, 유통기한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만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다면 상기 4개 항목 내용 이외에도 적용증상 또는 주요 효능, 용법·용량, 제조 일자, 제조 기업 등 내용도 게재해야 한다. 약품의 외부라벨에는 약품 명칭, 성분, 성상, 적용증상 또는 주요 효능, 규격, 용법·용량, 불량반응, 금기사항, 주의사항, 저장, 제조 일자, 제품 로트번호, 유효기간, 허가증 번호, 제조기업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식품

- 식품 라벨에는 식품명칭, 원산지 및 대리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의 등록한 명칭, 소재지, 제조 일자, 품질보증 기간, 보존조건, 내용량, 규격, 성분 또는 배합표, 첨가제의 국가표준 중 명칭, 법규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 허가증 제도에 적용되는 공업제품(상세한 내용은 ‘생산허가증제도를 실시하는 공업제품목록을 참고하기 바람)

- 위탁가공생산의 경우, 기업은 제품 또는 그 포장, 설명서에 위탁기업의 명칭, 주소 및 위탁수주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허가증 표식과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만일 위탁기업이 위탁가공을 실시하는 제품의 생산허가증을 구비한 경우, 위탁기업의 생산허가증표식과 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상기 내용들은 모두 중국어(간체)로 작성해야 하며 중국어 핀인(音) 또는 외국어 알파벳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중국어 핀인 또는 외국어는 중국어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제품표시로 사용하는 한자, 숫자 및 알파벳 폰트 크기는 1.8mm 이상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수입품 포장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태가 빈발하자 당국은 방역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입산 냉동/냉장 식품 추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통 경로 등록을 의무화했다. 특히 분유, 냉동/냉장 육류와 수산물, 화장품 등 중국 소비자의 해외소비수요가 많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제품은 수입상품 추적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운송현황

도로, 철도, 수운과 항공 등 운송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우리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 도로

- 규모가 작고 네트워크의 정비 미흡
- 도시 내부로의 진입 제한조치가 많음
- 省 간 운송 라이선스 제도 존재 및 통행료 징수체제 불투명
- 수송 도중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한 대응조치 부족
- 고품질의 운송에 필요한 하드웨어 부족(노후차량 과다 등)

○ 철도

- 화물수송 운행표의 비공개
- 화물예약 마감시간이 촉박하고, 성수기에는 운송 능력 미비로 예약이 어려움
- 생산재 운송이 우선이며 소비재는 후순위임
- 서비스 품질의 불안정
- 철도연계 운송업 미발달

- 수운
 - 창장(長江)의 자연, 기상조건에 따라 기항 일정과 이용 선박형태가 유동적
 - 창장 유역항의 하역이 수위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효율적
 - 선박, 항해 기술이 전체적으로 낙후
 - 선박회사의 평균 수송량은 1만 톤 이하로, 리스크 부담 능력 떨어짐
- 항공
 - 항공사와 공항 간 제휴, 협력 관계 약함
 - 공간적 제약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베이징 레인보우(瑞博) 물류

주소	北京市密云新南路110鼓街道事公231室-226
전화번호	+86-186-1841-6909
이메일	rbl_cn@163.com

○ 청도금문국제화운대리유한공사

주소	山省市城元路空港工特物流有限公司裁3
전화번호	+86-532-8386-3081
이메일	ceo@qdgoldengate.com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및 실시조례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외상투자법은 총 6개 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유지하면서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관리제도를 확립한 것이 외상투자법의 특징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심사허가+우대정책’ 위주였다면 외상투자법에서는 ‘내·외자 동등 대우 원칙’을 강조했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산업은 모두 투자가 가능하도록 원칙을 확립했다.

또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재권 보호 및 강제기술이전 금지, 지재권 침해 시 법적 책임 추궁 등을 강조했다. 외상투자과정의 기술협력 조건은 투자 각방이 공평한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행정 기관이나 관계자가 행정수단 활용한 강제기술이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 약속 이행 강화, 수용 금지 및 수용 시 합리적 보상 지급, 외자기업 금융거래 자율권 보장과 외자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리보장을 강조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초기부터 40년간 외국인투자 기업유형에 따라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을 적용해왔다.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인 외자 3법은 폐지되면서 외상투자기업은 ‘회사법’에 적용되었다.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이하 ‘조례’)는 ‘외상투자법’에 의해 제정한 가장 중요한 세부적 행정법규로서 모법과 같은 날 발효했다.

조례는 총 6장(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4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내외자 동일 원칙 강조, 외상투자 관련 정책 투명도 향상 및 ‘외상투자법’ 세부화를 골자로 한다. 외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보호제도를 강화했으며 외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정책투명성 강화와 정책제정과정 참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률 이외에도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외상투자 산업 지도 목록(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자유무역구(FTZ), 중/서부지역 등 특정 지역 외국인투자를 관리하는 “FTZ 네거티브리스트”, “중서부 외상투자 우세산업목록” 등 행정규정이 있다.

투자인센티브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2019년 6월 30일, 2019년판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鼓外商投目, 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하고 1달 후인 7월 30일부로 시행했다.

2019년 판 장려 목록은 기존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 장려류와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 2019년 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목록

2019년 판 [장려목록]에는 총 13개 산업, 415개 항목이 장려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2017년 판 대비 67개 항목이 추가되고 1개 항목이 삭제됐으며 산업분류로는 ICT 산업 신규 추가장려 목록에 해당하는 산업(또는 업종)은 중국정부가 대대적으로 발전을 지원하는 분야로 각종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다. 2019년판 [장려목록]개정은 스마트 · 녹색 · 4차산업 관련 제조업의 질적 발전과 서비스 분야 투자장려에 방점을 뒀다.

제조업은 중국의 외자유치 중점방향으로 이번 장려목록의 신규 및 수정의 80% 이상 차지했다.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외에도 민생과 관련된 건강식품, 친환경 분야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2) '중서부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이란 경제발전수준이 낮은 중부, 서부지역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목록"이다. 중서부 목록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 중 장려류와 동등한 우대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서부 목록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현황에 따라 별도로 해당 지역 진출기업에 면세 혜택 및 인허가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목록으로 중국 동북, 서북, 서남 중부 내륙지역과 하이난 등 22개 성(자치구 포함)에 적용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내륙 외자 유치 가이드라인이다. 2019년 개정에서 내륙지역으로 산업이전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전략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중서부 목록은 중국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 '외상투자 산업 지도목록' 장려형 목록에서 제외된 산업을 지정해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다. 우대정책은 주로 ① 기업소득세 면/제 등 혜택, ②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③ 중국산 설비 구매 시 증치세 환급, ④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를 제공하되 토지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등이 포함된다.

제한 및 금지(업종)

2020년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중국은 1995년부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이하 '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도입 가이드를 제시해왔다. 1995년 처음 공포된 이래 2020년까지 총 9차례(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 2017년, 2018년, 2019년) 개정됐다.

2020년 6월 2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0년 판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7월 23일부터 시행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외국인 투자를 금지 혹은 제한 분야의 목록을 뜻하며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는 모두 외국인 투자 및 경영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명시된 외국인투자 제한 및 금지분야 외에는 모두 개방 확대한다는 의미로 2017년 6월 중국은 처음으로 외상투자 지도 목록에 포함된 네거티브 리스트(面)를, 2018년 6월 정식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다.

2020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12개 영역, 33개 항목이 있으며 지분 제한 항목은 12개, 금지 항목은 21개로 집계된다. 2018년 판 네거티브리스트에서 명시했던 자동차, 금융업 등 분야는 과도기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 확대, 선진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습득, 자국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외자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발전에 대한 지원폭이 큰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중국엔 200여 개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17개의 변경 경제합작구, 150여 개의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50개의 국가급 보세구, 63개의 수출가공구, 55개의 저탄소 공업단지, 19개 경제신구가 존재한다.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國家級經濟技術開發區)로 지정된 지역은 인프라를 완비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되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중 국가급은 최고 행정지도부인 국무원의 심의를 거쳐 건설한 것으로 인프라 수준이 높고 외자진입 규제 완화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변경경제 합작구는 중국 변경 개방도시의 변경무역과 가공수출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변경 개방은 중국 중서부 지역 대외 개방의 중요한 조치로, 1992년 이후 국무원에서는 17개의 변경경제 합작구를 비준하여 중국과 주변 국가(지역)의 경제무역과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번영을 실현하도록 유도하였다.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는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우대정책과 개혁을 통해 산업환경의 최적화를 실현하여 과학기술 성과를 생산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건립한 구역이다.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는 지식 집약과 개방을 기본조건으로 국내의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외의 선진 과학기술, 자금, 관리 방법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세구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국제무역과 보세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으로 다른 국가의 자유무역구와 유사하다. 보세구 내에서 외국인은 국제 무역, 보세 창고 보관, 가공수출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수출가공구(出口加工區)는 가공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가공무역을 분산형에서 집중형 관리로 전환시키며, 기업에 더욱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대외 수출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이다.

중국 국가급 신구는 국가의 발전과 개혁개방을 위한 전략적 임무를 담당하는 특구(特區)로, 주요 국가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우세하고 경제발전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국무원에서 지정 설립한다. 이중 가장 유명한 곳은 당시 국가지도자들이 지정한 선전(덩샤오핑), 상하이 푸둥(장쩌민), 숭안(시진핑) 등이다.

2015년부터는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업 혁신 시범구(도시)를 지정하여 세제혜택, 개방 확대 등 육성책을 펼치고 있다. 2015년 5월, 베이징시가 첫번째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도시”로 지정되었다. 2016년 2월, 중국 정부는 15개 지역(10개 성시, 5개 국가급 신구)을 시범구로 2년간 지정하고 개방 확대, 편리성 제고, 세수 우대, 금융 서비스 등 조치를 적용했다. 시범기간 종료 후(18.5월) 베이징과 국가급 신구 1곳을 추가하여 17개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을 지정했다.

2) 자유무역지대(자유무역구)

2013년 9월 상하이에 중국 첫 자유무역구가 등장한 후, 2020년 9월까지, 중국은 총 5차례에 걸쳐 21곳 자유무역구를 설립했다. 자유무역구(FTZ: Free Trade Zone)란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투자, 무역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한 경제특별지대를 의미한다.

중국은 21곳 자유무역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금우대와 통관검역절차 간소화,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며 ‘FTZ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 리스트’(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進入特別管理措施(負面清單)*, 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0년 개정판으로 2020년 7월 23일부터 21곳 자유무역구에서 적용했다.

3) 자유무역항

2018년 FTZ로 공식 지정된 하이난성을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2020년 6월 1일, 중국 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海南自由易港建方案)]을 발표하고 하이난을 선전 등의 경제특구보다 개방도가 높은 특별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정부는 2025년까지 무역 자유화와 투자 자유화를 양대 축으로 한 자유무역항 체계를 기본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제시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2025년까지 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계획으로 우선 일부 상품부터 ‘제로(0) 관세’를 적용한다. 이어 2035년까지 국내외 자금 이동, 출·입경, 물류 분야의 자유·편리화까지 이뤄내 자유무역항 운영 수준을 더욱 성숙시키고 2050년 무렵까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유무역항으로 키우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각각 내세웠다.

현대 서비스업, 하이테크 기술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이난 산업고도화를 위해 육성 대상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율 15%를 적용하고 관광업,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 등 중점 육성산업의 외상투자자에 대해 2025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하이난 방문객에 대해 연간 면세한도를 기존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확대하고 면세구입상품 품목도 확대했다.

산업단지

◦ 한·중 후이저우(惠州) 산업협력단지

규모	약 80km ²
위치	중카이(仲)하이테크개발구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중카이(仲) 개발구 관리위 0752-3278827
비고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 10여 개국의 3천여 개 기업 입주 3대 한·중 산업단지 중 하나

◦ 칭다오 하이테크 산업단지

규모	5.6만 m ²
위치	칭다오 하이테크개발구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칭다오 하이테크개발구 관리위 0532-82020617

◦ 충칭 경제기술개발구

규모	약 90km ²
위치	충칭 강남신성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개발구 관리위 023-62900892

◦ 한중 옌타이(烟台)산업단지

규모	32km ²
위치	옌타이하이테크개발구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옌타이하이테크개발구 관리처 0535-6891550
비고	3대 한중 산업단지 중 하나

◦ 한중 옌청(城)산업단지

규모	50km ²
위치	옌청(城)경제기술개발구
임차료	비공개
관할기관 및 연락처	개발구 관리처 0515-68820473
비고	3대 한중 산업단지 중 하나

〈자료원 :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 징진지(京津冀)

징진지(京津冀)는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의 통칭으로 수도 베이징과 중국 북방의 해운 허브 톈진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수도권을 의미한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자동차, IT, 전자, 의약, 기계 등 첨단산업과 서비스사업 및 소비시장이 발달했다. 또 베이징을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전국에 걸쳐 도로-철도망이 구축되어 있고 최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수도권 지역 일체화 구상인 징진지 프로젝트가 국가전략 추진으로 수도권 교통인프라 구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화동(華東)

8천 만 인구, 중국 GDP의 21%를 차지하는 창장 하구의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을 화동 경제권으로 일컫는다. 화동지역은 중국 최대 대외교역 중심이자, 소비액이 전국의 20%를 상회하는 최대 내수시장이며 중국 전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다.

화동 경제권은 창장삼각주를 중심으로, 창장삼각주는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우리기업의 대중국 최대 투자지역인 장쑤성, 중국 전자상거래 중심지 저장성 모두 중국 동부연해의 대표적인 경제발달지역이다.

◦ 화남(華南)

화이허(淮河) 이남, 일반적으로 광둥성, 하이난성(해남도)와 광시좡족자치구, 푸젠성을 포함하여 화남 경제권이라고 부른다. 화남 경제권은 주강 하구의 주강삼각주 일대 광둥성을 중심으로 한다.

광둥성은 장강 삼각주(상하이) 및 환발해만 경제권(베이징, 톈진)과 함께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3대 축의 하나로, 전국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개혁개방의 선두지역이며 대외무역 규모는 중국 전체 대외무역규모의 1/4이상을 차지하는 등 31년 연속 중국 최대의 대외무역성(省)이다. 광둥성은 산업체계가 완비된 세계 공장으로서 100여 개 산업의 세계 최고수준 생산가공 및 조립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IT산업 제조기지로서 선전, 광저우, 동관, 후이저우, 포산, 중산 등을 중심으로 전자정보산업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신소재 및 광 전기 등 첨단기술이 급속도로 발전 중이다. 중국의 내수확대정책에 따라 광둥성은 글로벌 기업의 제조기지로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중요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서남(西南)

쓰촨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서남경제권은 서부대개발, 일대일로, 청위(成, 쓰촨-충칭)경제권 등 권역별 발전 전략에 따라 급부상하고 있다.

8,000만 인구를 보유한 쓰촨성은 여전히 중국 서부지역의 최대 경제권이자 경제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청위 경제구(成:쓰촨-충칭)를 상하이(장강삼각주), 베이징(환발해), 광저우(주강삼각주)에 이은 제 4대 경제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쓰촨성의 성회도시인 청두는 중국 서부 내륙지역의 금융, 교통, 신흥산업의 중심허브로 육성돼 왔다. 청두에서 출발해 신장(新疆) 아라산(阿拉山),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를 지나 폴란드에 도착하는 총 길이는 9,826km의 고속철도 롱어우(蓉歐) 철도의 운영으로 쓰촨성 청두시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중국 4대 직할시 중에서 인구(3,000만 명)가 가장 많고 유일하게 서부 내륙에 위치한 충칭시는 서부시장 개척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장 상류에 위치한 데다가 도로, 철도, 항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도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서부 내륙지역의 중요한 교통허브이다. 중국 2014년 처음으로 독일의 뒤스부르크까지 운행한 위신오우(新)철도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까지 총 6개국을 통과했는데 이는 신(新)실크로드라고 불리고 있다.

◦ 서북(西北)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국가전략으로 격상되면서 ‘신(新) 실크로드’ 연선지역인 중국의 서북지역이 각광받고 있다. 사막, 고원, 초원으로 이뤄진 유목민족의 거주지였던 서북지역은 최근 산시(陝西)성을 필두로 중국의 경제성장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산시성은 전자·정보 분야의 3대 기지와 4대 구역, 신에너지, 신소재 및 생물제약분야 3대 기지와 3대 구역을 건설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 SDI, SK, LG 등 국내 대기업도 대거 진출해 있다.

한, 당나라 시기의 장안으로 불리던 산시성의 성회도시 시안은 역사, 문화, 자연환경의 지원을 바탕으로 관광업이 발달했다. 역사, 문화, 자연풍경으로 서북지역의 관광업 또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135,577	133,711	136,315	138,305	141,225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145,667.15	196,149.43	158,290	143,040	117,120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1,425	488	5,704,294	2,159	4,801,227
2019	1,331	466	5,932,475	2,063	5,794,379
2020	457	119	1,642,489	674	1,263,24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9	2	3,967	16	3,885
광업	4	0	58,886	21	40,331
제조업	835	236	5,225,199	1,262	4,404,38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1	1,999	1	200
수도, 하수 및 폐기 물 처리, 원료 재생 업	1	1	1,083	1	216
건설업	14	6	2,872	30	5,473
도매 및 소매업	285	139	178,834	469	138,077
운수 및 창고업	18	4	10,751	15	6,818
숙박 및 음식점업	34	10	55,707	43	48,479
정보통신업	62	24	23,712	94	19,453
금융 및 보험업	22	2	63,496	26	75,989
부동산업	3	1	18,344	5	4,2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3	36	15,123	80	17,9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37	12	26,317	46	4,974
교육 서비스업	15	6	5,087	25	5,13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	4	2,841	5	20,388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3	0	5,570	12	2,35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5	4	4,456	8	2,889
N/A	1	0	5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5	3	10,882	22	9,616
광업	2	1	157,500	8	16,589
제조업	807	234	5,083,841	1,235	5,406,23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1	575	2	501
수도, 하수 및 폐기 물 처리, 원료 재생 업	1	0	4,250	1	222
건설업	7	3	6,926	23	1,406
도매 및 소매업	268	133	207,259	445	174,231
운수 및 창고업	18	5	4,353	21	2,181
숙박 및 음식점업	20	5	16,475	22	13,073
정보통신업	57	25	26,251	100	13,627
금융 및 보험업	19	1	313,287	15	96,118
부동산업	4	3	55,323	6	18,89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9	28	15,497	77	11,84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9	10	6,531	31	7,436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0	14	0	0
교육 서비스업	13	6	7,145	22	3,2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	3	2,214	3	1,213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2	4	13,953	17	16,5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4	1	199	13	1,41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4	1	920	4	760
광업	5	0	773	13	19,488
제조업	275	52	1,350,765	374	1,025,120
건설업	4	3	2,096	13	2,294
도매 및 소매업	87	31	120,760	157	101,920
운수 및 창고업	9	6	2,454	11	1,982
숙박 및 음식점업	6	0	1,293	7	1,325
정보통신업	25	11	21,798	39	15,341
금융 및 보험업	3	1	40,415	2	40,192
부동산업	3	1	48,654	4	36,70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	11	48,067	25	15,15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3	0	2,084	7	21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1	0	1	14
교육 서비스업	7	1	980	10	1,0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0	0	4	135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2	0	1,430	2	1,43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0	0	0	1	16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LG전자(중국) 유한공사

진출연도	1993
진출형태	현지 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LG 전자

◦ POSCO 제철공사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현지 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제철
모기업명	POSCO

◦ CJ 그룹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현지 법인
업종	식품
취급분야	식품, 서비스
모기업명	CJ

◦ 오리온식품유한공사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현지 법인

업종	식품
취급분야	식품
모기업명	오리온

◦ KCC유한공사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화학/의약
모기업명	KCC(주)

◦ 베이직하우스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취급분야	의류/패션/액세서리
모기업명	(주)더베이직하우스

◦ 북경매일유업유한공사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우유
모기업명	매일유업(주)

◦ DHP엔지니어링(상해)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취급분야	조선기자재(화학,발전소)
모기업명	대원열판(주)

○ 아모레화장품유한공사(상해)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화장품
모기업명	아모레퍼시픽(주)

○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합작공장
업종	의약품
취급분야	의약품
모기업명	한미약품

〈자료원 : KOTRA〉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회사설립과 연락사무소(代表處, 事) 설립 등 형태가 있다. 그중 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영리성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제소, 응소할 수 있고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지사

지사는 본사의 하부기관으로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 본사의 경영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본사의 경영범위 내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등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본사가 그 연대적 책임을 진다. 일부 영리성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지사는 본사 소재 성(省)을 벗어나 지사 설립할 경우, 세금 징수에 민감한 일부 지방정부는 영리성 업무가 없는 지사의 설립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면, 외국기업은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시장조사, 전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제품판매, 서비스 제공, 중국 내 구매,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된 연락업무를 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자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대외적 책임은 그 외국법인이 져야 한다. 또한 연락사무소가 영리활동에 종사할 경우,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재물 몰수, 벌금 부과 및 등록증 철폐 등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서 용이한 형태는 연락사무소 설치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기 전 단계에 설립한 연락사무소(代表機構)를 중국에는 대표처(代表處)로 불린다.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은 금지되나 시장조사, 중국 무역 파트너와의 연락업무, 회사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의 활동은 가능하다. 영업활동을 하려는 해외기업은 중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현지법인 설립 후 중국의 기타지역에 지점(分公司)을 설립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해 우리기업은 아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본사 설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2) 파견대표는 4명까지 가능하다.
- 3) 본사 업종, 업태에 특수업종(금융, 보험, 영화 등)이 있을 경우, 중국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업종은 금지업종이다.
- 4) 대표가 취업증을 만들 경우, 반드시 4년제 대학졸업자이어야 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 주식회사는 중국에서 합자, 합작, 독자 기업 등 3가지로 분류한다.

○ 합자기업

합자회사는 외국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투자한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손익을 부담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중국파트너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 한해 개인도 투자가 가능하다. 예컨대 베이징中关村 기술 개발구 등 지역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합자기업은 공동투자, 공동경영, 공동손익부담, 유한책임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공동투자: 합자회사는 쌍방의 투자자가 현금, 현물, 지재산, 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각각 출자하여 그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배분한다.
- ② 공동경영: 합자회사는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 협의에 의해 경영기관인 동사(이사), 동사회(이사회), 법적대표, 총경리 등을 정관상에 명기하고 이를 등재하며 동사회가 모든 경영 관련 중요사안을 결정하고 동사회의 총경리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집행한다.
- ③ 공동손익부담: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는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손익과 리스크를 각각 부담한다.
- ④ 유한책임: 회사채무의 부담책임을 회사자산 총액 이내, 투자자들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은 출자액 이내로 하며 투자자 상호 간의 연대책임 의무는 없다.

합자기업 설립 시 핵심기술 유출/모방 우려, 이익 회수 및 사업 철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실사를 하고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 측 파트너의 유통 능력을 과신하고 투자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측 지분이 많더라도 중국측 파트너가 지분율 이상의 동사(董事: 이사)를 보유하거나 동사장(董事長: 이사장)을 확보한 경우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지분율 이상의 동사(董事) 수를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동사장(董事長) 직까지 확보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한국 측이 과반수 이상의 동사를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합자기업법상 만장일치 의결 사항을 제외한 경영사안들은 모두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등 경영주도권 장악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 측은 이익이 생기면 재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결정은 합자기업법 상 만장일치제이므로 동사(董事) 1인이란도 반대하면 불가능하므로 투자이익 회수 및 사업철수 등 추후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 계약서에 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합작기업

중외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은 외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공동으로 설립한 형태이며, 계약규정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결정된다.

합작파트너의 권리 및 책임의 범위는 출자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 내용의 정형성이 부족하여 중국의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자칫 불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합작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계약 주의: 쌍방 각 투자자의 합작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모두 쌍방의 합법적이며 유효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 ② 기업형태의 융통성: 합작회사는 법인형태 또는 연합경영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위 형태에 따라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
- ③ 이윤 배분의 융통성: 쌍방 각 투자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분배, 별도의 계약약정 방식에 의한 이윤분배가 모두 가능함. 즉 이익을 금전으로 분배하거나 생산제품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수입 자체를 분배하는 방식도 투자자 쌍방의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 ④ 투자금 선회수 가능: 합작회사의 외국인 투자자는 합작계약에 따라 투자 기간 내 투자 자본의 조기회수가 허용되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회수하는 경우는 투자기간 만료 시에 합작회사의 모든 고정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된다.

합작기업은 계약에 의해 양측의 권리, 의무가 정해지므로 법적 해석이 모호하여 양측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합자와 마찬가지로 중국측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하고 모든 투자위험 분담, 이익분배 조건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합작법인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금조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① 외부차입: 외부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의 차입
- ② 내부차입: 각 출자자로부터의 차입(담보제공 또는 보증행위가 수반될 수도 있음)
- ③ 지분을 비례 증자: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각 출자자가 동등한 조건 하에 추가 출자
- ④ 지분을 불비례 증자: 기존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차등 증자(지분율 변동이 수반)
- ⑤ 제3자 지분참여: 기존 출자자들 외 제3의 출자자를 신규 영입하면서 자본금을 증액

위 각 방안 중 '1안'과 '5안'은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정관에 명시되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하지만 '2안'~'4안'은 기존 출자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작법인 설립 시에 자금부족 상황에 따른 각각의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다. 차입 또는 증자, 제3자 지분참여 증자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합작 법인의 자금 사정이 단기간에 호전될 수 있느냐 아니냐인데 단기 호전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차입' 방식을,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증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합작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투자자와 합의한 계약에 따라 투자 기간 내 투자자본의 조기회수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는 투자 기간 만료 시에 합작투자기업의 모든 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되며 별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방법으로는 일정액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환하면서 이를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으로 처리하는 방법, 외국인 투자자 이윤배분 비율을 크게 설정하는 방법,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액의 투자자본 상환금액을 약정하고 이익금이나 영업수입 중에서 이 상환금액을 선 공제한 후 잔여 이익금이나 영업수입을 다시 분배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합작기업 설립 시, 모든 투자위험 분담, 이익분배 조건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중국 측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 독자기업

독자기업(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 영토 내에 설립된, 그 자본의 전부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이다. 중국에서는 외자기업(外資企業) 또는 독자기업(獨資企業)이라고도 부른다.

독자투자에 의한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독투자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투자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가 합자나 합작기업에 비하면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자본소유권: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출당해야 한다.
- ② 기업의 법률적 지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해 설립된 중국 법인의 지위를 갖는다.
- ③ 독자적 경영관리: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 투자이므로 독자적으로 경영관리 조직을 갖춰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 있고, 종업원 대우 등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 투자 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진다.
- ④ 유한책임회사: 외자기업은 반드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독자기업은 토지, 공장, 운영비 등 초기 투자자금 부담이 크다. 현지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기업이 독자기업의 형식으로 진출할 경우 초기 자본금 부담이 큰 편이다. 또 판매망을 외국 독자기업 스스로 개척, 구축해 나가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경험이 부족해 대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현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자 초기에 노무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투자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시장조사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립하는 등 유사독자(類似獨資) 형식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 독자투자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 투자선, 대리인, 투자지역을 선정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합자/합작/독자기업을 설립한다.

- ① 투자 준비(투자 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 지역 선정 등)
- ② 투자 예비상담(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 ③ 의향서 또는 협의서 체결
- ④ 부지 확보(단독투자인 경우 부지 유상 양수 또는 유상 배정 의향서 체결)
- ⑤ 기업 명칭 등기 신청
- ⑥ 정관 제정
- ⑦ 기업설립 등기 신청

우리기업이 중국에 진출 시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외상독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 법인설립 구비서류

- 1)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 신청서*
- 2) 외상투자기업 설립등기 신청서*
- 3) 신설법인 정관*
- 4)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
- 5) 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사업자등록증 또는 여권) 공증 및 인증 3부
- 6) 투자자의 법인설립 관련 수권대표 임명에 관한 이사회 의결서* 공증 및 인증 3부
- 7)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서(잔고증명) 2부
- 8) 신설법인의 주소증명(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소유권증명)
- 9) 신설법인 법정대표인 임직증명서*, 신분증명(여권), 이력서 및 증명사진 3매
- 10) 이사회 구성원(또는 집행이사)의 명단, 파견서* 및 신분증명
- 11) 감사회 구성원(또는 1인 감사)의 명단, 파견서* 및 신분증명
- 12) 위임장*
- 13) 법률문서 송달 수권위임서*
- 14) 설립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report of audit)*
- 15) 수출입 상품 목록*

※ 구비서류 관련 주의사항

- (1) 5)~15) 항의 서류는 한국측에서 준비 또는 날인 필요 (위임장, 의결서 등 필요한 서류는 소정양식).
- (2) 위 소요서류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3) 외국어 서류는 번역회사에 의뢰하여 중문으로 번역하고 번역회사 날인 필요.
- (4) “*”표기 서류들은 소정양식, 투자자 확인 및 서명/날인 필요.
- (5) 위 서류 외에 투자자가 기업명칭, 영업범위, 등록자본금, 주소 등 정보제공 필요.
- (6) 수출입 도매업무를 포함하는 판매법인의 경우 14) 및 15항의 서류 제공 필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혁개방 이래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기업형태는 주로 외상독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외자상법에 따라 외상독자기업의 최고의결기구(주주회)이고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약칭)의 최고의결기구는 이사회이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이 실시됨에 따라 합영기업의 최고 의결기구도 주주회로 변경해야 한다 (변경에 대해 5년 동안의 유예기간 부여).

[외상투자법]은 주로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법]은 [합영기업법]에 비해 기업들에 비교적 많은 자주권을 부여했다. 기존의 외자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2020년 1월 1일부로 외상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가 실시되고, 또한 2020년판 외상투자준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가 발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투자자 간의 합작방식, 지분 비율, 조건 등을 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주주가 임의로 약정을 하고 정관에 기재하여 등기가 가능하기에 기존의 합작기업법과 합자기업법에서 주주의 출자비율과 지분비율 관련 규정, 사전회수 등 내용을 정하고, 신설법인은 그 정해진 틀내에서만 활동가능했던 것보다 더욱 자유워졌다. 관련 법률 법규에 강제성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 기업은 자주적으로 정관에 약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관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고 기업들은 정관 설정 시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에 많은 기업들은 인터넷 혹은 공상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정관을 작성했지만 이는 분쟁 발생 시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사의 실정에 부합되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외에도 2020년 6월 2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외상투자 준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를 공포 및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기존 [외상투자 준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 판)]와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 판)]는 동시에 폐지됨).

이번 개정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진일보 축소한바, 그 중 전국 외상투자 준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40조에서 33조로 감소하였으며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37개에서 30개로 감소하였다. 상기 2개 문건을 업데이트 한 취지는 아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서비스업 중점분야 개방을 가속화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증권 회사, 증권 투자 펀드 관리 회사, 선물 회사, 생명 보험 회사의 외국 주식에 대한 비율 제한이 취소되었다. 인프라 분야에서 인구가 500,000명 이상인 도시 수도 공급 및 배수 파이프 라인 네트워크의 건설 및 운영은 중국 측이 지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하였다.

둘째, 제조 및 농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였다. 제조업 분야에서 상업용 차량 제조에 대한 외국 주식 비율의 제한이 해제되고 방사성 광물의 제련, 가공 및 핵연료 생산에 대한 외상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이 취소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밀의 신종 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을 중국 측 지배에서 중국 측 지분 비율이 34%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완화되었다.

셋째, 자유무역시범구의 지속적인 개방시험 추진이다. 의약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중약음편(中片, 필요에 의해 가공처리를 거쳐 만든 중약) 투자 금지를 취소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규정된 학습연한류 직업교육기관(制育机)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최근 외상투자 진입 규제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 진출 네거티브 리스트를 [외상투자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외에 내외국인 기업에 평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보장하는 등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과 보완의 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는 중국의 회사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형태로, 유한회사의 투자자는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지배는 원칙적으로 지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투자자회를 통해 실현된다. 유한회사의 투자자 총수를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각 투자자의 출자액이 상당히 크지 않은 한 유한회사는 대체로 소규모이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지분의 증권화가 금지되고 양도가 제한되어 인적 구성이 폐쇄적이다.

유한회사는 출자금액과 출자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현금,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모두 출자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기관은 주주회(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동사회(이사회) 또는 집행이사, 감사 또는 감사회(임의기관)를 둔다. 회사가 소규모

인 경우 동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법정대표, 이사, 총경리: 1인 3역)를 둔다.

유한회사의 등록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은 5개 과정을 거친다.

- ① 회사 등기기관(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칭 사전 허가 신청을 제기하고 “기업명칭 사전허가 통지서”를 수령한다.
- ② 심사기관(상무위원회)에 법인설립 신청을 제기하고 비준서, 비준증서를 수령한다.
- ③ 회사 등기기관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제기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한다. 영업집조 발급일이 곧 법인 설립일이 된다.
- ④ 취급업종에 따른 필요 라이선스 신청을 제기한다. 예컨대 요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식음료 서비스 허가증”을, 식품유통기업은 “식품 경영허가증”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 ⑤ 세무등기, 통장개설, 세관등기 등을 진행한 후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부한다.

개인사업자

중국에서 외국인인 개인사업자를 낼 수 없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신영중화회계사사무소(信永中和事所)

전화번호	86-13801224040
주소	北京市城朝北大街8富大厦B座8
홈페이지	https://www.shinewing.com/
이메일	cpawichoi@nav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KCBC 회계법인

전화번호	86-135-2230-0534
주소	北京市城朝大街南竹杆胡同2河SOHO中心D座1251226房
이메일	sttrace00@nav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북경시중륜윤사사무소(北京市中律事所)

전화번호	86-10-5957-2293
주소	北京市建外大街甲6SK大厦37
홈페이지	http://www.zhonglun.com/en/
이메일	lianzhelong@zhonglu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화렌() 로펌

전화번호	86-10-8441-7811(210)
주소	北京市 朝 三北路丙2 天元港中心 B座 2309室
홈페이지	http://www.hllf.cn/enindex.asp
이메일	hanchunning@hllf.cn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안지에 로펌(安杰律师事务所)

전화번호	86-10-8567-5988
주소	北京市朝方路19 亮外交公大D1 座19
홈페이지	https://www.anjielaw.com
이메일	lixizhe@anjie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북경국연자순문유한회사

전화번호	86-10-8476-4382
주소	北京市朝陽區望京廣順南大街16號嘉美中心字818室
홈페이지	http://www.glms.co.kr/gnuboard4/sub0205.php
이메일	kllaw@nav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한국태평양변호사사무소(太平洋事務所)

전화번호	86-10-5903-3502
주소	北京朝建路79
홈페이지	http://www.bkl.co.k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 한국울촌변호사사무소(律村事務所)

전화번호	86-10-8567-0778
주소	北京朝建外大街6思大厦9

홈페이지	https://www.yulcho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은 청산 시점에서의 재산 및 부채 규모에 따라 '해산 청산' 또는 '파산 청산'을 진행한다. '해산 청산'이란 회사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 회사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청산을 말하고, '파산 청산'이란 회사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청산을 말한다.

파산의 경우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기간도 가장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요 책임자 개인에 대한 불리한 점이 있고 명예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중국진출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발적 청산'의 경우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 정리 결정을 내린 후 회사의 최고 의결기구의 의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청산 팀을 구성해 청산을 진행한다. 여기서 '최고 의결기구'란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가리킨다.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진행되는 파산 절차는 중국법상 관할 법원에서의 수리가 쉽지는 않다. 많은 기업이 파산을 이용해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고 사업을 철수할 수 있는 '자발적 청산'이 회사 정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청산 시, 노무, 세무, 정부 보조금, 토지 건물매각, 임대계약 해지 등 이슈가 발행하게 되므로 청산을 준비하는 기업은 아래 사항에 대해 체크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청산 진행 전, 법인인감, 자료 등을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확실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며, 절차 대행업체를 선임한다.
- (2) 회사 말소/청산 사항 공지 시 [노동계약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경제보상금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한다.
- (3) [노동계약 종료 확인서]를 체결한다. 직원과 회사간 여하한 분쟁이 없고, 직원의 협조 의무 명시를 확인서에 명시한다.
- (4) 직원들의 단체 행동, 회사 세무 이슈 등으로 1~2개월 급여 추가 지급 하는 경우도 있다.
- (5) 세금 누락, 탈세 등 발견 시, 세금 추가 납부 및 행정 처벌이 부과되므로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해산청산에 의한 철수

중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산절차를 거친다.

(1) 최고 의결기구의 해산 결의

회사는 경영 손실로 인한 해산 결정,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영 불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혹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산을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최고 의결기구를 통해 회사의 청산 진행을 결정하게 된다.

공동 투자자 및 채권자, 직원 등과 청산 과정 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청산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①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청산 개시 전에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청산 기간에 채권 등록을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줄여야 청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② 청산방안에 대한 검토

청산방안은 청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청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 개시 전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상세한 분석을 거친 후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회사에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 진행해야 한다.

③ 청산 중 영업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의하면 청산 기간 중 기업은 새로운 경영 활동,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청산 개시일을 기업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산이 시작된 후(즉, 청산팀이 결성된 후) 회사에 필요한 경영 활동을 제외한 기타 경영 활동은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경영 활동은 사전에 진행해 두는 것이 좋다.

(2) 청산팀의 구성과 신고 수리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청산팀은 투자자로 구성하면 된다. 그리고 청산팀이 구성된 날로부터 청산팀 구성원과 책임자 명단을 시장감독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청산팀은 청산 기간에 아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기업의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방안 작성
- ② 채권자를 위한 청산 공고, 채권자에 대한 서면 통지
- ③ 청산과 관련된 기업의 현안 업무 처리
- ④ 미납 세금 및 청산 과정 중 발생한 세금 정리
- ⑤ 채권 채무 정리
- ⑥ 기업 채무 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 ⑦ 외상투자기업 대표로 민사소송 참가(소송이 있을 경우)

(3) 채권자 통지와 신문공고

청산팀은 '회사법' 제186조에 따라 청산팀 결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는 전체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30일 이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문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 ① 청산팀은 주소가 명확한 채권자에게 서면 통지
- ② 주소가 불명확한 채권자의 경우 신문에 회사의 해산 사항, 채권자의 채권 신고를 위한 공고를 게재
- ③ 채권자는 규정 기한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하며, 채권 금액 및 채권과 관련된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채권자가 채권 신고 기한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기간 내 신고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기업 잉여재산의 배분 완료 전에 청구할 수 있다.
 - 잉여 재산 배분된 후에는 채권 포기로 간주

(4) 청산 방안의 제정 및 재산 정리

청산팀은 최고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은 청산 방안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고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완료 업무를 처리하며 회사가 체납하거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 하는 등의 각종 청산 활동을 진행한 후,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산 잔여 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회사 자산으로 청산 비용 • 직원 월급 • 사회 보험료 및 경제보상금을 각각 지불하고, 미납 세금을 납부하며, 회사의 채무를 상환한 후의 잔여 재산은 주주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면 된다.

청산기업은 청산 재산에서 청산 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에 기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 청산 비용 및 채무 변제 순위

① 청산 비용

- 외상투자기업 청산 재산의 관리, 매각,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
- 공고, 소송, 중재 비용 등
- 청산팀 구성원 보수, 변호사 비용, 회계사 비용 등 청산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기타 비용

② 기타 채무,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1순위: 직원의 임금, 경제보상금, 사회보험 비용
- 제2순위: 미납된 세금
- 제3순위: 기타 채무 등

청산 시 대부분 직원(통상 1~2명만 채용)과 노동 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노동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보상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제보상금은 직원의 급여로 인정되므로 청산 재산에서 우선 청산 비용을 지불하고 난 다음 제1순위로 경제보상금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청산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업 재산을 배분할 수 없다. 즉, 청산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기업 재산을 투자자의 투자 비용 또는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5) 세무와 세관 등기의 말소

회사는 관할 세무국에서 세무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세무 등기 말소 과정에서는 세무국의 회사 장부에 대한 심사, 세금 및 벌금 추징 등이 진행된다. 따라서 회사는 시장감독관리국에 기업 등록 말소 신청을 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 체납금, 벌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관할 세관에 세관 등기 말소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수입 설비 등이 세관의 관리·감독 기한 내에 있을 경우 수입 관세의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가공 무역과 관련해 가공 무역 등기 수책의 핵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 요소가 있다.

(6) 청산 보고서의 작성

청산 업무가 종료된 후 청산팀은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 최고 의결 기구의 확인을 받아 시장감독관리국에 보고하면 된다.

(7) 영업집조 말소

시장감독관리국에 기업법인 영업집조 말소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등기가 말소되면 최종적으로 법인 인격이 소멸하게 된다.

(8) 외환 등기 말소, 잔여 재산의 송금 및 위안화 계좌의 말소

외환관리국(현재 은행에서 심사)의 심사를 받아 개설된 외환 등기를 말소하고 청산 잔여 재산을 출자자에게 송금하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위안화 은행 계좌를 말소하면 된다. 실무적으로 상기 청산 절차 총 8단계를 완료할 때까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노동계약법, 환경법 및 세금 분야의 정책 등 중국의 기업 경영 환경이 날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철수의 한 방법인 청산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업의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법률적인 측면 이외에도 중국의 현실 상황을 이해하고 실무 중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기업 청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산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① 청산전략을 수립

청산은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업무이기에 실무진행에 앞서 회사현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리스크, 노무이슈, 자산처리 방안, 구비서류 정리, 역할 담당 등 사항에 관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② 회사채무 상황

채무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청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무 관련 소송이나 중재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 작성, 나아가 정부당국의 허가취득이 불가하다. 따라서 채무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③ 노무문제

청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청산업무에 필요한 회계직원 등 일부 담당직원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직원들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회사 운영과정에서는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청산단계에 진입하면서 수면위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칫하면 노동중재, 소송이나 집단반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가 공개적으로 불거지게 되면 회사는 청산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근거가 있는 청구에 대해서는 합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평소 노무관리를 유관 법률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노동계약 해지 전 노동당국과 소통하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위기대처 방안도 미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분 양도에 의한 청산절차

외국인 투자자는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기타 관련 기업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철수할 수 있는데 중외합작기업, 또는 외자독자기업을 막론하고 최고의결기구 의결이 필요하다.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주 간 지분양도, 관련 기업 또는 타 양수인에 대한 지분 양도가 결정된 후 기업은 등기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지분양도 신청서
- ② 기업 규정, 정관 및 수정협의서
- ③ 기업 인가증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
- ④ 기업 최고의결기구 지분변경 관련 결의서
- ⑤ 지분 변경 후의 주주총회 구성원 명부
- ⑥ 양도인과 양수인 조인, 기타 주주의 서명이 있는 양도협의서 등

지분양도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분양도 대상회사가 중외합자(합작)기업일 경우, 반드시 중국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하다.

○ 지분양도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동관리계좌(에스크로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중국 매수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가장 불안한 부분은 양도대금의 회수인데, 공동관리계좌를 개설해 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대상회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3자한테 지분을 양도할 때 회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향후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명칭 변경을 협상조건으로 해야 한다. 또한 대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이나 특허권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약조하여야 한다.

○ MOU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로 체결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를 체결할 경우 협상 과정에 쌍방의 의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간 대치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비교적 명확한 권리와 의무, 계약 유효기간, 위약책임 등을 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매수인의 성의와 인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아볼 겸 일정액의 계약금을 선지급 할 것을 요청해도 무방할 것이다. 만약 해당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매수자를 찾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 노사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지분양도에 따라 주주가 변경돼도 노동계약은 해지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경제보상금 정산이 불필요하나, 실제 경제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파업이 빈발한다.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 경제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분양도 전에 경제보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주주로 변경되면 다시 노동계약 체결을 원할 수 있다. 직원 관련 이슈는 사업철수 과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법률적으로 복잡한 업무이다. 또한 중국 특성상 직원들의 파업은 정부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방안의 제정, 실행 등 단계별로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영업집조 변경(등록기관 주주 변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세무 신고 후 지분양수도대금을 지급받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매수인회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MOU체결 후 매수인은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위탁해 대상회사에 대해 실사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매도인도 매수인의 운영상황, 주주상황, 연루된 소송 유무여부, 매수인의 회사부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수인회사의 대금 지불능력을 확인하고 향후 지분양도 절차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 행정절차를 적시에 진행해야 한다. 지분양도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돼 일부 회사에서 적시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대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자칫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청산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들도 줄줄이 직원 해고 혹은 감봉 등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중무역분쟁, 코

로나 여파 등 원인으로 현지에 투자했던 법인을 부득이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현지 법인의 재무상태가 적자로 돌아선 뒤, 몇년 동안 방치 상태로 두었다가 한국 본사 측 업무에 차질이 생겨 뒤늦게 법인 청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업들의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중국 법인이 거액의 세금 체납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현지 고용직원 혹은 거래처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일 때가 많다. 무단 철수(법률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기업을 방치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시 아래와 같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1) 중국 정부 시스템에 의해 “이상 상황”을 공시당한다. ‘국가공공신용정보센터(家公共信用信息中心)’(www.creditchina.gov.cn), 및 ‘국가기업정보공시시스템(家企信用信息公示系)’(<http://www.gsxt.gov.cn/>) 등에 공시한다. 또한 추후 중국 재투자시 제약이 될 수 있다.

(2) 법인대표의 행정, 민사 책임이 따른다. 중국 출국 제한, 고소비 제한 등 조치 가능성이 있다. 미해결 채무, 직원 이슈 등으로 인한 법원의 판결로 강제집행 단계에 진입한 경우, 중국 출국 제한, 고소비 제한, 타 회사 임원 자격 제한, 벌금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유한회사 주주의 배상, 상환 책임(등록자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뒤따른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6.5445위안(2020.12.10. Yuan per US Dollar (Period Average))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865.9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683.08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3.4
비고	해당 임금 수준은 베이징시 기준으로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1선도시는 이와 비슷하지만 타 지역은 이보다 낮다.				

<자료원 : 현지 채용정보사이트 첸칭우요우(前程无)>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중국은 노동관계 확정, 즉 입사 1개월 내 고용주가 노동자와 노동계약서(고용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노동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고용자의 명칭, 주소, 법적 대표자 혹은 주요 책임자
- 노동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증 혹은 기타 효과적인 신분증명서류 번호
- 노동계약 기간
- 업무 내용과 근무장소
- 근무시간과 휴가
- 임금, 보너스 등 복리대우
- 사회보험

※ 노동계약서 체결 시 유의사항

- 1) 채용하는 고용형식에 따라 노동계약서 체결 당사자를 확정한다.
노동자와 직접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여 직접적인 노동관계를 형성하는가 혹은 노무 파견조직을 통해 노동자와 노무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2) 노무 파견의 경우 관련 법률 규정의 특별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노무 파견 경영허가증'이 있는 합법적인 노무 파견조직을 선택하고 파견노동자는 임시적, 보조적 혹은 대체적 업무만 진행하여야 한다. 노무 파견에 의한 파견노동자 수는 해당 기업 총 노동자 수의 일정 비중(구체적 비중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처에서 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
- 3) 노동계약 체결 후 바로 노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은 고용 시작일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가 형성되며 30일 이내에 노동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게 되어 있다. 만일 1개월 이상 서면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에게 1개월 만료일부터 2배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1년 이상 서면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관계 형성(無固定期限勞動合同關係)'으로 간주한다.
- 4) 임시공과도 노동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중국 노동법률하에서 '임시'의 개념은 노동계약기한이 비교적 단기간인 임시성(臨時性), 계절성 고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기간 고용도 역시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서면계약 미체결 시 2배 임금의 배상요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근로시간

중국은 주 5일제(40시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근로는 1일 1시간(특수상황에서는 3시간) 월 36시간 한도 이내에서 가능하다.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평일급 기준 50%, 주휴일 근로는 100%, 법정 휴일 근로는 20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산경영의 필요 때문에 노조 및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매일 3시간, 매달 36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또 초과근무 기간에 대해 근무수당을 지불하거나 보충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휴가

중국은 근속연수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근속 1년 이상 노동자의 유급휴가 취득권이 있다. “연속근무 1년 이상”이란 노동자가 첫 직장에서 근속 연수는 “연속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 非 기업 단위, 피고용자를 보유한 개인상공업자(個體工商戶), 파견노동자, 농민공, 택시기사 등 모두 적용된다. 중국은 근속 연수와 유급휴가 일수를 연결해 관리한다. 근속 연수는 현재 노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에서의 근무 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근속연수까지 합산하여 적용한다.

노동법규상 유급휴가 취득 가능일 수는 다음과 같다.

- 근속 1년 이상 10년 미만: 5일/년
- 근속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년
- 근속 20년 이상: 15일/년

다음과 같은 경우, 유급휴가의 취득권을 상실한다.

- 1) 하계, 동계휴가(예: 교직원 등 경우) 일수가 유급휴가 취득 가능 일수를 상회하는 경우
- 2) 20일 이상 개인용무휴가(假)를 취득하고 이 기간 중 급여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 3) 병가의 취득누계가 다음 일수를 초과할 경우 유급휴가 취득 불가
 - 근속 1년 이상 10년 미만: 2개월
 - 근속 10년 이상 20년 미만: 3개월
 - 근속 20년 이상: 4개월

연차휴가는 해당연도 내 집중 사용하거나 분산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나, 생산상황 등 필요시 차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또 미소진 유급휴가일에 대해 일급의 3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가 이외에도 개인사정에 인한 휴가, 의료휴가, 결혼 휴가, 출산휴가 등 휴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 의료 휴가 등은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에 따라 급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적 규정 내 결혼휴가와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유급휴가의 취득권을 상실한다.

- 1) 하계, 동계휴가(예: 교직원 등 경우) 일수가 유급휴가 취득 가능 일수를 상회하는 경우
- 2) 20일 이상 개인용무휴가(假)를 취득하고 이 기간에 급여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 3) 병가의 취득 누계가 다음 일수를 초과할 경우 유급휴가 취득불가
 - 근속 1년 이상 10년 미만: 2개월
 - 근속 10년 이상 20년 미만: 3개월
 - 근속 20년 이상: 4개월

연차휴가는 해당연도 내에 집중하거나 분산해 수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도 내에 수배해야 하나, 생산상황 등 필요시 차년도로 이월해 수배할 수 있다. 또 미소진 유급휴가일에 대해 일급의 3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가 이외에도 노동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 의료휴가, 결혼 휴가, 출산휴가 등 휴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 의료휴가 등은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에 따라 급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적 규정 내 결혼휴가와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다.

해고

중국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시용 기간에 채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증명된 경우
- 고용기업의 규정 및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중대한 과실, 사리(私利)추구와 부정행위로 고용단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음에 따라 본 고용단위의 작업임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단위가 지적해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 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황에 의거,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또한 근로자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노동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직 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유사 직업병 환자로 진단 또는 의학관찰 기간 중인 자
- 본 고용단위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부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질병 또는 비 업무상 부상으로 규정된 치료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인 경우
- 본 고용단위에서 연속 근무 기간이 만 15년이고 법정 퇴직연령까지 5년 미만이 남은 경우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상황

외국 기업의 해고 조치에 대해 해당 직원이 불복할 경우 직원은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 노동 중재위원회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1) 노동계약서에 직원의 해고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
- 2) 직원을 해고할 때는 사전에 해당 직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3) 만약 노동조합(工會)이 있다면 노동조합에도 서면으로 통보하여 동의를 구해야 한다.
- 4) 직원채용 등기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최종적으로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노동국 또는 노동인사국에 해고조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퇴직금

중국은 근로계약 기간 종료 전에 사용자 측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에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는 경우에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보상금 정산은 노동계약 해지 또는 종료 전 근로자의 12개월 평균 월급과 해당 기업 내 근무 기간에 따른다. (경제보상금=평균 월급*근무 연수)

월급이 지역 평균월급의 3배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 평균 월급*3으로 정산한다.

근무 기간은 만 1년마다 1개월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1년으로, 6개월 미만의 경우는 0.5년으로 정산한다.

노조

노조를 일컬어 중국에서는 공회(工會)라고 하는데 공회는 한국 노조와는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다.

중국 근로법 제7조에 '근로자는 법에 의해 공회에 참가하거나 공회를 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회는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파업은 불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파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관계에 있어 파업과 같은 행위가 한국보다 상대

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다.

중국 공회법에 따르면, 공회는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동시간·휴가·임금·복지비용 등과 관련된 부분을 집단 계약할 수 있는 창구로 규정돼 있다. 즉 필요에 따라서 공회는 중국 노동자와 사주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임금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다.

집단해고나 노동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서 공회의 요구는 경영권 간섭이나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공회를 노동자와의 관계개선 창구로 이용해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후 나올 수 있는 임금상승이나 계약상의 문제를 집단계약 형태가 아닌 개별계약 형태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현재 5대 사회보험, 즉 양로보험(연금), 의료(건강)보험, 공상(산재)보험, 실업(고용)보험 및 생육(출산)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5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보험혜택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하고 각 지방에서 세부적 기준을 규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보험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의료보험 중 기업의 부담액은 근로자 급여총액의 약 10%, 근로자의 부담액은 급여의 약 2% 정도에서 정한다. 사회보험관리센터는 기업이 부담한 금액의 약 70% 정도를 통합계좌에, 기업이 부담한 나머지 금액 및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을 개인계좌에 각각 기록하여 관리한다.

중국의 건강보험인 의료보험은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받을 경우 의료보험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사회보험관리센터의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의료비는 적립금액과 관계없이 지급하되 지급 액수는 1년 기준 해당 지역 근로자 연평균 급여의 10% 이상, 400% 이하의 범위로 제한된다. 동시에 실제 발생한 개별 의료비 중 일부만을 지급받는 반면에 사회보험관리센터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의료비는 적립 금액의 범위에서 발생 의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고용)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액은 근로자 급여총액의 0.8%, 근로자 부담액은 도시 호적 근로자의 경우 본인 급여의 0.2%, 농촌 호적 근로자의 경우 부담하지 않으며 사회보험관리센터는 개인계좌와 통합계좌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한다. 실업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상태가 된 경우, 사회보험관리센터에서 실업등기를 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도시 호적 근로자의 경우 근무연한에 따라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실업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그 액수는 현지 최저 급여표준 이하 주민 최저 생활보장 수준 이상의 원칙에 따라 정하며 농촌 호적 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기금에서 일시불로 생활보조금만 지급한다.

산재보험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공상 보험료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업종의 산재 발생위험 정도에 따라 근로자 급여총액의 약 0.2~1.9%(구체적 기준은 현급 이상 정부에서 규정)의 기준을 적용하며 사회보험관리센터는 개인계좌와 통합계좌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한다.

근로자가 산재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공상보험치료항목, 공상보험 약품, 공상보험입원서비스 표준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공상보험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간병비, 부상 불구 보상금, 부상 불구 생활비, 장례보조금, 친족보조금, 사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양로보험(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데, 기업의 납부비율이 높아서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이기도 하다. 양로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액은 해당 지역 전년도 근로자 평균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근로자는 해당 지역 전년도 근로자 평균급여의 8%를 부담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감세와 비용 인하 정책의 하나로 [사회보험요율인하 종합방안](2019.5.1부로 시행)을 제정하여 양로보험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을 20%에서 16%로 낮췄다. 사회보험관리센터는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통합계좌에,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을 개인계좌에 각각 기록하여 관리한다. 또한 동 방안에서 양로보험 사용자 납부비율 인하, 사회보험료 납부기수 조정 정책 등 조치와 결부시켜 성(省) 차원의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통합을 가속화 추진하여 양로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방법, 사용자 및 개인의 납부기수 책정 방법 등 정책을 점차 통합하고 2020년 연말까지 성(省) 차원의 통합적인 기업종업원기 본양로보험기금 수입·지출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역이 넓어 기업이 업무의 필요에 의해, 직원을 타 지역에 상시로 파견하거나 타지역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재까지 성시별로 사회보험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직원은 회사 소재지의 사회보험에 가입하여도 근무지의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분공사를 설립하거나 인재중개기구를 통해 직원이 당시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회보험료를 세무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등 변화로부터 향후 사회보험의 납부, 지출, 향유 등 모든 시스템의 전국범위 내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은 필연적 추세이긴 하나, 지역이 방대하고, 인구 또한 많은 등 요소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로보험은 근로자가 정년퇴직(남성 만 60세, 여성 만 50세)하는 시점에서 양로보험료를 15년 이상 낸 경우 양로보험기금으로부터 매월 양로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 매월 지급하는 양로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사회보험관리센터에서 개인계좌에 기록한 금액(즉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만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생육보험

생육(출산)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보험료 기준은 근로자 급여총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사회보험관리센터는 개인계좌와 통합계좌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한다.

생육보험은 출산 시 생육보험기금에서 검사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및 약품비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부담한다. 또한, 생육보험에 가입한 남성 근로자의 부인이 출산할 경우 생육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는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로 불린다. '중국 내의 기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조직'은 기업 소득세 납부 대상이다. 주로 국유기업, 단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 기업, 중외 합자/합작기업, 외자 기업 등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 비기업 단위, 외국상회 및 농민전업합작사 등 소득이 있는 조직이 해당된다.

개인 독자 기업과 합명기업(合伙企业)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기업소득세법 세율은 일반적으로 25%이며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20%,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 15%의 특별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중국 국민, 개인사업자 및 중국 내에 소득을 가진 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 동포 등을 포함한다. 이들 납세의무자는 주소와 거주 기간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중국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중국 내의 거주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개인을 거주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중국 내외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닌다. 중국 내에 주소가 없거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 즉 비거주자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다음의 소득은 지급장소가 중국 내에 존재하는지 불문하고 중국 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한다.

- ① 재직, 고용, 의무이행 등이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
- ② 중국 내에서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취득하는 소득
- ③ 중국 내의 건축물, 토지사용권 등 재산 또는 중국 내의 기타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소득
- ④ 각종 특허권을 중국 내에서 사용하고 취득하는 소득
- ⑤ 중국 내 기업 및 각종 경제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 중국 내 거주 기간에 따른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 6개월 미만: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 없음
- 6개월 이상~5년 미만: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 5년 이상~: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한 납세의무가 있음

근로소득의 경우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중국 내 기업에서 근무하고 지급받는 시점부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 근로소득세의 계산 및 공제항목: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세는 매월 계산하여 납부하며 근로소득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 * 적용세율(과세 표준별)

기본공제: (매월) RMB 5,000 (2018. 10. 1.부)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개인사업소득대상이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단위나 개인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세의무자이며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위나 개인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의 1차적인 책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귀속되는 개인에게 있다.

과세소득 및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 ① 종합노동소득(노무 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소득) 3~45%
- ②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 5~35%
- ③ 이자 및 배당소득 20%
- ④ 재산임대소득 20%
- ⑤ 재산양도소득 20%
- ⑥ 일시소득 20%

중국은 2018년에 개인소득세에 대해 개정을 한바, 그 내용은 중국 직원에 대한 세금감면, 외국인 혜택 축소, 사회보험 부담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종합소득세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성소득(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소득)은 종합노동소득으로 신고하며, 2019년부터 연말정산을 도입하였다.
- 2) 근로소득 월 기본공제를 RMB 3,500에서 RMB 5,000으로 높이는 대신 외국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 1,300위안의 추가 비용공제는 취소되어 실제 RMB 200 정도만 기본공제가 증가되었다.
- 3) 특별부가공제 (기본공제, 사회보험비 및 자녀교육비, 본인교육비, 의료비, 주택대출이자, 주택임차료)를 신설하였으며, 2018년 12월 27일 세무국통지 164호에 따라 2021년 까지 외국인에 대한 자녀교육비, 주택임차료 등 면세우대정책 폐지에정이다.
- 4) 3% 최저세율 소득구간을 기존 월 1,500 위안에서 3,000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월 소득 RMB 10,000인 근로자는 세율이 20%에서 10%로 낮아서 최대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 5) 2018년 7월 20일 국무원 판공실 [국세지세 징수관리 체제 개혁방안]에 따라 사회보험비 및 비세수수입 관련 징수관리 직책을 세무부서로 이관하였다.

◦ 중국 개인소득세법과 한중 조세협약의 적용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한국인은 한중 간에 체결되어 있는 조세협약을 먼저 적용한다. 즉,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적용보다는 조세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예컨대 중국에서 개인(한국인)에게 지급하는 인적 용역소득은 개인이 중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인적 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단위나 개인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수취하는 개인은 한국에서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 중국에서 원천 징수된 개인소득세를 공제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증치세란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이다. 그 납세자는 중국 내 상품 판매, 가공/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수입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다.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기업부담 경감 및 경기부양책 후속조치로 2018년 5월에 이어 2019년 4월 1일 증치세를 추가 인하했다. 제조업 부문은 기존 16%→13%, 교통·운송·건축 등 부문은 기존 10%→9%로, 서비스부문의 6% 세율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중국은 기업부담 경감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18년에도 제조업 부문은 기존 17%→16%, 교통·운송·건축 등 부문은 기존 11%→10%로, 증치세율을 1%p 인하한 바 있다.

2016년 5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개혁”이 최종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및 생활서비스업을 증치세 징수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전국 범위내에서 개혁이 막을 내렸다. 유전세 개혁이래 특정 업종의 증치세 감세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환급수속의 업무처리 효율이 어느 정도 제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0년 6월 말 기준, 중국 증치세의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음과 같다.

- ① 물품판매/가공, 수선교체용역 제공/일반 화물 수입(국무원에서 별도 규정한 제품 제외) 13%
- ② 교통운송, 우편 서비스/기초 통신 서비스/건축서비스/부동산, 토지사용권 양도, 식용식물유/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

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도서, 신문, 잡지/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필름/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기타 제품 9%, 서비스업(TV 방송/부가가치 증가형 통신/금융/현대/생활 서비스) 6%

중국의 증치세 징수방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래 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나 기업체가 납세의 무자가 되는데, 실제 증치세를 징수하는 방식은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을 매입할 때에 거래 상대방에게 증치세(매입증치세)를 지급하고, 매입 또는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때에 그 재화의 매입자로부터 증치세(매출증치세)를 징수하여 과세기간(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월 단위)동안의 매출증치세와 매입증치세의 차액을 세무국에 납부하는 것이다.

중국은 소규모 납세의무자에게 증치세 관리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증치세액과 매입증치세액의 차액이 매출액의 3%로 간주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간이과세 방식을 채택해 왔다. 기존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연간 매출이 50만 위안 미만인 공업기업과 80만 위안 미만인 상업기업에 한했다. 2018년 5월 1일부터 해당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연간 매출이 500만 위안 미만 공업, 상업 기업 모두 소규모 납세의무자 등록신청이 가능해졌다.

수출환급과 공제방식

수출의 경우 증치세율은 0%이므로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매입증치세의 환급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환급률은 국무원에서 결정하므로 수출장려 또는 수출억제 등 국가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자주 변경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 과세 면제 항목

- 농산품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 피임약품 및 도구
- 고서적
- 과학연구, 과학실험, 교재에 사용되는 입력기기(輸入機器) 및 설비
- 외국정부나 조직에 의한 무상원조 수입물자 및 설비
- 가공·조립·보상 무역용 수입설비
- 장애인 관련기관이 수입하는 장애인 전용 물품 등
- 자가사용 물품의 판매
- 개인 판매액이 과세 기한점에 미달한 경우(월 판매 2,000~5,000元, 과세용역 월 1,500~3,000元 매회별 납부 시 매회(일) 판매액이 150~200元)

특별소비세

중국은 담배, 주류, 폭죽, 화장품, 정제유, 귀금속, 골프공 및 고급시계, 요트,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등 세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중국 내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소비제품의 제조, 위탁가공, 수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 및 판매기업과 개인 모두 납세의무자이다.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종가법(價法)과 종량법(量法)으로 나뉜다. 종가법으로 과세하는 과세대상의 과세표준은 해당 품목의 매출액이다. 종량법 정책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할 경우, 일반적으로 단위당 과세소비품의 종량, 용적 혹은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종가법에 따른 세액 = 과세대상 소비품의 매출액 * 적용세율

종량법에 따른 세액 = 과세대상 소비품의 판매량 * 적용세율

수입품은 조성계세가격에 따라 납부할세액을 계산한다.

조성계세가격 = (관세 과세표준 + 관세) / (1 - 소비세 세율)

납세할세액 = 조성계세가격 * 소비세세율

특별소비세는 생산단계, 수입단계, 소매단계 등 과정에서 납부한다. 납세인이 생산한 과세 대상 소비품은 생산자가 판매할 때 신고납부한

다. 수입한 과세 대상 소비품은 수입통관자가 통관 시 신고납부한다. 금/은 액세서리 소비세는 소매자가 소매단계에 납부한다.

환경보호세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데 분기별로 납세자가 신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 영내와 관할 하에 있는 기타 해역에서 납세 대상인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체 및 생산 경영자들이 대상이다. 납세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 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 4가지이다.

납세 대상 오염물질 및 세금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대기오염) 1.2 위안/당량(當量)
- ② (수질오염) 1.4 위안/당량/(當量)
- ③ (고체오염물질) 버력 5위안/톤, 위험폐기물 1,000위안/톤, 미광 15위안/톤, 분말 연탄재·고로 슬래그·기타 고체폐기물 25위안/톤
- ④ (소음) 기준 초과 분량 1~3dB 35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4~6dB 700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7~9 dB 1,400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0~12dB 2,800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3~15dB 5,600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6dB 11,200위안/월

코로나19 조세혜택

'코로나19' 방역 지원 기능을 보다 충분히 발휘하며 납세자가 제반 조세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0년 3월 세무총국은 새로 출범된 '코로나19' 방역 및 영업조업 재개 지원 관련 조세혜택 정책을 정리하고 업데이트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 정책 지침'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호·치료 지원

- 1)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코로나19' 방호·치료 임시 업무수당 및 장려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 2) 업체·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예방용 의료방호용품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 물품공급 지원

- 3)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의 증치세 증량이월공제세액 전액 환급
- 4)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보장물품 운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수입에 대해 증치세 면제
- 5) 납세자가 대중교통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필품 택배 수거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수입에 대해 증치세 면제
- 6) '코로나19' 방역·통제 중요 보장물품 생산업체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설비에 대해 기업소득세 세전 일괄공제 허용
- 7) 위생건강주관부서의 조직(주관)하에 수입하는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공익성 기부 권장

- 8)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부서 등 국가기관을 거쳐 '코로나19' 방역용 물품 또는 현금 기부 시 기업 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 공제 허용
- 9)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직접 기부 시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공제 허용
- 10) 무상으로 기부하는 '코로나19' 방역용 화물에 대해 증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비, 지방교육부가비 면제
- 11) 기부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범위 확대

○ 영업조업 재개 지원

- 12)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업종/기업의 2020년도 발생 결손금 최장 이월공제기간을 8년으로 연장
- 13) 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증치세 한시적 감면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980년대 개방 이후 2000년 이전까지 중국의 외환시장은 국제 거래를 돕는 보조 장치로서 자리매김했다. 1988년 중국 주요 도시에 외환거래센터를 개설하고 1994년에는 은행 간 외환거래를 허용했다.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환율제도의 점진적 개편을 약속하고 2005년 7월 여러 주요 통화로 이뤄진 바스켓을 구성하고 시장의 수요공급을 반영하는 관리환율제도로의 변경을 발표했다. 2005년 외환제도 개혁 이후 2014년 1월까지 9년여에 걸쳐 매우 완만하고 지속해서 평가절상을 진행했다. 결국, 중국이 외환제도를 바뀐 기저에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사이의 효율성 차이나 선호도 차이가 아니라 기축통화로 발돋움하려는 장기정책목표가 자리 잡고 있다.

2015년은 중국이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시행한 첫해다. 중국 환율제도는 2005년 7월 중국 인민은행은 고정환율제로부터 환율변동제로 이행, 2008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배경으로 사실상 다시 고정환율제로 복귀했다가 2010년 6월 다시 변동제를 시행했다. 2015년 8월 11월,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기준치 산출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전일 환율시장 마감치를 참고해 중국 외화 수요와 공급, 글로벌 시장의 기타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치를 산출, 발표한다. 인민은행은 그전까지 시중 은행이 보고하는 환율을 바탕으로 기준환율을 산출해 왔는데 그 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2019년 3월 인민은행이 하루 달러당 위안화 변동 폭을 $\pm 1\%$ 에서 $\pm 2\%$ 로 확대, 매일 9시 15분경 발표된다.

외환 규제

1) 해외 현금인출 및 소비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 1일부터 해외 현금인출 및 소비 1,000위안 이상의 경우 카드 발급 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카드를 발행한 은행은 법인 단위로 모든 해당하는 정보를 취합해 보고해야 하며 연후에 따른 연기 없이 보고 주기는 매일이다. 내역은 빅데이터 분석과 돈세탁 방지, 자본유출의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모두 축적되고 있다.

당국은 개인 자산 전이와 '그림자 은행'을 단속하기 위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은 환전과 달리 한도가 없는 관계로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해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또 "2016년 경찰과 합동으로 100여 개의 '그림자 은행'을 단속했으며 이들이 반출하려 한 금액은 수천억 위안에 달했다"고 외환관리국은 밝혔다. 지금껏 개인이 해외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계좌당 10만 위안에 달했으나, 2018년 개인 1명에 허용되는 연간 총 인출 금액이 10만 위안으로 감소했다. 중국 내에서는 5만 달러까지 환전이 허용되며, 이를 넘어서는 환전은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인이 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후강통(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해야 하며, 이 밖의 중개인이나 그림자 은행 이용은 철저히 금지된다. 2019년 1월,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지하 금융업자들에게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사법 공지문을 발표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500만 위안 이상의 외환을 불법 거래하거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10만 위안 이상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했다. 특히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청은 '환치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이 개인과 기업들이 위안화 약세와 경제 성장 둔화에 대비해 해외 투자를 모색하자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 과실 송금 관련 규정 및 절차

한국 투자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획득한 합법적인 이윤·기타 소득 또는 청산 후의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기업의 등록 자본금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전액 납입되지 않은 한국 투자기업은 외환이윤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없으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

자본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은 경우는 원 허가기관의 비준을 받아 실제납입한 등록자본금의 비례에 따라 배당받은 이윤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단, 이윤은 투자기업이 중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및 각종 기금을 공제하고 이전 각 회계연도의 결산을 전보한 후 배당받은 이윤이어야 한다. 한국 투자기업은 동사회(주주회)를 개최하여 이윤배당을 결정한 후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외환지정은행에서 관련 수속을 거쳐 한국으로 송금하면 된다. 과실 송금 시 은행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① 과실 송금 신청서
- ② 외국인투자기업 외환 등기 증명서
- ③ 이사회(주주회) 과실분배 결의서
- ④ 심사보고서(공인 회계사의 감정 거쳐야 함)
- ⑤ 회사이윤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 ⑥ 납세증명서(세금 감면 혹은 면세 혜택을 받은 기업은 현지 세무국에서 발행한 세금 감면 혹은 면세 증명 서류 제출)
- ⑦ 세무보고서

○ 유의사항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자본금 납부 미완료: 원칙적으로 기업 이윤을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 단 기업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등록자본금을 납부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해 기존 투자인가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 지정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납부된 등록 자본금 비율을 기준으로 기업 이윤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한 외투 기업이 해외 주식 수입을 중국으로 송금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해외발행 주식 수입의 중국 내 송금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의 3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투 기업의 이윤을 해외로 송금하면 송금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된다. 납세 후의 이윤은 지정된 외환은행에서 매년 1차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송금 전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과실 송금액 10만 달러 이상의 경우: 은행은 매월 첫째 주에 외환관리국에 '전월(前月) 송금한 외국인 투자기업 이윤'을 보고해야 한다. 과실 송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추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환관리국이 추가로 검사할 권리가 있다. 외환관리국이 추가 검사 시 은행에서 보고한 송금 금액이 실제 송금 금액의 5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추가 검사 중 은행이 규정에 따라 심의하지 않았거나 기업의 거짓 과실 송금 행위 등의 내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

- 사중/사후 관리 강화 추세: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 외환자금 운영관리 관련 규정(예: 다국적 기업 외환자금 집중 운영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 외자기업의 무역투자 편의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외국기업은 중국내 주요 자금계좌를 통해 외채 자금을 들여오거나 상환할 경우 더 이상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직접 방문해 외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기업이 등록 후 직접 자본 항목 수입의 외환결제가 편리하도록 했으며 관련 자금 환결제 및 지급 시에도 사전에 진실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4월, 국가외환관리국이 발부한 “외환관리를 최적화하여 국제업무 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통지”(家外管理局于化外管理 支持涉外展的通知, 2020년 6월 1일부로 시행)에 따르면 자금사용이 진실하고 합법적인 전제하, 기업에서 자금, 외채 및 국외 상장 등 자본항목 수입에 대해 경외로 지불할 경우, 사전에 은행에 진실성 증빙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화물무역외환수지기업 명부 상 분류가 A인 기업에 대해, 5만 달러 및 그 이하이고, 또한 송금취소 일자와 지급일자 간격이 180일 이상이거나 특수한 원인으로 원 경로대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 외환국 등기수속을 밟지 않고 직접 금융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경 간 무역투자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중·사후 관리감독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외국기업의 국경 간 자금 집중 운영 업무에 대해 거시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고 통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리스크 평가, 비현장 모니터링, 현장 조사 및 검증 등을 통해 국경 간 자금 흐름에 대한 리스크에 대비할 방침이다. 즉 각급 외환관리국은 다국적 기업의 외환 자금 집중 운영 관리 업무에 관한 국경 간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현상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하고 법에 따라 현장 심사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중국의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전리권과 상표권, 그리고 저작권, 기타 권리(영업비밀, 집성회로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권)로 나뉜다. 이 중 전리권은 발명전리, 실용신형전리, 외관설계전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들은 각각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해당한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 체계는 아래와 같다.

특허와 실용신안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며 디자인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을 갖추고, 타인의 선권리와 저촉하지 않아야 한다. 이 중,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침해소송 등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전리평가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상표 등록 요건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1)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바로 '거절결정'이 통지된다는 점, 2) 일부거절결정 시 별도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공고 및 등록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민사·형사 대응이 모두 가능하며,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침해행위 및 침해물품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이용된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19년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액은 전년대비 8.0% 증가한 41조 1,649억 위안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요식업이 전년대비 9.4% 증가, 상품소매업은 전년대비 7.9%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 소비가 전년대비 7.9% 증가, 농촌 소비가 9.0% 증가했다. 2019년 소비의 경제성장기여도는 57.8%로 전년(76.2%)대비 18.4%포인트 하락했으나 소비는 여전히 중국 경제 성장의 제1동력이다. 소비시장 주력군 중 하나인 실물상품 인터넷 판매액은 전년대비 19.5% 증가했으며, 전체 사회소비품 판매액의 20.7% 차지했다. 서비스업 성장촉진 정책 등으로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서비스업 소비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2019년 서비스소비지출 비중은 45.9%로 전년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활력 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액은 2020년 1~7월 마이너스 성장했다. 특히 1~2월에는 20.5% 하락하면서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코로나로 인한 소비 충격이 컸다. 외출 자제제한되면서 외식업, 자동차, 의류, 화장품, 액세서리, 통신기기 등 소비가 대폭 위축되었으며, 8월(0.5%) 들어 점차 플러스 전환되면서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요식업 매출은 10월(0.8%)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되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확대 및 국내시장 강화에 관한 실시의견(于促消费提行程强市场的施意)' 등 각종 방안과 지침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소비쿠폰, 상품권 발급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통계청이 공시한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14억 5만 명에 육박하며, 0~14세 인구는 전체인구의 16.8%, 15~64세 인구는 70.7%, 65세 이상 인구는 12.6% 차지한다. 주력 소비군은 지우링허우(90년대 이후 출생자), 링링허우(2000~2009년 출생자)이다. 두 세대는 약 3억 2천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22% 차지한다. 이들은 디지털 문화에 매우 익숙한 세대로, 2030년대까지 전체 소비 증가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우링허우가 온라인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가장 높으며 소비욕구지수도 가장 높다. 지우링허우는 제품 품질, 브랜드를 중시하며 생필품 구매가 비교적 많으며, 개성을 중시하고 디지털 제품 소비가 비교적 많다. 링링허우는 신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들은 스마트폰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스마트 세대라고도 불리운다. 링링허우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세대로 강력한 소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 구매 의사가 높으며 온라인 제품 구매와 뷰티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제적으로 자립된 상태가 아니기에 잠재적 소비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노인인구의 소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6% 차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고령노인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고소득 노인 인구 증가로 제품 수요 다양화 및 고급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존 실버 세대와 달리 상품 품질, 디자인, 혁신제품에 대한 요구가 까다로운 편이다.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소비 성향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 전반이 위축됐지만, 온라인 소비는 오히려 활발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및 위챗 등 SNS채널을 활용한 언택트 소비 성향이 더욱 뚜렷하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소비가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품별로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자가격리 등으로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간편식 제품, 즉석식품

, 주방 가전, 조리기기, 재택근무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 '홈코노미'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공기청정기, 살균소독이 가능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구매채널을 보면 왕홍·연예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소비가 급성장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다.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묻고 답할 수 있어 기존 홈쇼핑보다 소비자 참여도가 높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는 기존의 유통상 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저렴한 가격의 제품 공급이 가능하며 초특가 할인 등으로 재구성해 최대한 많은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라이브 커머스는 화장품, 의류, 식품, 부동산, 가전제품, 여행상품 등 전 품목에 걸쳐 활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편하게 집에서 소비를 즐길 수 있다.

아이메이즈쉐ن(艾媒咨, 중국 시장조사기업)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중국 라이브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25% 대폭 증가한 4,338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2020년은 매출액이 전년대비 2배 증가한 9,610억 위안, 온라인 라이브 사용자 수 5억 2,400만 명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정부의 내수시장 강화정책에 따라 해외소비가 국내소비로 전환되는 동시에 중국 소비자들의 로컬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2,029명 소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소비자의 66%가 올해 광군제(쌍11) 로컬 브랜드 제품 구매의사를 밝혔다. 반면, 유럽, 미국 등 브랜드에 대한 구매가 점차적 감소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주요 소비시즌은 1~2월(설 선물), 3월 초(3월 8일 여성의 날), 6월(6월 18일 징둥 창립기념 판촉대전), 11월(11월 11일 광군제), 12월(12월 12일 쌍12) 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K-pop, 한국 드라마 등 TV 프로그램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제품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은 대체로 고가고품질 및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 식품은 중국 소비자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가공식품과 음료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신라면, 진라면 등 라면종류는 꾸준히 인기를 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왕교자, 즉석떡볶이, 삼양의 불닭볶음면, 매일유업의 바리스타 커피 등 제품이 중국 소비자들의 인기를 받고 있다. 이 제품들은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현지 유명 왕홍 라이브 방송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

뷰티제품 또한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쇼핑물 및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중국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아포레퍼시픽을 비롯한 대기업은 중국 유명 왕홍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 판매 및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사용하고 있어 고급이미지를 이어나가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지만 개성파 브랜드들은 샤오홍수(小) 등 라이프스타일 공유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마니아층 고객을 확보해 나간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실수요자와 직접 접촉

중국은 실수요자와 에이전트가 이원화돼 있어 비즈니스 상담은 실수요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국 업체들이 요청하는 대리 제도는 독점판매와 비슷한 형식으로서 한 지역에 대해 독점판매권을 주고 바이어의 능력에 따라 광고비용, 시장개척 비용 일부를 주는 것이나 독점대리를 한 번 주면 파트너 교체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 상담 시 최대한 중국어 활용

중국 업체 방문 시 중국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통역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통역원이 전문분야 지식이 부족해 현장에서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품의 기능, 우수성 등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전에 중문 카탈로그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료 송부 시 중국어로 작성한 상담 자료를 송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화 교신 시에도 중국어로 업무 교신하는 것이 좋다. 먼저 중문 카탈로그 및 샘플(제공 가능한 경우)을 해당 업체에 제공한 뒤 팩스나 이메일로 접촉해야 한다. 또한 중국 업체 특성상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 상담 시에는 샘플을 휴대하고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명함 챙겨보기

명함은 오른손 혹은 양손으로 공손히 주고받는다. 여러 명이 미팅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앉아있는 순서에 맞게 명함을 정렬하여 상담에 임하면 좋다. 명함에 여러 개의 직함이 나열되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상단에 적혀 있는 것이 대표직함이다. 명함이 없을 경우 호칭은 보통 상대방의 성(姓)에 중(, 대표) 혹은 징리(理, 매니저)를 붙여서 부르면 된다.

4) 위챗(WeChat) 계정 만들기

중국 업체 방문 및 상담 시 미리 위챗 앱을 다운받고 계정을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으로 중국 업체와 상담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종이 명함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위챗 친구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방문이 어려운 시기에 위챗을 통한 화상상담이 많아지면서 중국 업체와의 상담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다.

5) 철저한 사전준비

최초 접촉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역 분쟁의 경우 대부분이 수출대금 회수불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물품인수와 대금지불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국어와 영문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로 된 계약서도 같이 작성해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편이 좋다. 중국어 계약서만 작성할 경우에는 중국어로 된 글을 보는 것이 부담돼 계약서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야 한다.

6) 전문가 활용

중국사업 경험자, 변호사, 중국 비즈니스 지원 관련 기관 등 주변에 있는 각종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통역원이 같이 할 경우에는 충분한 의사전달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역원이 중간에서 잘못 전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간혹 통역원이 통역을 하면서 파악한 사업내용을 토대로 중간에 사업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직접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분쟁의 소지가 보일 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7) 방문 시기

춘절, 노동절(5월 1일), 국경절(10월 1일)은 장기 연휴 기간이므로 중국방문시기로 적절치 않다. 대부분의 업체가 이 시기에 장기 휴무에 들어간다. 특히, 우리나라의 구정에 해당하는 춘절 연휴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에는 중국 국유기업 및 정부기관과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원단(1월 1일), 청명, 단오(음력 5월 5일), 중추절 등 법정 공휴일에는 3일 이상 휴무인 곳이 많으므로 방문이 적합하지 않다.

8)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상거래 유의사항

최근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비즈니스가 일상화되면서 화상 및 유선상의 상담이 주가 되었다. 화상상담 진행 시 미리 ZOOM 클라우드 등 앱을 설치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화상상담은 1시간 좌우의 진행을 권장한다. 1시간 이상 초과 시 통역원 및 양측 상담원이 지치는 경우가 있어 상담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화상상담에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필수이다. 상담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가 잘 되는 장소 선택이 좋으며 개방된 카페, 야외 등 공공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화상상담의 경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소가 존재하므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상담 종료 후 상담내용을 문서로 기록 후 메일로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것이 좋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중국을 상징하는 상표 사용 불가

중국에서는 국가 명칭이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같거나 비슷한 도형, 중앙국가기관이 소재하는 특정된 지명이나 대표성 건축물의 명칭, 도형을 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텐안먼(天安門)’, ‘즈광거(紫光閣)’,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 등은 간판이나 상표에 사용하지 못한다. ‘중국(中國)’이나 ‘국(國)’ 자를 첫 글자로 하는 상표에 대한 심사는 매우 까다롭다.

2) 종교 선전 불허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나 포교 및 대형 종교 모임은 불가능하다. 외국인의 중국 내 종교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에 따라 허용한다.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선교 활동을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선교 활동을 하거나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3) 대화 주제

정치 관련 주제는 중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때 자제하는 것이 좋다. 중국인은 자신의 체제나 정치문제에 외국인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홍콩사태, 문화혁명, 티베트, 대만과의 관계, 소수 민족의 독립 문제 등 민감한 정치 관련 주제는 중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중국인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므로, 만일 현지인이 먼저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의견에 동의를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대로 중국인이 선호하는 대화 주제로는 오랜 역사, 다양한 음식 문화, 중국의 위상 등이 있다.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중국인들에게 바로 말하는 것은 결례이며, 꼭 주석이란 칭호를 붙여서 불러야 한다. 중국의 정책 및 중국의 법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가볍게라도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4) 식사

중국에서는 주로 사교적인 식사모임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국 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고자 한다면 중국의 식사문화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테이블 에티켓이다. 자리에 앉기 전, 주최자가 권하기 전에 자리를 정해 착석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보통 주최자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문을 바라보고 앉으며, 주최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손님 측의 최상급자가 앉는다.

두 번째, ‘술이 없으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无酒不成席)’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님 접대 시 술이 빠지지 않는다. 술을 마실 때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술을 권하고 필요한 경우 건배를 위해 자리를 자주 이동하기도 한다. 술잔을 돌리는 관습은 없다. 차나 디저트를 권유할 경우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세 번째, 식사 도중 음식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음식 칭찬을 해야 한다. 무거운 비즈니스 주제가 아닌 가벼운 음식 주제를 시작해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음식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 결례이다. 그 이유는 음식을 깨끗이 비우면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석해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는 문화가 없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마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한국인은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신다는 것을 많은 중국인이 알고 있기에 가벼운 대화 소재로 사용 가능하다.

5) 선물

중국인에게 선물을 할 경우 일반적인 관계에는 적절한 선물로 성의를 담은 과일, 꽃, 특산물 등이며, 반면에 손수건, 우산, 시계, 하얀 꽃, 종은 등은 눈물 혹은 죽음을 의미하므로 부적절하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적절한 선물로는 구하기 힘든 문화 관련 티켓, 보기 드문 특산품 등이며, 반면, 초면에 너무 고가의 선물을 하면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고, 뇌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물을 줄 때에는 양손 혹은 오른손으로 주며 왼손으로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은 쌍으로 온다(好事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짝 수개로 주고, 하나만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광둥 사람들은 ‘4’라는 짝수의 발음과 ‘죽다’라는 발음이 비슷해 짝수일지라도 ‘4’라는 숫자는 꺼린다. 중국에서는 흰색은 슬픔과 가난의 색, 검은색은 불길한 색이라고 생각해 꺼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6) 인사

중국인들의 간단한 인사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첫 만남 시 니하오(好), 닌하오(好) 라고 하며, 호칭은 이름을 빼고 성에 직함을 붙여 부른다. 직함을 모를 경우 이름이 김길동이면 성(姓)에 중(, 대표) 혹은 징리(理, 매니저)를 붙여서 진중(金) 또는 진징리(金理)라고 부르면 된다. 낯씨나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친밀감의 표현이다.

- 감사의 표현으로는 세셰(谢谢)로 하며, 연장자나 상사에게는 살짝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다.
- 일반적인 안부는 츠판러마(吃了?), 식사 하셨습니까?), 꺄더하오마(得好?),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하며, 이는 보통 아는 사람 간의 편한 인사다.

- 사과할 때는 바오첸(抱)이라는 정식적인 사과, 두이부치(不起)라는 비교적 정식적인 사과, 부하오이스(不好意思)라는 가장 쉽게 쓰이

며 의미가 제일 가벼운 사과 등이 있다.

- 아침인사는 자오(早), 윗사람에게는 자오상하오(早上好)가 있다.

- 헤어질 때는 짜이찌엔(再)으로 표현하면 된다. 처음 인사를 나누는 경우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표하고, 악수를 할 경우에는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7) 복장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복장에 있어서 디자인보다는 브랜드를 크게 중시하는 편이다. 녹색 모자 착용은 금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녹색 모자에 대한 금기는 원나라 때부터 시작돼 중국에서 남자가 녹색 모자를 쓰면 ‘아내가 바람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모자가 씌워졌다 (빼이런다이뤄 마오즈(被人戴帽子))’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을 당했을 때 쓰는 표현이다. 대부분의 중국인은 옷을 입을 때 녹색과 빨간색을 같이 입지 않는다. ‘홍뤼다페이(搭配, 녹색과 빨간색의 조합)’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촌스러운 사람을 의미한다. 마치 한국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매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8) 대화

형식적인 이야기일지라도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간단한 대화도 나누지 않고 바로 비즈니스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9) 중국식 ‘아니오’

면전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킨다. 대신 ‘고려 중이다’ 또는 ‘검토 중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대답은 그 문제 전체를 회피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독촉하면 역효과만 초래하니 차라리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것이 유리하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行(하이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100% 확답을 주지 못할 때 자주 사용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침묵 등이 있다

실제 미팅을 하다 보면 웃으면서 ‘好好(하오하오)’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금방이라도 계약체결이 될 듯하지만 이런 경우 계약 확률은 희박하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시장 확대- 설화수

코로나19로 언택트 라이프가 확산되면서 라이브 커머스(直播)가 새로운 쇼핑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다.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묻고 답할 수 있어 기존 홈쇼핑보다 사용자 참여도가 높다.

설화수는 2011년 중국 시장 진출 후 이미 매니아 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 디지털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 확대를 이어가는 중이다. 설화수는 올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몰을 통해 5세대 윤조에센스를 출시하고 중화권 홍보대사인 안젤라베이비를 초대해 론칭 이벤트를 열었다. 론칭 당일 티몰 설화수 홈페이지에는 평소 방문자의 약 10배인 153만 명이 방문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한 중국 최고 인기 왕홍 중 한명인 웨이아(薇)를 초대해 '618 쇼핑데이'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여 1만 6,200개의 설화수 자음세트를 판매(판매액 1,364만 5,800위안)하여 큰 성공을 이루었다. 이는 웨이아의 '618 쇼핑데이' 라이브 방송 중 단일 제품 최고 판매액 기록을 세웠다. 6월 1~20일간 티몰에서의 설화수 매출은 142% 증가했으며, '자음생' 제품군의 판매는 전년대비 2,290% 대폭 증가했다.

설화수는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K-뷰티의 성공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2) KOTRA 지사화 사업을 통한 시장 개척 - 차홍 코스메틱

한국에서 '언니네 쌀롱', '갯잇뷰티' 등 예능을 통해 '셀프 홈 헤어' 붐을 일으킨 차홍 코스메틱은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2020년 KOTRA 지사화 사업을 신청했다. 차홍 코스메틱의 차홍 원장은 한국인 최초로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에서 선정하는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9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으며,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차홍 코스메틱을 운영하고 있다.

차홍 코스메틱의 헤어 제품들은 현재 중국 내에서 티몰, 웨이상(微商)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티몰에 브랜드관은 없지만 개인에게 판매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왕홍 '한국 머느리 다루루(大)'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중국 내에서는 매니아 층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2020년 차홍 코스메틱은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 지사화 사업에 가입했으며, 현지무역관 지사화팀에서 매칭해준 유통상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상을 통해 중국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쥐즈펀치(桔子分期, 분할납부 가능)에 입점하여 10대, 20대 젊은 층을 주 상대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디자인은 건강한 두피와 모발에서 시작된다'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건강한 디자인에 대한 책임감을 지켜온 차홍 코스메틱은 한국 헤어뷰티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적 아티스트 예술적 비전을 창조하려고 노력 중이다.

3) KOTRA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지원으로 법인 설립-피에스케이

한국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주)피에스케이는 PR Strip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이다. PR Strip이란 반도체 노광과 에칭 공정 후 남은 감광액을 제거하는 장비로 피에스케이는 관련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피에스케이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입점을 계획하고 있었다. 중국 법인 설립을 앞두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KOTRA 상하이무역관을 찾았다. KOTRA 담당자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먼저 입점한 한국 업체 정보를 받아 직접 해당 기업에 연락을 취해 피에스케이와의 미팅을 주선했다. 또한, KOTRA 무역관이 무역구 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확인한 입점 조건과 입점 혜택 내용을 토대로 피에스케이가 안정적으로 무역구에 입점하여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와 함께 KOTRA 상하이무역관 고문 변호사로부터 물품거래에 대한 효율성 강화 방안과 보세구역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에 대비할 전략도 마련했다.

피에스케이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법인 설립 후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KOTRA의 수출중견육성사업에 참여해 중국 시장 개척에 경주 중이다.

4) KOTRA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 지원으로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 (주)엑티브온

화장품 원재료를 생산하는 (주)액티브온은 인체에 무해한 방부 대체재를 비롯해 미백, 항염 기능을 보유한 화장품 원료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이다. 액티브온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화장품 친환경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했다. 그러나 사드사태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수출액이 급락하면서 진출계획에 어려움이 닥치자 2017년 KOTRA 광저우무역관을 찾았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시점이었지만 KOTRA 광저우무역관에서 제공하는 중국 투자환경, 법인 유형, 채용 및 임금, 세금, 수출입 관련 사항, 기타 부대비용 부분까지 구체적인 정보와 상담을 통해 현지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액티브온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KOTRA 지원사업을 파악했으며, 광저우 수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무공간, 회의실, 집기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지원과 생활 정착 서비스를 받았다. KOTRA 담당자는 필요한 법인 설립 절차, 준비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시기적절한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방법을 제시했다. 액티브온은 KOTRA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국 시장을 분석하며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응방안을 준비했고, 2019년에는 광저우 PCHI전시회에 참가해 중국 현지 고객과 바이어에게 호평을 받았다.

액티브온은 광저우 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 내수 고객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토대를 차근차근 넓어나가는 중이다.

5) KOTRA 무역사절단(화상상담)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

한국화장품 생산업체 D사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KOTRA 무역사절단 사업에 참여하였다. 코로나19 여파로 KOTRA 무역사절단은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무역사절단 행사를 개최하였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현지 화장품 전문 플랫폼 담당 바이어와 1대1 화상상담을 주선하였으며, 현지 담당 직원과 통역사가 동시 접속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중국 바이어는 미리 D사가 보낸 샘플을 확인하였으며 상담 진행 후 해당 제품에 관심을 보이며 중국 시장 내 제품 경쟁력과 마케팅 방안을 협의한 후 중국지역 총괄 대리인 조건으로 MOU 체결 진행 중이다.

* 더 많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성공사례는 KOTRA 해외시장뉴스에 기재된 「잘나가는 우리기업 해외투자 성공기」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열람 부탁드립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자료

- 여권: 신청일로부터 유효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비자를 발급받을 공간이 있는 여권 원본, 여권 사진이 부착된 페이지의 사본 1부
- 비자 신청서와 사진: 《중화인민공화국 비자신청서》 1부, 여권 사진 1장
- 합법 체류·거주 증명 (본국이 아닌 곳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인에 한함):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거류, 근무, 공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명서 또는 유효한 비자 원본과 사본
- 여행비자(L 비자)의 경우 비자신청인 이름으로 예약된 항공권 티켓 사본과 호텔 예약 내역 사본, 여행일정표(간단하게 작성해도 된다.)
- 원래 중국 여권 또는 중국 비자(원래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신청인에 한함): 중국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원래 중국 여권 원본과 여권 사진 부착 페이지 사본
- 만약 한국 국적이 아닌 기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새 외국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한다면, 원래 여권의 사진 부착 페이지 사본, 이전에 받은 중국 비자 사본 제출. 새 여권과 이전 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개명 증명서를 제출(자료원: 베이징시 공안국 <http://gaj.beijing.gov.cn/>)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전화: 86-10-8402-0101(베이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중국 취업비자 및 신청 시 제출 서류

- 취업비자
 - 비자 특징: 중국 국경 내에서 취업하여 고용계약을 맺고 중국에서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가 신청 가능
 - 취득요건: 중국 외국전문가국에서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를 받은 자
 - 체류기간: 1년~5년(통상 입국 시 30일로 발급 후, 현지에서 취업허가증 및 거류증으로 변경)
 - 주의사항: 비자 소지자는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 예정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구에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 제출 서류
 - 여권 및 비자(입사 시 60일 이상의 재중비자)
 - 6개월 이내 증명사진(취업비자(Z비자) 신청 1장, 무범죄경력증명서 1장, 신체검사증명서 3장, 외국인근로허가통지 신청 1장, 외국인 거류허가 신청 1장)
 - 외국인 노동비자 신청서(외국인 고용관리 서비스 시스템에서 다운 가능 (<http://fwp.safea.gov.cn/>))
 - 2년 이상 근무 경력 증명(한글 및 중국 작성 시 본인이 직접 번역 가능하며, 공증 불필요)
 - 최고 학력 증명서 자료(한국 대학 졸업한 경우: 번역 및 공증 必, 중국 대학 졸업한 경우: 졸업증, 학위증, 제3국에서 졸업한 경우: 국가별 공증 방식에 따름)
 - 무범죄기록증명(무범죄기록증명은 대리 신청 불가하고 현장 접수만 가능하나, 번역 공증은 신청자 여권 원본 지참 시 대리 가능)
 - 신체검사 증명서
 - 채용계약서
 - 주숙등기서
 - 중국어 이력서(최근 10년 이내의 이력(학위, 근무 경력 등), 학위증이나 경력서 증거 제출)

- 기타서류/ HSK 점수(외국인 취업비자 등급에 가산점, 5,6급 : 10점)

3)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 입국 시 목적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 F 비자: 중국에서 교류, 방문, 답사 활동 등을 하려는 자
- G 비자: 중국을 경유하려는 자
- J 비자: J 비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짐.
 - J1 비자: 중국에서 상주(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 J2 비자: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단기 입국(180일 이내 체류)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기자
- L 비자: 여행(단수 30일 혹은 90일 또는 복수 30일)
- M 비자: 중국에서 상업무역활동을 하려는 자
- Q2 비자: 중국에서 단기간(180일 이하) 친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
 - 중국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국 국민을 방문하려는 가족
 -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방문하려는 가족
- X 비자: X 비자는 두 종류로 나누어짐.
 - X1 비자: 중국에서 장기간(180일 초과) 유학하려는 자(30일 이내에 거류증 발급받아야 함)
 - X2 비자: 중국에서 단기간(180일 이하) 유학하려는 자

4) 단기 체류

방문(F), 관광(L), 통과(G), 승무원(C), 일시 취재(J-2) 등 중국에서 단기간(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거류증 수속은 필요 없으나 비자 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만 체류할 수 있다. 단수 비자를 복수 비자로 잘못 알거나 입국허용 기한을 체류 가능 기간으로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국 비자에는 입국허용 기한과 체류 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비자 소지자는 입국허용 기한 내에 입국하여 체류 가능 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 복수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 후 체류 가능 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중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비자를 연장해야 할 경우, 체류지 관할 공안국(베이징은 베이징시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처, 전화: 86-10-8402-0101)에서 비자 연장 수속을 해야 한다.

5) 무비자 경유

중국에서 제3국으로 경유 시 지정된 도시에서 한국, 일본을 포함한 53개국 외국인 대상으로 72시간, 144시간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 항저우, 난징, 선양, 다롄, 칭다오, 청두, 샤먼, 쿼밍, 우한, 스자좡, 친황도, 광저우, 선전, 충칭, 시안, 닝뱌 등 20개 도시의 27개 출입국관리사무소(커우안,口岸)에서 외국인 144시간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다. 창사, 하얼빈, 구이린(桂林) 등 3개 도시의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커우안,口岸)에서 72시간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다.

6)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발급 유의사항

코로나19 여파로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오니 비자 신청 시 대행업체에 미리 문의하길 권장하며, 중국대사관영사부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이후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인이 중국 입국 시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가 가능하게 하였다. '신속통로' 신설로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하여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중국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10개 지역으로 한

정되었다.

한편, 2020년 8월부터 중한중국대사관과 영사관은 온라인 비자신청서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중국정부는 한국인에 한해 8월초부터 중단되었던 비자 발급을 재개하였다. 중국정부는 한국인 유학생(S비자), 취업자(Z비자), 중국 거류증(장기체류 허가증) 소지자에게 중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줄기로 했다. 단, 코로나 이전과 준비 서류가 달라졌으니 관련 대행업체와 미리 체크하길 권장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중국 여행자 면세 한도

- 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 가치가 인민폐 5,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 가치가 인민폐 2,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 여행 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 컴퓨터 각 1대
- 기타 세관이 여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술: 주정 12도 이상 1.5리터 이하(2병) 면세
- 담배: 궐련(cigarette) 400개비, 엽궐련(cigar) 100개비, 씹는 담배 500g 면세(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의 규정을 따르나 중국 내 전자담배는 금지되어있으므로 되도록 들고오지 않는 편이 좋음)
- 5,000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 시 휴대 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5,000달러 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 하이난 리다오(海南) 2020년 7월부터 1인당 연간 면세 구매한도를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인상했으며, 상품당 면세한도액(8천 위안)을 취소했다.

2) 외화 등 지급수단의 반·출입 시 유의사항

한도 초과 외화의 휴대 반입 시에는 반드시 세관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도 초과 외화의 휴대반출 시에는 중국은행이나 외환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휴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초과 외화를 반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 외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3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결정에 걸리는 기간도 1~3개월이 소요되며 벌금이 결정된 이후에야 유치된 외화를 찾을 수 있다.

3) 휴대품 분실

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 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86-10-8531-0700
주소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cn-ko/index.do

○ 한국무역보험공사

전화번호	+86-1588-3884
주소	Room 2902, A Layer 29, Puxiang Center, Chaoyang Dis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ksure.or.kr

○ 중국한국상회

전화번호	+86-10-8453-9756~8
주소	Room 910, Hyundai Motor Tower, 38 Xiaoy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korcham-china.net

○ 한국무역협회

전화번호	+86-1566-5114
주소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Rm 1201, China World Office 1, No 1 Jianguomenwai Ave,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bj.kita.net

○ 주중 대한민국 영사관

전화번호	+86-10-8532-0404
주소	Tower Garden Diplomatic Office Building, No. 14 Liangma Henan Road, Dongzhimenwai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cn-zh/index.do

○ 한국수출입은행

전화번호	+86-10-6465-3371
------	------------------

주소	A-29F, Beijing Puxiang Center Bldg., Wangj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

○ 한국사업인력공단 EPS 센터

전화번호	+86-10-8531-0660
주소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화번호	+86-10-6410-6120
주소	Room A-603, Fuma Center,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atchina.org.cn/index.php

○ 한국관광공사

전화번호	+86-10-6585-8213/4
주소	3F, Korea Center,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chinese.visitkorea.or.kr

○ 삼성경제연구소

전화번호	+86-10-6566-8100(2925)
주소	25F, China Merchants Tower No.118, Jian Guo 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serichina.org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화번호	+86-10-6410-6162
주소	Beijing Puxiang Zhongxin 29th Floor, Hongtaidongjie, Wangj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전화번호	+86-10-5377-1212
주소	No. 2, East Chang'an Stree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ofcom.gov.cn

◦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전화번호	+86-10-6519-4114
주소	No. 6 Jianguomen Inner Stree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

◦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화번호	+86-10-6850-5050
주소	No. 38 Yuetan South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s://www.ndrc.gov.cn/

◦ 중화인민공화국도농주택건설부

전화번호	+86-10-5893-4114
주소	No. 9 Sanlihe Road, Haidian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ohurd.gov.cn

◦ 국가외환관리국

전화번호	+86-10-6840-1188
주소	Huarong Building, 18 Fucheng Road, Haidian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safe.gov.cn

◦ 중화인민공화국공업및정보화부

전화번호	+86-12381
주소	13 West Chang'an Stree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iit.gov.cn

◦ 국가지식산권국

전화번호	+86-10-6235-6655
------	------------------

주소	No. 6, Xitucheng Road, Jimen Bridge, Haidian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s://www.cnipa.gov.cn/

◦ 국가통계국

전화번호	+86-10-6878-3311
주소	57 Yuetan South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stats.gov.cn

◦ 중국인민공화국재정부

전화번호	+86-10-6855-1114
주소	No. 3 Sanli Henan Sanxiang,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of.gov.cn

◦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전화번호	+86-10-6609-6114
주소	No. 37 Mucang Hutong, Xidan,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oe.gov.cn

◦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부

전화번호	+86-5888-1800
주소	No. 15 Fuxing Road,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ost.gov.cn

◦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전화번호	+86-10-8805-0801
주소	No. 1 Fuyou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gov.cn

◦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

전화번호	+86-10-6596-1114
주소	2 Chaoyang Men South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fmprc.gov.cn
------	---

◦ 국가신문출판총서

전화번호	+86-797-2522268
주소	8th Floor, Office Building, Jindu Avenue, Ruijin City, China
홈페이지	http://xwcbs.hsxgw.gov.cn

◦ 중국 선전부

전화번호	+86-10-8805-0145
주소	No. 97, Xuanwumen West Street, ,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wenming.cn/ziliao/wenjian/jigou/zhongxuanbu/

◦ CCTV

전화번호	+86-100859
주소	No. 11 Fuxing Road,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cctv.com/

◦ 인민일보

전화번호	+86-10-65368742
주소	2 jintai west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people.com.cn/

◦ 환구시보

전화번호	+86-10-65361101
주소	16th floor, zhongqing building, 19 dongsanhuan north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홈페이지	http://www.huanqiu.com

◦ 21세기경제보도

전화번호	+86-20-83000335
주소	Floor 25-26, tower A, nanfang media building, no. 289, guangzhou avenue, guangzhou
홈페이지	http://www.21jingji.com/

◦ 매일경제뉴스

주소	Unit 03 06, 22 / f, building B, lecheng center, 20 east sanhuan middle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홈페이지	http://www.nbd.com.cn/

◦ 제일재경

전화번호	+86-400-6060101
주소	Floor 9, 651 nanjing west road, jing 'an district, Shanghai
홈페이지	https://www.yicai.com/

◦ 중화인민공화국생태환경부

전화번호	+86-10-8466-5786
주소	No.12 East Chang'an Avenue,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ee.gov.cn/

◦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

전화번호	+86-10-5812-3114
주소	147 North River Main Street,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ca.gov.cn/

◦ 중화인민공화국사법부

전화번호	+86-10-6515-3508
주소	No. 6 Chaoyangmen South Avenue,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oj.gov.cn/

◦ 중화인민공화국농업농촌부

전화번호	+86-10-5919-1644
주소	Nanli11, Beijing Agricultural Exhibition Hal,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oa.gov.cn/

◦ 중화인민공화국문화및관광부

전화번호	+86-10-5988-1114
------	------------------

주소	No. 10, Chaoyangmen North Street,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s://www.mct.gov.cn/

◦ 중화인민공화국수리부

전화번호	+86-10-6320-2114
주소	No. 2 Baikuang Road,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wr.gov.cn/

◦ 중화인민공화국응급관리부

전화번호	+86-10-6446-3685
주소	No. 70 Guang'anmen South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s://www.mem.gov.cn/

◦ 중화인민공화국민족사무위원회

전화번호	+86-10-6650-8000
주소	Jia 49, streets in the door of Beijing's western suburbs revival.,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s://www.neac.gov.cn/

◦ 중화인민공화국심계부

전화번호	+86-10-6215-0912
주소	No. 17 Middle Capital South Street, Fengtai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audit.gov.cn/

◦ 중화인민공화국퇴역군인사무부

전화번호	-
주소	Block B & C of the Golden Court Building, 36 Pak Yue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mva.gov.cn/

◦ 중국인민은행

전화번호	+86-10-6619-4114
주소	No. 32 Chengbang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pbc.gov.cn/
------	---

◦ 인민망

전화번호	+86-10-6536-3263
주소	No.2 Jintai Road West,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people.com.cn/

◦ 신화망

전화번호	+86-10-8805-0888
주소	Golden Corner Tower, 129 Xuanwu Gate West Stree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xinhuanet.com/

◦ 경제일보

전화번호	+86-10-5839-2185
주소	No. 2 Paper Square East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ce.cn/

◦ 중국일보

전화번호	+86-10-8488-3777
주소	No. 15 Huixin East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cn.chinadaily.com.cn/

◦ 중국신문망

전화번호	+86-10-8782-6688
주소	No. 12 South Street, Millionzhuang,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chinanews.com

◦ 최고인민법원

전화번호	+86-10- 67550114
주소	No.27 Dongjiaominxiang,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court.gov.cn/

○ 최고인민검찰원

전화번호	+86-10-65209114
주소	No.147 Beiheyang Street,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spp.gov.cn/

○ 신경보

전화번호	+86-10-67106666
주소	No.37 Xingfu North Street,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홈페이지	http://www.bjnews.com.cn/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6.57위안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3.5
2	식품	비빔밥	1인분	4.57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4.57
4	식품	신라면	1봉지	1.05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4.72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3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53
8	의료	소염제	12정	3.01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15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0.46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1.98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2.83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0.83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09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6.09
16	여가	담배(말보로라이트)	1갑	3.8
17	여가	소주(한식당 내 판매 최저가)	360ml	3.04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	3.65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미국계 , 유럽계)	연간	33483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61

<자료원 : 사회노동보장국, 베이징무역관 자체조사, 물가정보는 베이징 기준 >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 화폐 단위
 - 화폐단위: 인민폐(人民); 런민비(RMB); 위안(元)
 - (지폐) 1角, 2角, 5角, 1元, 5元, 10元, 20元, 50元, 100元
 - (동전) 1角, 5角, 1元
 - 1元(위안) = 10角(지아오)
 - 회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칭이 주로 사용된다.
 - 1(콰이) = 1元(위안), 1毛(마오) = 1角(지아오)

환전방법

달러와 인민폐 간 환전은 은행에서 가능하다. 단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원화와 인민폐 간 환전이 쉽지 않으므로 출국 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국은 위조지폐가 상당히 많으므로 암거래상을 통한 환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 환전장소
 - 중국은행 ATM기에 한국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넣고 뽑으면 중국 화폐로 인출된다. (단, 인출 수수료를 사전에 잘 알아봐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 중국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는 UnionPay이며, 해외 VISA와 MASTER 카드는 장소에 따라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해외발행 UnionPay 카드 또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당량의 현금 보유는 필수이다.

나. 교통

교통상황

○ <http://lukuang.911cha.com/beijing.html> 사이트에 접속하면 실시간 교통 상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의 교통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교통 체증은 세 가지 색(빨강, 노랑, 초록)으로 나타난다.

- 빨강의 경우는 매우 막힘, 노랑의 경우는 천천히 이동 가능, 초록의 경우는 막히지 않음을 의미한다.

○ 가장 막히는 시간대는 한국과 동일하다. 출근 시간대와 퇴근시간대인 아침 8~10시, 저녁 5~7시가 가장 막히기에 이 시간대에는 지하철 이용을 추천한다.

○ 바이두지도(百度地圖) 혹은 가오더지도(高德地圖) 어플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택시 요금, 목적지까지의 거리, 콜택시 연결까지 한번에 확인 가능하여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알 수 있다.

버스

○ 이용요금 및 정거장 검색

- <https://www.8684.cn/> 사이트에서 다양한 대중교통의 시간표와 정거장, 금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10km당 2위안, 5킬로미터 마다 1위안씩 증가

○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 현금, 카드, 핸드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핸드폰 앱, 카드는 승차 시 찍고 하차 시 또 찍으면 50% 할인된다.
- 카드는 교통카드의 일종인 이카통(一卡通)사용 가능하다. 이카통(一卡通)은 카드 버전/ 핸드폰 버전이 있다. 카드는 현금을 충전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핸드폰은 4G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버전 모두 보증금 20위안을 내야 하고 반납 시 20위안을 다시 돌려준다. 발급방법은 이카통(一卡通) 카드 판매기계 이용 혹은 지하철표 판매처(사람에게 구매)에 가서 문의하면 된다.
- 이통싱(通行), 베이징 버스(北京公交)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앱을 다운로드 받고 첫 화면에서 공자오마(公交)를 클릭해 안내에 따라 실명 인증을 거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리 충전할 필요 없이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택시

○ 이용요금

- <http://taxi.ditu6.com/>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시명, 출발지, 도착지를 작성하면 거리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 베이징 지역의 경우 기본요금은 3km 이내 13위안, 1km당 2.3위안씩 증가한다.

○ 이용시간

-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야간 할증요금이 붙는다. 위 사이트의 야간가(夜价) 부분에서 네(是) 보기를 누르면 야간 할증요금을 알 수 있다.

○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포함

- 디디택시(滴滴打)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의 카카오 택시와 같은 개념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 핀처(): 남들과 합승할 수 있는 택시(요금이 싸다)
- 차 종류, 차 번호, 기사 정보 등을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 내가 가는 경로를 위챗을 통해 친구에게 발송 가능, 위험한 경우 비상연락망 및 경찰서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안전하다.
- 핸드폰 앱이 아니어도 위챗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 더 자세한 정보는 디디 택시 사이트(<https://www.didiglobal.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전거

- 주요 공용 자전거: MOBIKE/Hello Bike/ MEITUAN/DIDI
-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전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전거에 붙여져 있는 QR코드를 스캔 후 이용 가능하다.
- 보통 30분에 1.5위안이며 전동자전거 경우 30분에 2위안이다. 월 이용권 구매 시 할인이 가능하다. DIDI 자전거 경우 30일 이용권 구매시 13위안, 7일 이용권 구매 시 3.5위안 쿠폰을 구매하여 사용 가능하다.

지하철

○ 이용요금

- 이통싱(通行) 앱을 통해 베이징 지하철 노선도와 시간표 등 정보가 확인 가능하다.
- 기본요금은 3위안이며, 구간별로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Min 3위안~Max 10위안)

○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포함

- 카드, 핸드폰 앱을 통해 결제 가능하며 그 방법은 버스 이용방법과 동일하다.
- 1회용 카드는 지하철 판매소 및 자동판매소에서 구매 가능하다.

다. 통신

핸드폰

◦ 핸드폰 유심칩

- 중국에 장기간 거주 시 로밍보다는 중국 내에서 현지 유심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지 유심 개통 시 중국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고 문자 및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 유심칩은 공항에서 사는 것을 추천한다. 여권 정보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작성하면 직원은 얼마나 머무를 것인지, 문자와 데이터는 얼마나 쓸 것인지 등등을 물은 뒤 다양한 상품을 추천해줄 것이다.
- 여행자의 경우 데이터 무제한이 가능한 유심칩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 유심칩을 발급받은 후 핸드폰에 넣으면 통신사가 중국의 통신사로 바뀌며 바로 이용 가능하다.

◦ 중국 3대 통신사

- 차이나모바일(中移): 4G 기술을 가장 먼저 시행한 통신사이며, 2020년 5월 말 기준 5G 요금 누적 가입자가 5,560만 9천 명으로 가장 많다. (문의 전화번호: 10086)
- 차이나유니콤(中通):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회사이며 징진지(京津冀), 장강삼각주, 다완취(大) 등 지역의 도시에 13만 개의 5G 기지를 건설하였다. (문의 전화번호: 10010)
- 차이나텔레콤(中信):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유기업으로 인터넷 기술은 잘 되어있지만 통신기술이 조금 떨어진다. 2020년 5월 말 기준 5G 요금 누적 가입자가 3,005만 명이다. (문의 전화번호: 10000)

인터넷(와이파이)

집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과 Wi-fi 공유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인터넷회선 개통 공사가 되어있어 공유기를 꽂으면 사용할 수 있다.

Wi-fi 공유기를 중국에서 구매할 경우 비용은 200위안에서 300위안 정도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공유기가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으니 중국 내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국은 해외 SNS를 국가에서 막아놓은 경우가 많고 국내 대표 온라인 사이트의 블로그 역시 VPN 없이는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자료 검색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중국에 오기 전 VPN을 설치해서 오는 것을 추천한다.

라. 관광명소

◦ 만리장성(The great wall)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延G6京藏高速58出口
운영시간	주중 07:30~17:30 주말 07:30~17:3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세계 최대의 성벽, 길이 단위로 1만 2,000화리(華裏)(6,000km)에 달한다 하여 만리장성이라 불렸다. 춘추전국시대 열국들이 오랑개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구축했던 것을 진시황이 천하 통일 후 서로 연결하여 완성했다.
비고	케이블카 이용이 가능하다.

◦ 798예술구 (798 art zon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酒仙校路4大山子
운영시간	주중 09:00~17:00 주말 09:00~17:00
휴무일	각 미술관 사정에 따라 휴무일이 변경된다.
명소소개	중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예술특화지구이다. 일련번호가 798인 전자제품공장 폐허에 2000년대 초반부터 예술가들이 모여들며 예술공간을 조성했다. 2005년 중국 정부가 철거를 발표했다가 이듬해 다시 정책을 변경해 문화혁신산업특구로 공식 지정했다. 현재 예술구에는 400여 개 화랑, 갤러리, 독특한 인테리어의 카페, 아트샵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베이징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고	사이트: http://www.798art.org (해외전용 url)

◦ 고북수진(Beijing W Town)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密云
운영시간	00:00~24:00
명소소개	고북수진은 베이징 밀운현, 중국 청년여행 주식회사와 우전 관광개발회사가 공동으로 투자 건설한 관광지이다. 고북수진은 중국 강남의 대표적인 물의 고장 우전의 모습과 중국 화북지역의 건축스타일을 융합한 관광지로 베이징 산간지대 마을을 기초로 건설되었다.
비고	베이징 외곽이라 패키지 투어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 고궁(The imperial palac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景山前街4
운영시간	주중 08:30~17:00 주말 08:30~17:00
명소소개	남북 960m, 동서 750m의 왕조 유적, 1420년 건축, 700개 건축물과 9,000여 개 방이 있다. 중국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溥儀)까지 명·청대 황제 24명 거주지이기도 하다.

비고	사이트: http://www.dpm.org.cn 연락처: +86 10 6513 1892
----	---

○ 천안문 광장(Tian an men squar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天安
운영시간	주중 08:30~16:30 주말 08:30~16:30
명소소개	높이 33.7m의 장대한 성문으로 명대 1417년에 건축되었다. (당시는 승천문(承天門)으로 불리웠다) 청나라 때 전화로 소실된 후 1651년 재건되어 개명되었다.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성루에서 신(新)중국 건국 선언을 했다.
비고	연락처: +86 10 6524 3322

○ 이화원 (Summer Palac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海淀新建路19
운영시간	4~10월 06:30~18:00 11~3월 07:00~17:00
명소소개	서태후의 여름 궁전이라고도 불리운다. 원래 금조(金朝)의 행궁이 있던 자리에 1764년 청(清)의 건륭제가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대규모 별궁을 완공하고 '청의원(칭이위안:清漪園)'이라 칭했는데 이것이 이화원의 전신이다. '이화원(이허위안:颐和園)'이라는 이름은 2차 아편전쟁으로 파괴된 궁을 1888년에 서태후가 재건하면서 붙여졌다.

○ 난뤄구샹(South Luogu Lan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 城南鼓巷胡同
운영시간	00:00~24:00
명소소개	대표적 후통 (골목) 의 하나인 난뤄구샹은 베이징에서 가장 오래된 800년의 역사를 가진 후통으로 원대(元代)의 도성과 동시기에 지어졌다. 난뤄구샹의 양쪽으로 다수의 후통이 물고기 뼈와 같은 형태로 이어져 있는데 이것은 원대 도시 설계의 특징이다.

○ 왕푸징(Wangfujing Street)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王府井大街
운영시간	00:00~24:00

명소소개	왕푸징은 ‘왕부(王府:왕족의 저택)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왕족과 귀족의 저택이 모인 곳에 깨끗한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청() 건륭제 시대에 귀족과 고급관료의 저택이 있던 곳이며 왕푸징다제(王府井大街)와 동안먼다제(安大街)의 교차점에 우물의 위치가 청동 표식으로 남아 있다. 현재는 베이징 쇼핑의 중심으로 거듭나있다.
------	--

◦ 전문대가(Qianmen street)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嵩文前大街
운영시간	00:00~24:00
명소소개	베이징 중심부 여행의 시작점이 되는 두 개의 문으로, 정식 명칭은 ‘젠로우궐’와 ‘정양먼정’이다. 1420년 명대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금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이중문이다. 젠로우의 원래 기능은 화살을 쏘는 곳으로, 일명 ‘화살탑’이라 불리기도 한다. 전문대가는 베이징의 유명한 번화가로 옛 베이징의 전통가게와 특색가게들을 보존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쇼핑가로 재개발 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 스차하이()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西城德大街羊坊胡同甲23
운영시간	00:00~24:00
명소소개	‘10개의 사찰이 있는 호수’라 해서 스차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은 그중 광화쓰(化寺) 하나만 남아 있다. 예부터 귀족들에게 사랑 받았던 곳으로 지금도 중국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거리와 호수가 어우러져 여행자와 중국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 밤이 되면 화려한 불빛과 상점들이 준비해 데이트 코스로 각광 받는다.

◦ 경산공원(JingShan Park)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西城景山西街44
운영시간	하계: 6:30~21:00 동계: 6:30~20:00
명소소개	신무문(神武門) 정면에 있는 공원으로 시중심부에 위치 공원 남쪽에 있는 경산은 해발 108m의 고지로서, 정상에 세워진 완춘팅(萬春亭)에서는 고궁의 전체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등산루에는 명나라의 황제인 송정제(崇禎帝)가 목을 맨 나무가 있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의 것은 새로 심은 나무이다
비고	고궁뒤편 맞은편에 위치

◦ 북해공원(Beihai Park)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西城文津街1
운영시간	4월~10월: 6:30~21:00 11월~3월: 6:30~20:00
명소소개	공원의 반 이상이 연못이다. 베이하이(北海) 중간에 위치한 충화다오(瓊華島)에는 티베트 양식의 흰 불탑이, 공원 북서쪽에는 아름다운 구룡벽(九龍壁) 등이 있다
비고	고궁 서북쪽에 위치

○ 천단공원(TianTan Park)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天里7
운영시간	4월~10월: 6:00~22:00 11월~3월: 6:30~22:00
명소소개	황제가 하늘에 제를 올리던 283만㎡의 제단이다. 명대 영락제가 오곡풍양을 하늘에 빌기 위하여 1420년에 건설되었다. 기년전(祈年殿)은 높이 38m, 지름 32.7m의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원형 목조건축물, 들보·마룻대·못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건축 방법이다.

<자료원 : 바이두 지식백과, 네이버 백과사전, 각 관광지 홈페이지 등 / 코로나19로 각 관광명소 운영시간 및 개방여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시 재확인 바랍니다.>

마. 식당

- 현지식당

○ 하이디라오(Hidilao hot pot)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6770-6866
주소	北京市朝松二208-13 등 전 지역
가격	117위안/인
영업시간	24시간
휴무일	없음
소개	중국식 샤브샤브
비고	현재 한국 서울, 명동 등의 변화가에도 지점이 있으며 친절함을 넘어선 철저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유명하다.

◦ 미주동파(Meizhou)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6786-2009
주소	北京市亦庄宏北路18 등 전 지역
가격	91위안/인
영업시간	6:30~22:00
휴무일	없음
소개	동파육, 등 사천요리 전문점
비고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진정한 중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회식 장소로도 적합하여 기업에서 자주 이용한다.

◦ 전취덕(Peking Roast Duck)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6701-1379
주소	北京市城前大街30 등 전 지역
가격	174위안/인
영업시간	10:00~22:00
휴무일	없음
소개	오리고기 전문점
비고	중국 500대 브랜드 중 56위이며 200년 넘는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 금정현(JINDINGXUAN)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400-676-6111
주소	北京城城和平里西街77 등 전 지역
가격	86위안/인
영업시간	24시간
휴무일	없음
소개	광둥요리, 딤섬
비고	광둥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특히 딤섬이 유명하다. 여러개의 분점 중 용허궁점이 가장 유명하며 배달도 가능하다.

◦ 와이포지아(WAIPOJIA)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5905-6087
주소	北京市朝朝公路6色港F2 등 전 지역
가격	67위안/인
영업시간	11:00~14:30 / 17:00~21:00
휴무일	없음
소개	중국식 서민요리
비고	대기시간이 길어 대기공간에 컴퓨터와 TV를 설치하고 차, 사탕 등을 제공하는 등 고급 서비스와 깔끔함이 특징이다.

◦ 동라이순(DONGLAISHUN)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6470-1696
주소	北京市朝南湖221 등 전 지역
가격	152위안/인
영업시간	11:00~22:00
소개	중국식 신선 샤브샤브
비고	1903년에 설립된 100년 전통의 샤브샤브 식당이다.

〈자료원 : 바이두, 따중뎡핑(大点) 등〉

- 한국식당

◦ 탄탄대로(TANTANDALU)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5229-8295
주소	北京市朝望京湖光中街甲6望京港旅大厦2
가격	121위안/인
영업시간	11:00~23:00
소개	한식
비고	고기의 질이 좋고 다양한 반찬 및 음식들이 있어 한국, 중국사람 모두 자주 찾는 한식당 중 하나이다.

◦ 소문날 집()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64705525
주소	北京市望京5151
가격	90위안/인
영업시간	10:00-14:30, 14:00-22:30
소개	한식
비고	한인이 많은 왕징에 위치한 한식집으로 한국인 뿐들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 애강산(AIJIANGSHAN)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8456-9336
주소	北京市台西路9-7
가격	430위안/인
영업시간	10:00~22:00
소개	한식(불고기 등)
비고	한인이 많은 곳에 위치한 고깃집으로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유명한 한식당이다.

◦ 화로화(HUOLUHUO)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6239-4475
주소	北京市海淀王庄路同方科技面
가격	82위안/인
영업시간	11:00~24:00
소개	한식(불고기 등)
비고	대학가 중 하나인 오도구에 위치한 고깃집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다. 저렴한 가격에 더불어 짜장면, 냉면, 비빔밥 중 택1이 무한리필로 제공되어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 제주애육당()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湖光中街8附近
가격	110위안/인

영업시간	평일 17:30~22:30 주말 12:00~14:00/ 17:30~22:30
소개	한식(고기)
비고	고기가 두껍고 질이 좋아 한국사람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다. 자리가 협소해 회식자리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 올킬 포차()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8293-0026
주소	北京市五道口王庄路同方御都美食地下1
가격	84위안/인
영업시간	11:30~14:00/16:30~23:20
소개	한식
비고	대학가중 하나인 오도구에 위치한 한식당으로 매운 국물 닭발이 유명하다. 국내에서 유명한 H식당의 메뉴와 유사하여 오도구 내가장 인기가 많은 한식당이며 중국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자하문(ZIXIAMEN)

도시명	베이징
전화번호	+86-10-8478-2323
주소	北京市南湖北路201
가격	156위안/인
소개	불고기
비고	한인이 많은 왕징에 위치한 고깃집으로 한국인 뿐들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한식당이다.

<자료원 : 따중뎡핑(大点)>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크라운 프라자 (Crowne Plaza)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台路6
전화번호	+86-10-5909-6688
홈페이지	https://www.ihg.com/crowneplaza/hotels

숙박료	2인실 기준 126달러/1박
소개	베이징의 차오양구역에 위치해 베이징 중심지까지 차로 약 10분, 자가용이나 공항리무진 이용 시 베이징 공항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 쿤룬호텔 (Kunlun Hotel)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新源南路2
전화번호	+86-10-6590-3388
홈페이지	http://www.thekunlunbeijing.com
숙박료	2인실 기준 207달러/1박
소개	숙소는 연샤 상업지구 지역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 베이징 공항까지 20km 정도 거리로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 켐핀스키 호텔(Kempinski Hotel)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亮路50
전화번호	+86-10-6465-3388
홈페이지	https://www.kempinski.com
숙박료	1박 246달러부터
소개	베이징의 연샤 상업지구 지역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베이징 공항까지 차량 이용 시 약 25분 정도 소요된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 12:00 이전

○ 베이징 이스트 호텔 (East beijing Hotel)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酒仙路22
전화번호	+86-10-84260888
홈페이지	http://www.east-hotel.cn
숙박료	2인실 기준 190달러
소개	베이징의 상업지역이자 한인타운인 왕징에 있는 5성급 호텔로, 대형 쇼핑몰 인디고가 있으며 공항까지는 택시로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12:00 이전
----	----------------------------

◦ NUO 호텔 (BEIJING HOTEL NUO)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安街33
전화번호	+86-10-59268888
홈페이지	https://www.nuohotel.com
숙박료	2인실 기준 185달러
소개	베이징의 중심구에 위치해 인근에 798예술구가 있고, 공항까지는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비고	체크인 14:00 이후, 체크아웃12:00 이전

<자료원 :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 베이징 거다오원신 게스트하우스(GEDIAOWENXIN(北京格馨年旅舍))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利中一路博雅B座公寓
전화번호	+86-18301610866
숙박료	1박: 13달러/인
소개	지하철역과 가깝고 베이징 한인타운인 왕징과 가까워 한국 음식 및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비고	12:00 이후 입주, 24:00 이전 퇴실

◦ Bright star 게스트하우스(Bright star)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望京西四410甲
전화번호	+86-18567890821
숙박료	1박: 9달러/인
소개	남녀가 각각 다른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함하고, 깨끗한 시설이 돋보이는 게스트하우스이다.
비고	14:00 이후 입주, 24:00 이전 퇴실

◦ 샤오주 게스트하우스(XIAOZHU(小年旅舍))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望京街望京四414

전화번호	+86-15801108473
숙박료	1박: 8달러/인
소개	특가 방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4-6인까지 다양한 인원이 사용 가능한 방이 있다.
비고	12:00 이후 입주, 24:00 이전 퇴실

〈자료원 : 따중뎬핑(大点)〉

사. 치안

치안상황

- 중국 내 여행
 - 대부분의 지역은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 다만, 군사 보호 구역 등 출입 시에는 사전허가가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티베트 등)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2일 전에 여권, 여행 사유서(공문) 등을 공안에 제출하고,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임시숙박 (주숙등기)
 - 외국인이 중국 여행 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 임시 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호텔에 투숙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 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개인 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가택주의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도시지역은 24시간, 농촌 지역은 72시간) 내에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강도·절도 등 피해 발생 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 종교활동
 - 외국인은 중국 내 사찰, 교회 등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예배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중국 입국 시 종교 관련 서류 또는 관련 자료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중국 세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개인 용품에 한해 휴대 가능하며, 중국 사회의 공공질서에 유해한 종교용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 외국인의 중국 내 종교활동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종교단체 및 조직 설립, 종교활동장소(사찰, 교회 등) 설립, 종교 관련 교육 기관 설립, 중국 국민에 대한 선교 활동 등은 금지되어 있다.
 - 불법체류에 대한 행정 처벌
 - 외국인이 불법 출입국, 불법체류, 여행규정 위반, 출입국 관련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구류, 기한 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행정 처벌을 가할 수 있다.
 -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경고, 기한 내 출국,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http://chn.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국 내 여행경보발령 현황
 - 남색 경보: 중국 · 북한 국경 지역(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 황색경보: 티벳, 신장위구르자치구
- (자료원: 대한민국 외교부)
- 코로나19에 따른 치안상황

- 현재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 중이니 중국으로의 여행계획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중국 지역별 코로나 확산 또는 해외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지역별 한국-중국 항공운항이 임시 중단 및 취소 가능성 있으니 방문 시 주중한국대사관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 교통사고

- 전화 신고: 사고 발생 즉시 122 혹은 110으로 신고
- 현장 보존 및 증거, 증인 확보: 목격자, 인명 피해 정도, 차량 파손 상태, 관련 차량 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 기록

○ 보행자 사고의 경우

- 사고 충격 지점, 부상부위, 주변에 횡단보도, 육교, 신호등 설치 여부 등 확인
- 보행자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지점 확인이 매우 중요

○ 택시 승객의 경우

- 택시 승객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 택시회사나 기사가 보상책임을 부담
- 택시번호, 기사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확보

○ 여권/지갑을 분실한 경우

-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 신고(거주지 관할 파출소, 호텔 등에서 "임시주숙등기표" 발급,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분실신고증명서" 발급)

- 주중대사관 영사부 신고(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 임시주숙등기표, 사진 1장 지참, 여권분실신고서, 각서, 여권 재발급사유서, 여권말소증명(중문) 작성 제출)

※ 여권 분실자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포함) 작성,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한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는 생략).
- 여권 말소증명(照注明) 교부(분실지역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처 신고가능, 여권 말소증명, 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 임시주숙등기, 사진 2장 지참)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재직증명서(미소지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대체), 영업허가증 사본,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여권 신원정보면 및 유효비자면), 호적등본 1부(만 14~18세 처음으로 신원 조회 시)
- 여행증명서: 49위안, 단수여권(1년): 105위안
-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구 여권에 있는 비자를 신 여권에 재발급 받아야 하며, 비자 신청은 여권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출입경에 신청해야 한다.

○ 주중 한국 공관 연락처

- 주중 한국대사관: +86-10-8531-0700
- 주중 한국영사관: +86-10-8532-0404
- 주 상하이 총영사관: +86-21-6295-5000
- 주 칭다오 총영사관: +86-532-8897-6001
- 주 선양 총영사관: +86-24-2385-3388
- 주 광저우 총영사관: +86-532-8897-6001

○ 응급 전화번호

- 범죄신고: 110
- 화재신고: 119
- 교통사고: 122
- 응급의료, 병원 정보 구급: 120

○ 해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 도움 필요 시

- 휴대폰 자동로밍일 경우: 현지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신되는 영사콜센터 안내문자([외교부]해외 위급상황 시 영사콜센터(+82-2-3210-0404) 영, 일, 중, 불, 노, 서어 통역 가능)에서 통화 버튼으로 연결 가능
 - 유선전화, 휴대폰 이용할 경우: 유료 연결(현지 국제전화코드 + 82-2-3210-0404), 무료 연결(현지 국제전화코드 + 800-2100-0404 / + 800-2100-1304 혹 국제자동콜렉트콜(Auto Collect Call) 혹 국가별 접속번호 + 5번)
- (자료원: 대한민국 외교부)

○ 휴대폰 분실

- 휴대폰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 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 항공권 분실

- 공안국 외사처에서 발급받은 폴리스 리포트를 들고 항공사로 가서 발급 가능하다.
- 소요 시간은 약 일주일이므로 시간이 없는 경우 편도 항공권을 끊어 귀국한 후 분실한 항공권의 탑승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 단체 비자

- 단체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 행동을 하여야 하나, 개별 행동이 불가피한 경우 단체 비자, 개별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공안에 제시하고 비자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
- 단체 비자를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 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 비자 사본, 여행자 명단, 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체 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으면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비자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 아파트 임차

-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도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1,000~2,000달러 선이면 중급 수준의 아파트 임차 가능하며, 3,000달러 이상이면 고급 아파트 임차가 가능하다. 지역별로 또는 아파트 상태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니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안 안전을 위해 가급적이면 중·고급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이 좋다.

○ 계약 관련 유의사항 및 확인사항

- 계약 시: 계약서 조항 자세히 확인, 등기등록본, 매매계약서(집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집주인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확인, 요구한 물건 중 빠진 것이 없는지 계약서 확인

- 입주 전: 파손 및 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알려준 후 계약서에 기록, 전화 및 인터넷 확인(전화미납요금·인터넷유형·유선 TV 설치 및 시청료 지불방식 등), 계약 시 추가할 사항 확인

* 계약서 작성사항: 전기, 가스, 물 잔여 수량 확인/ 가전제품, 가구 상세히 체크

- 입주 후: 파손 및 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알려준 후 계약서에 기록 및 전기, 수도, 가스계량기의 사용량을 기록해 계약 기간 만료 후 또는 이사 시 정산

- 계약 만료: 보통 임대 만기 한두 달 전 재계약 여부를 알려주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환불받기 위해 임대료는 제때에 지불하고, 파손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 계약만료 일주일 전 집주인과 연락하여 보증금 관련 사항 통지, 이사 하루 전 집주인에게 반출증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 부동산 관련 참고 사이트

- 중국 부동산협회 (中房地): <http://www.fangchan.com/>

- 중국 부동산소식망 (房信息): <http://www.creb.com.cn/>

- 중국 부동산중개 (中房地人): www.agents.org.cn/

- 58同城(58同城): www.58.com

- 안취커(安居客): www.anjuke.com

- 팡텐샤(房天下): <https://www.fang.com>

- 워아이워자(我我家): <https://bj.5i5j.com>

- 랜자(家): www.lianjia.com

- 마이텐(田房): <http://bj.maitian.cn>(해외전용url)

- 중웬디찬(中原地): bj.centanet.com

전화

○ 유선전화

- 유선전화는 통신사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이하의 정보는 중국 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3대 통신사이다.

- 차이나모바일(中移): 4G 기술을 가장 먼저 실시한 통신사이며, 2020년 5월 말 기준 5G 요금 누적 가입자가 5,560만 9천 명으로 가장 많다. (문의 전화번호: 10086)

- 차이나유니콤(中通):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회사이다. 징진지(京津冀), 장강삼각주, 다완취(大) 등 지역의 도시에 13만 개의 5G 기지를 건설하였다 (문의 전화번호: 10010)

- 차이나텔레콤(中信):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유기업으로 인터넷 기술은 잘 되어있지만 통신기술이 조금 떨어진다. 2020년 5월 말 기준

5G 요금 누적 가입자가 3,005만 명이다. (문의 전화번호: 10000)

○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화하는 법

- 통신사 국제번호(001/002/005/00700/00365) + 86(중국 국가번호) + 지역번호 + 가입자 번호(지역번호의 첫째 자리 '0'은 누르지 않는다)

- 한국에서 중국으로 걸 때에도 국제전화 카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

- 국제전화 어플(kt의 001 등)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는 법

-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통신사에서 국제전화기능 개통 후 “한국 국번 0082 + 가입자 번호” 로 통화 가능하다.

- “국제전화 IP카드(途IP)”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 통신사에서 국제전화기능 개통 방법으로 하게 되면 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국제전화 IP카드(途IP) 구입을 추천한다. 카드마다 사용 방법이 달라 카드 뒷면의 설명을 참고하길 바란다. 가입자 번호를 누를 때에는 전화번호 맨 앞의 0은 생략한다.

(예) 010-1234-5678의 경우 ☎ 0082-10-1234-5678

○ 모바일 SNS 이용 무료 통화

-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페이스톡 기능과 같은 일반 통화 및 영상 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 중국 내에서 잘 연결되지 않아 사용이 힘든 국내 SNS 어플들과 달리 위챗은 비교적 우수한 통화 품질을 제공해 해당 어플을 다운받아 중국에서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다.

○ 중국 주요 지역 자동전화 지역번호

- 베이징 010, 상하이 021, 톈진 022, 후베이성 스자좡 0311, 바오딩 0312, 당산 0315, 랑방 0316, 창조우 0317, 친황다오 0335, 랴오닝성 선양 024, 다렌 0411, 안산 0412, 우순 024, 단둥 0415, 진조우 0416, 잉코우 0417, 산둥성 지난 0531, 칭다오 0532, 옌타이 0535, 타이안 0538, 웨이하이 0631, 라이양 0535, 잉청 0712, 룡코우 0535, 동잉 0546, 지린성 장춘 0431, 지린 0432, 옌지 0433, 투먼 0433, 훈춘 0433, 룡장 0433, 통화 0435, 쑹핑 0434, 헤이룽장성 하얼빈 0451, 무단장 0453, 자무쓰 0454, 헤이허 0456, 따칭 0459, 쑤이펀허 0453, 광저우 020, 난징 025, 시안 029, 우한 027, 푸조우 0591, 후허하오터 0471, 청두 028, 정저우 0371, 우루무치 0991, 선전 0755, 구이린 0773, 구이양 0851, 랴저우 0931, 샤먼 0592, 스자좡 0311, 우시 0510, 충칭 023, 항저우 0571

전압/플러그

중국은 50Hz, 220v가 공급되고 있으며, 대도시 전력 사정은 양호하나 최근 전력난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제한송전을 시행하고 있다.

플러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십일자형, 3-pin형이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는 둥근형 플러그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홍콩 등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코드 모양이 한국과 다르므로 한국제품 사용 시 어댑터가 필요하다.

식수

식당에 가면 보통 물을 따로 구매해야 하거나 뜨거운 차를 준다. 또한, 차가운 물보다는 실온의 물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때는 차가운 물이 있는지 묻거나 얼음을 추가하면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다. 이하의 정보는 집에서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1) 수돗물

차 문화가 보편화된 중국은 수돗물을 받아 차로 우려 마시거나 미리 수돗물을 받아 상온에 보관 후 마시기도 한다. 또한, 카페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하면 수돗물을 받아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국 도시지역 식수 수원지의 수질상태는 저수지의 11%, 호수의 70%, 지하수의 60%가 음용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마시려면 끓여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2) 사 먹는 물

농부산천(夫山泉), 와하하(娃哈哈), 백산수(白山水) 가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생수 브랜드이다. 550mL(약 3위안)부터 5L(약 15위안)까지 다양한 크기의 물이 있다. 편의점, 수입제품 판매점 등에서 해외 물 혹은 한국 물을 파는 경우도 있다.

3) 정수기

중국에는 4,000여 개의 국내외 정수기 브랜드가 있다. 정수기의 평균 가격대는 1,000~2,000위안이며, 이중, 정수기의 온라인 구매 1위 제품은 중국브랜드의 美的(메이디)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중국에서 차량 구입 시 차량 정보 사이트에서 가격 비교 후,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시범 운행이 가능한 차를 운행 후 구매 의사가 확정되면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매장 혹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

아래 사이트에 가격정보, 할인정보, 중고차 등 각종 차량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 파즈얼서우처(瓜子二手车): <https://www.guazi.com>
- 치처즈자(汽车之家): <https://www.autohome.com.cn/beijing> (해외전용url)
- 마오더우신처왕(毛豆新): <https://www.maodou.com>
- 유신얼서우처(信二手车): <https://www.xin.com> (해외전용url)

차량가격

중국에서 판매량이 많은 자동차는 폭스바겐, 기아, 토요타, 아우디 그리고 BMW 등이 있다. 폭스바겐의 가격은 대략 10~25만 위안이고 기아는 50~70만 위안, 토요타는 70~60만 위안, 아우디는 30~100만 위안, BMW는 30~100만위안이다. 이 가격은 대략적인 가격이니 정확한 가격은 아래 차량 가격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래 사이트에서 원하는 가격대 차량, 가격 비교, 차량 상세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 Pacific car web : <https://price.pcauto.com.cn>
- 58 car web : <https://product.58che.com>
- Chexiu web: <https://www.chexiu.com>

중국의 중고차 가격은 대표적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타오처(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타오처(淘): <https://www.taoche.com/>

운전면허 취득

- 운전면허증 수속

- 중국에서는 국제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가져와서 중국 현지에서 공증을 받아 면허신청 접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베이징, 상하이의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실기시험은 면제해 주고, 필기와 신체검사를 받은 후 면허증을 교부 받게 된다. 현재 상하이에서는 중국어와 영어는 물론 한국어로도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 준비물

- ① 한국운전면허증 및 사본 ② 여권 및 여권사본 ③ 증명사진 4장(1寸) ④ 거류 허가증/비자 및 사본 ⑤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본(해당 지역 번역회사를 통해서 번역, 복경은 직접 번역해도 가능) ⑥ 주숙등기증 및 사본 ⑦ 신체검사 신청서류가 필요하다.
- 지정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담당의사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中日友好院, 北京大第三院, 北京世院 등)

○ 면허시험 신청

- 상기 서류들을 소지하여 차량관리소(朝南四路18)에 가서 면허시험 신청을 한다. 신청 후, 2주 정도 뒤에 시험을 볼 수 있다. 면허시험은 총 100문제를 45분 안에 푸는 형식으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되며, 중국어와 한국어를 포함 총 8개 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현지 주요 은행으로는 중국공상은행, 중국 건설은행, 중국은행 그리고 중국 농업은행이 있다. 한국계 은행은 KB 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등이 있다.

계좌 개설방법

중국에서 계좌 개설은 필수이다. 알리페이(支付)나 위챗페이(微信支付) 등의 모바일 페이가 급증함에 따라 현금을 뺏아서 쓸 일은 줄었지만 모바일 페이의 기반 역시 은행 계좌 개설이기에 상황에 따라 1-2 혹은 3~4가지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

○ 준비물

- 외국인 계좌의 경우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照) 혹은 외국인 거류증(外人永久居留)이다.

○ 유의점

- 개설 방법은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여권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면 된다. 한국계 은행은 한국어 가능 직원이 있다.
- 비자 종류나 취업증 유무에 따라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은행이 있다.
- 중국과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한국 내 주소를 영문 혹은 중문으로 기재해야 한다.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면 계좌 개설이 거부당할 수 있다.
-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영문 이름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 영문 이름이 여권과 다르게 기재되면 실명제 확인이 되지 않아 즈푸바로나 위챗페이에 은행 계좌가 등록되지 않는다.
- 여권 번호가 변경된 경우 구여권을 지참해서 가는 것이 좋지만, 구여권이 없는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때 구여권번호를 여권 안에 기록했다면 그것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Canadian International School of Beijing (CISB)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비	- K: 110,000~181,000위안/년 - E1-5: 232,000위안/년 - M6-8: 237,000위안/년 - G9-10: 278,000위안 - G11-12:289,000위안
홈페이지	https://www.cisbeijing.com
비고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 Beijing BISS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비	- K: 169,000위안/년 - G1-5: 199,000위안/년 - G6-10: 219,000위안/년 - G11-12:239,000위안/년
홈페이지	http://www.biss.com.cn
비고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 International School of Beijing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비	- K: 221,910위안/년 - G1-5: 221,910위안/년 - G6-8: 239,910위안/년 - G9-10: 27260,830위안/년 - G11-12:270,060위안
홈페이지	http://www.isb.bj.edu.cn
비고	미국계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 베이징 한국 국제학교(KISB)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유치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비	- K: 20,100위안/학기 - G1-6: 14,000위안/학기 - G7-9: 17,000위안/학기 - G10-12: 20,000위안/학기
홈페이지	http://www.kisb.net

비고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	---

○ 베이징 신푸쉐 국제학교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비	- KG-G6: 156,000위안/년 - G7-G9: 176,000위안/년 - G10-G12: 196,000위안/년
홈페이지	http://www.xinfuxue.com/
비고	주: G: 학년, K: 유치원, P, E: 초등교육 M: 중등교육, H: 고등교육, S: 중등 및 고등교육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코로나19기간 유치원 등원은 중국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함〉

- 현지학교

○ 인민대학교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문, 이과 대학교
학비	5,000~6,000위안/년
홈페이지	https://www.ruc.edu.cn/
비고	중국 랭킹 5위

○ 북경대학교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문, 이과 대학교
학비	5,000~5,300위안/년
홈페이지	https://www.pku.edu.cn/
비고	중국 랭킹 1위

○ 청화대학교

도시명	베이징
커리큘럼	이과가 유명한 대학교
학비	5,000위안/년
홈페이지	http://www.tsinghua.edu.cn
비고	중국 랭킹 2위

마. 병원

○ 베이징케어병원(北京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望京湖光中街81西段第二,四
전화번호	+86-10-6338-8080/818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caremr.com

○ 암케어산부인과병원(美中宜和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海淀万柳中路7
전화번호	+86-400-10000-16
진료과목	산부인과
비고	http://www.amcare.com.cn

○ 베이징아이얼인텍안과(北京愛英智眼科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潘家路潘家南里12潘家大厦一
전화번호	+86-10-8778-9268/ 9767
진료과목	안과
비고	http://www.intecheye.com

○ 중국 인민해방군 총병원(301병원)(中人民解放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海淀路28
전화번호	+86-10-66939114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301hospital.com.cn

○ 베이징중의약대학동방병원(北京中大方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台方庄芳星一6
전화번호	+86-10-67689974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dongfangyy.com.cn (해외전용url)

○ 북경대병원(北京大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海淀和路5北京大院
전화번호	+86-10-62754212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hospital.pku.edu.cn

○ 베이징병원(北京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大路1
전화번호	+86-10-6528217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bjhmoh.cn

○ 베이징세허병원(北京和院)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校尉胡同王府井府1
전화번호	+86-10-69156699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s://www.pumch.cn/index.html

○ 베이징중의과학원왕징병원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望京中南路6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wjhospital.com.cn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신세계 백화점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崇文崇文外大街
홈페이지	http://www.nwds.com
비고	2004년에 설립된 백화점으로 화장품, 전자제품, 사무용품, 옷,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백성 백화점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城珠市口大街甲16
홈페이지	http://www.parkson.com.cn
비고	2005년에 설립된 백화점으로 술, 화장품, 가죽제품, 건강식품, 애견용품 등 다양한 범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Pacific Department Stor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西城西北大街133
홈페이지	http://www.pacific-shanghai.com.cn
비고	1987년에 설립된 백화점으로 태평양 SOGO그룹 계열사 중 하나이다.

○ SOLANA(北京色港商)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朝公路6
홈페이지	http://www.solana.com.cn
비고	2006년에 설립된 중국 라이프스타일 공원으로 음식, 오락 위주의 쇼핑센터이다. 다양한 제품 뿐만이 아니라 영화관, 산책로등이 구성되어 있어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

○ 썬리툰빌리지(三里屯太古里)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三里屯路19
홈페이지	http://www.taikoolisanlitun.com/zh-CN/
비고	화려한 건축양식과 남구와 북구로 나뉜 쇼핑센터 등으로 베이징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소위 썬리툰 빌리지라고 불리며 쇼핑센터 외에도 다양한 음식점과 바가 있어 중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다.

○ IKEA(宜家家居)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阜通大街59
홈페이지	https://www.ikea.cn
비고	2003년 베이징에 진출한 스웨덴 가구매장으로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가구 소매기업이다.

○ 인디고(提港)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酒仙路18
홈페이지	http://www.indigobeijing.com/zh-CN/
비고	독특한 쇼핑구조와 푸드코트로 구성된 쇼핑몰이며, 특히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잘 되어 젊은 층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 SKP-S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建路86
홈페이지	https://www.gentlemonster.com/stories/skps/
비고	젠틀몬스터가 공간 아트 디렉팅을 맡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최고급 럭셔리 백화점이다.

〈자료원 : 각 백화점 홈페이지, 바이두 등〉

- 식품점

○ COFCO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朝南大街8

취급 식료품	각종 식품 및 가구, 화장품 등
비고	세계 500위 안에 드는 기업이며, 중국 내 1위로 큰 식품기업이다.

◦ 귀슈하오(果蔬好)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望京湖小
취급 식료품	과일 채소 및 각종 국내/수입 식품
비고	2011년 12월 설립됐으며, 2017년까지 48개 매장을 오픈했다.

◦ BHG Market Place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路8南60米
취급 식료품	채소, 과일, 주류 등
비고	2007년 설립되었으며, 베이징에 36개의 지점이 있다.

◦ LOTUS(卜蜂花)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海淀五道口新村4
취급 식료품	각종 식품 및 가구, 화장품 등
비고	영국과 태국의 합자기업으로 중국 내 2,0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으며 베이징에는 134개의 매장이 있다.

◦ 귀슈하오(果蔬好)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望京湖小
취급 식료품	과일, 야채 및 각종 식품
비고	2011년 12월 설립, 깨끗하고 세련된 내외부 시설과 매장 직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로 한국 소비자들한테도 인기가 많다.

<자료원 : 각 식품점 홈페이지 >

- 기타 편의시설

◦ 젠룽린 체육 클럽(健森育健身俱部)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通州河中路108

소개	배드민턴장, 수영장, 농구장, 자유 훈련실 등등이 겸비돼 있는 피트니스 센터이다.
비고	연락처: +86-10-8159-2388

○ 베이징 골프 클럽(北京高尔夫俱部)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右堤路白路交(潮白河岸)
소개	1986년 설립됐으며, 2000제곱미터가 넘는 크기의 골프장이다.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골프연습이 가능한 곳이다.
비고	연락처: +86-10-8947-0108

○ 바오렌 수영장(游泳)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海淀北西里48
소개	실내외 수영이 가능하며, 9:00-18:00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주중,주말 모두 이용 가능하다. 주변에 숙박 시설과 음식점이 있어 위치적으로도 편리하다.
비고	연락처: +86-10-5717-1127

○ 베이징 워터파크(北京水立方)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天辰路11
홈페이지	http://www.water-cube.com/cnl
소개	올림픽 공원에 위치하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워터파크로 재단장하여 이용되고 있다.
비고	연락처: +86-10-8437-0112

○ 베이징 올림픽공원(北京林匹克公)

도시명	베이징
주소	北京市朝北辰路15
소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장소로 공원, 체육관,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 가능하다.
비고	연락처: 86-10-8499-2008

<자료원 : 바이두 >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21-01-01	1월 1일(금)~1월 3일(일)/3일간
구정	2021-02-12	2월 11일 (목) ~ 2월 17일 (수) / 7일간 2월 7일(일), 2월 20일(토) 근무
청명절	2021-04-04	4월 3일 (토) ~ 4월 5 (월) / 3일간
노동절	2021-05-01	5월 1일 (토) ~ 5월 5일 (수)/ 5일 4월 25일 (일), 5월 8일 (토) 근무
단오절	2021-06-14	6월 12일 (토) ~ 6월 14일 (월) / 3일간
추석	2021-09-21	9월 19일(일)~9월 21일(화)/3일간 9월 18일(토) 근무
국경절	2021-10-01	10월 1일 (금) ~ 10월 7일 (목) / 7일간 9월 26일(일), 10월 9일(토) 근무

〈자료원 : 중국정부망〉

9. KOTRA 무역관 안내

베이징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Beijing Puxiang Zhongxin 29th Floor, Hongtaidongjie, Wangj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중문: 北京市朝陽區望京宏泰東街浦項中心29層)
- 연락처: +86-10-6410-6162
- 우편번호: 100102

공항-무역관 이동

베이징 무역관은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왕징의 포스코 건물 28층, 29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옆에는 알리바바 건물이 있다.

- 택시 이용
 - 베이징 수도공항 밖 택시(出租) 탑승 후 望京浦項中心(왕징 포스코센터)으로 네비게이션(航)을 켜 후 안내를 부탁한다.
 - 택시 기본요금은 13위안이며 기본거리 초과 후 매 1km당 2.0위안 가산된다. 고속도로는 톨게이트 비용 10위안 별도로 추가된다.
 -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50~60위안 정도 나오며 짐이 많거나 3인일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 공항버스 이용
 - 공항버스에서 내린 후 다른 교통수단으로 다시 환승해야 하므로 택시를 타는 것이 좋다.

광저우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2904-2907A Teem Tower, No.208 TianHe Rd., TianHe Dist, GuangZhou, China (중문: 廣州市天河區天河路208號 天河城大廈29 04-07A號)
- 연락처: +86-20-2208-1600
- 팩스: +86-20-2208-1636
- 우편번호: 510620

공항-무역관 이동

광저우 무역관은 광저우시 중심에 소재하고 있는 天河城大廈(Teem Tower) 29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저우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바이윈(新白雲) 국제공항으로부터 약 50km 떨어져 있다.

- 택시 이용
 -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교통비는 보통 120위안 수준이다. 택시 기본 요금은 10위안(2km)이며 기본거리 이후부터는 km당 2.6위안씩 추가된다.
- 공항버스 이용
 - 공항버스에서 내린 후 다른 교통수단으로 다시 환승해야 하므로 택시를 타는 것이 좋다.

난징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1705, Phase 2, Deji Plaza, 18 Zhongshan Road, Nanjing, Jiangsu Province (중문: 江蘇省南京市中山路18號德基廣場2期1705室)
- 연락처: +86-25-8328-8991
- 팩스: +86-25- 8328-8995
- 우편번호: 210018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난징루커우(南京祿口) 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진입할 경우 10위안의 도로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하차 시 미터기에 찍힌 금액(일반적으로 126위안 정도)에 기사가 미리 낸 도로이용료 10위안을 더하여 지불하면 된다.
 - 소요시간: 50분~1시간

다롄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4505, World Trade Center, No.25 Tongxing St. Zhongshan Square Dalian, China (중문: 中國大連市中山區同興街25號 世界貿易大廈45層4505室)
- 전화: +86-411-8253-0051/3
- 팩스: +86-411-8253-0050
- 우편번호: 116001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다롄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오는 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공항에서 시내까지 거리 멀지 않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적은 편이다. 공항에서 大連世界貿易大廈까지의 요금은 약 35위안 정도이며,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된다.
- 공항버스 이용
 - 다롄 공항과 시내 주요 호텔을 경유하는 공항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요금은 5위안으로 저렴한 편이나 배차시간이 일정치 않아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만약 공항버스를 이용하게 될 시에는 운전기사에게 다롄국제무역호텔(大連國際酒店) 앞에서 잠시 세워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무역관 사무실이 위치한 다롄세계무역빌딩(大連世界貿易大廈)은 국제호텔(國際酒店)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다. (大連世界貿易大廈는 國際酒店 길 건너편 여우이상청(友誼商城) 뒷 편에 위치)

상하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KOTRA Shanghai(KOTRA China Head Office), Room 31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200336 (중문:中國上海市興義路8號上海萬都中心 3110室)

- 연락처: +86-21-5108-8771(2)
- 팩스: +86-21- 6219-6015, 6236-8211
- 우편번호: 200336

공항-무역관 이동

상하이에는 두 개의 공항(푸둥(浦東) 공항과 홍차오(虹橋) 공항)이 있다. 푸둥(浦東) 공항 및 홍차오(虹橋) 공항에서는 국제선, 국내선 모두 운항되고 있다.

○ 택시 이용

- 푸둥(浦東) 공항에서 상하이 무역관까지는 택시로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요금은 약 200위안이다.
- 홍차오(虹橋) 공항에선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택시요금은 도로이용료 포함 약 35위안이다. 홍차오(虹橋) 공항에서 상하이 무역관으로 올 경우 택시가 셔틀보다 빠르고 편리하다.

○ 공항버스 이용

- 푸둥(浦東) 공항에서 상하이 무역관까지 공항버스로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7시 20분에서 23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요금은 25위안이다. 인허베이관(銀河賓館)행 버스를 탑승하면 된다.

샤먼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21F G,International Plaza, Lujiangdao, Xiamen, Fujian, China (중문: 中國福建省廈門市江道8號國際銀行大廈21樓G單元)
- 연락처: +86-59-2210-3190~2
- 팩스: +86-59-2210-3193
- 우편번호: 361001

공항-무역관 이동

샤먼 무역관은 샤먼시 중산루(中山路) 중심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은행빌딩(國際銀行大廈)의 2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맞은편에는 샤먼시의 유명 관광지 중 한 곳인 구량위가 있다.

○ 택시 이용

-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택시요금은 약 40~50위안이며,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다. 샤먼의 택시 기본요금은 10위안이며, km당 2위안이 추가된다. 요금이 10위안 미만일 경우 유류할증료는 1위안이며, 8위안 이상일 경우 유류할증료는 2위안이다.

선양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1703 huarun building, No 286, qingnianda Street, Hepi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P.R.China (중문: 中國遼寧省沈陽市和平區年大街286號華潤大廈A座1703室)
- 전화: +86-24-3137-0770
- 팩스: +86-24-3137-0773
- 우편번호: 110004

공항-무역관 이동

선양타우셴(桃仙)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약 20km이다.

○ 택시 이용

- 공항에서 선양 무역관까지 택시로는 40분 정도 소요되며, 택시비는 약 70위안정도이다. 기본요금은 3km까지는 8위안, 이후에는 600m당 1위안씩 추가되며, 택시요금과 별도로 고속도로 이용료(5위안)가 추가된다.

시안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1905, Maike International Building, No.33, High-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Jin Ye Road, Xian, China
(중문: 西安市高新技术產業開發區錦業路12號邁科中心 1905室)

- 연락처: +86-29- 8883-1060

- 팩스: +86-29- 8883-1056

- 우편번호: 710077

공항-무역관 이동

시안 무역관 입주건물인 완커국제빌딩(邁科國際大廈)은 시안시내의 남서쪽 2환과 3환의 중심에 있으며, 고신기술개발구(高新技術開發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상그리라 호텔, 시안 한국 총영사관, 백화점 등 첨단개발지구 상업지역이 있다.

○ 택시 이용

- 공항에서 나오면 택시승차장이 있어 무역관 소재지인 邁科國際大廈를 알려 주면 된다. 택시는 두 가지가 있으며 기본 요금이 8.5위안(기본거리 3km, 3km 이상 시 km당 1.5위안 추가, 일반적으로 녹색 택시)짜리와 10위안(기본거리 2km, 2km 이상 시 km당 2.4위안 추가, 일반적으로 검정색 택시)짜리가 있다.

- 택시요금과는 별도로 고속도로 이용료(이용 고속도로 및 출구에 따라 5~15위안 정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소요시간은 대략 40분에서 1시간 사이이며, 요금은 검정색 택시의 경우 200위안, 녹색 택시의 경우 150위안 정도가 부과된다.

우한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2001, Wuhan New World Trade Center, Hankou Jianshe Avenue No.568, Wuhan, Hubei province, China (중문: 中國湖北省武漢市漢口建設大道568號 武漢新世界國貿中心 2001室)

- 연락처: +86-27- 5930-9299

- 팩스: +86-27- 5931-3669

- 우편번호: 430022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직행 공항 버스는 없으며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 기본 요금이 10위안인 택시의 경우 공항 고속도로 이용료 15위안 포함 약 80위안의 요금이 소요되며, 무역관까지는 40분 정도가 걸린다.

Zhengzhou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706 Meisheng Centre Building, No.33 Jinshui East Road, zhengdong new district, zhengzhou city, Henan Province, China (중문: 中國河南省鄭州市鄭東新區金水東路33號美盛中心706)
- 연락처: +86-371- 8616-3927~9 (200)
- 우편번호: 450018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 공항 밖에 나오면 택시 정류장이 보이며 운전기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알려주면 무역관 입주건물인 메이성센터(美盛中心)까지 안내하면 된다.
 - 요금: 파란색 택시가 120위안 정도, 녹색 택시가 100위안 정도다. 택시요금과는 별도로 고속도로 이용료(이용 고속도로 및 출구에 따라 10元)를 지불해야 한다.
 -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대략 40분에서 1시간 소요된다.
- 공항버스
 - 공항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시내로 이동한 후 지하철을 이용한다.
 - Zhengzhou Dongyue (州站)에서 하차, 1호선을 탑승하여, Nongyenanlu (南路)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 공항버스 요금은 20위안이며 시간은 대략 1시간 소요된다.
 -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공항버스로 시내 이동 후 Zhengzhou Dongyue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고속철(机械)
 - 공항 지하2층에서 고속철을 탑승하여, Zhengzhou Dongyue에서 하차하여 지하철이나 택시를 이용하여 무역관으로 이동 가능하다.

Changsha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3208, Hua Yuan GuoJiZhongXin 32 Floor, XiangJiangZhong Road, No.36, Changsha, Hunan province, China (중문: 中國湖南省長沙市天心區湘江中路二段36號華遠國際中心32層3208室)
- 연락처: +86-731- 8564-0080
- 팩스: +86-731-8564-0070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직행 공항 버스는 없으며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경우 공항 고속도로 이용료 10위안을 포함해 약 100위안 정도가

소요된다.

- 시간은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

청두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29F Tower 2 Plaza Central, Shuncheng Dajie, Jinjiang District, Chengdu, Sichuan Province, China (중문: 中國四川省成都市錦江區順城大街8號中環廣場2座29層)
- 연락처: +86-28-8672-3501~6
- 팩스: +86-28-8672-3507
- 우편번호: 610016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택시 기본요금은 8위안이다. 공항에서 청두 무역관까지 거리는 약 20km로, 요금은 약 50위안, 시간은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
- 공항버스 이용
 - 공항버스는 2호선을 탑승하여 텐푸광장동역(天府站)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단일노선이며 요금은 13위안이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그리 멀지 않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충칭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10-8, No68 One Road Yanghe, Jiangbei District, ChongQing (중문: 中國重慶市江北區洋河壹路 68號 協信中心 C棟 10-8)
- 전화: +86-23- 6039-1005
- 팩스: +86-23- 6039 -1009
- 우편번호: 400020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장베이국제공항에서 무역관으로 올 때,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 공항 정류장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으며, 운전기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주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30~40분 가량 소요되며, 기본 요금은 10위안으로, 무역관까지 요금은 약 50위안 정도이다.

칭다오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2308, floor 23, hna wanbang center (office building), 2 Hong Kong middle road, shinan district, Qingdao city, shandong province, China (중문: 中國山東省島市市南區香港中路2號海航萬邦中心(寫字樓)23層2308室)
- 연락처: +86-532- 8388-7931~4
- 팩스: +86-532- 8388-7935
- 우편번호: 266000

공항-무역관 이동

칭다오 무역관은 칭다오시 시난취에 위치하고 있으며, 칭다오 류팅(流亭)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50분(약 32km) 거리이다.

- 택시 이용
- 공항에서 오는 경우 택시 이용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택시요금은 80~100위안 정도이다.

항저우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3304, Wanyin International center, No.100 MinXin Road, Jianggan District, Hangzhou, Zhejiang Province, China (중문: 中國浙江省杭州市江幹區民心路 100號 萬銀國際大廈 2502室)
- 연락처: +86-571- 8110-3099
- 팩스: +86-571- 8110-3098
- 우편번호: 310020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항저우 무역관은 항저우시 장간취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과 기차역에서 무역관으로 오는 직행버스가 없으므로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 항저우샤오산국제공항(杭州蕭山國際機場)에서 항저우무역관까지 시간은 약 40분 소요되며 택시요금은 고속도로 요금을 포함하여 약 80위안이다.
- 항저우기차역(杭州火車站)에서 항저우 무역관까지 택시요금은 약 25위안이며 약 20분이 소요된다.

톈진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4905, Heping District of Dagou North Road No. 2, Tianjin, China (중문: 中國天津市和平區大沽北路2號天津環球金融中心49層 4905)
- 연락처: +86-22- 2329-6631~3
- 팩스: +86-22- 2329-6634
- 우편번호: 300020

공항-무역관 이동

텐진 무역관은 텐진시 허핑취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진빈하이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2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거리환산 20km)

○ 택시 이용

- 텐진빈하이국제공항(天津海机)에서 텐진 무역관까지 약 4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약 45위안이다.
- 텐진역(天津站)에서 텐진무역관 까지는 5분 소요되며, 기본요금 9위안이다.

○ 공항 지하철 이용

- 공항 지하철을 이용 시 약 1시간 소요되며, 요금은 4위안이다.
- 공항에서 바로 탑승이 가능하며, 탑승 후 텐진역(天津站)에서 다시 3호선으로 환승하여 허핑루역(和平路站)하차한 후, B번 출구로부터 사무실까지 도보 5분. 하지만 시간이 대체로 오래 걸리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선전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1205, North Tower, Shenzhen Energy Building, Jintian Road Binhe Avenue Intersection, Futian District, Shenzhen (중문: 中國深圳市福田區金田路濱河大道交叉口深能源大廈北塔1205室)
- 연락처: +86-755-8335-9991
- 팩스: +86-755-8335-9880
- 우편번호: 518048

공항-무역관 이동

공항에서 무역관으로 오는 직행버스가 없으므로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 택시 이용

- 공항에서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면 택시 승차장 표시가 있는 곳에서 순서에 따라 택시에 탑승한다. 공항에서 선전 무역관까지 약 47분 소요되며 평균 요금은 99위안이다. 단, 택시요금과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5~10위안 정도가 추가될 수 있다.

하얼빈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Room 1806, Fuli Center Office Building, Daoli District, Harbin City, HeiLongJiang, China (중문: 中國哈爾濱市道里區富力中心寫字樓1806)
- 전화: +86-451-5110-7080
- 팩스: +86-451-5110-7081
- 우편번호: 150076

공항-무역관 이동

공항에서 무역관으로 오는 직행버스가 없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 택시 이용

- 하얼빈 타이핑국제공항(哈太平机)에서 하얼빈무역관이 있는 푸리센터오피스(富力中心字)까지 4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약 75~100위안이다.

○ 공항리무진 이용

- Line1(민항빌딩행) 탑승 → 동달길(通達街) 버스 정류장(하차) → (보행) 중심병원(中心醫院) 버스 정류장 (56번, 道外七道街행) → 공로대교(公路大橋) 버스 정류장(하차) → (보행, 710m) 푸리센터

- 약 1시간 20분 소요되며 요금은 20위안이다.

- 1호선 운행시간:

* 공항 → 민항빌딩: 05:00~20:00

* 민항빌딩 → 공항: 05:00~21:00

창춘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 Room 1309-1310, 3518-B, people's street, Nanguan District, Changchun, Jilin (중문: 中國吉林省長春南關區人民大街 3518-B號1309-1310室)

- 전화: +86-431-8051-9850

- 팩스: +86-431-8051-9851

- 우편번호: 130000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창춘 서역에서 약 15km 떨어져 있으며 택시로 약 30분, 요금은 약 25위안이다.

- 창춘 룡지아 국제공항에서 45km 떨어져 있으며 택시로 약 50분, 요금은 약 90위안이다.

○ 공항 리무진 이용

- 창춘 룡자국제공항(春嘉机) 버스정거장에서 1호선 공항리무진을 탑승후 6개 정거장을 지나 충칭루(重路) 에서 하차한후 495m 걸으면 안화빌딩(安大廈)이 나온다.

- 총 1시간 30분 소요되며 비용은 25위안이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